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공직선거 업무편람

2018. 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담당 공무원 교육 계획

◢ 교육 개요

э 기 간: 2018.3.26. ~ 4.17. 09:30 ~ 17:10

● 대 상: 10개 권역 7,800여 명

※ 시·도(3명), 시·군·구(3명), 읍·면·동(2명) 선거·전산 담당자

● 일정 / 장소

권	역	인천	서울	경기	강원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남	전북	부산, 울산, 경남	제주	대구, 경북
일	시	3.26.(월)	3.27.(화)	3.28.(수)	4.3.(화)	4.4.(수)	4.5.(목)	4.10.(화)	4.11.(수)	4.13.(금)	4.17.(화)
장	소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세종대학교 대양홀	안산 문화예술회관	한림대학교 일성아트홀	충북 학생교육 문화원	전남도청 김대중강당	군산대학교 아카데미홀	부산시민회관 대강당	제주 웰컴센터	의성 문화회관
인	원	340명	930명	1,221명	431명	1,037명	880명	555명	1,267명	96명	1,148명

☑ 세부시간계획

시 간	내 용	비고
09:30~10:00 (30')	● 등록 및 안내	선거의회과/자치단체 공무원
10:00~10:05 (5′)	•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자
10:05~10:10 (5′)	• 인사 말씀	지방자치분권실장 자치분권정책관 선거의회과장
10:10~11:00 (50′)	• 법정선거사무처리 요령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11:00~11:30 (30′)	• 사건·사고 사례 및 예방 대책	중앙선관위 (선거1과)
11:30~12:20 (50′)	•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중앙선관위 (조사1과)
12:20~12:30 (10′)	• 「공직선거비리익명신고센터」 운영 개요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12:30~13:50 (80′)	● 점심	
13:50~16:00 (130′)	• 선거인명부작성 프로그램 운용 요령	행정안전부 (주민과)
16:00~16:10 (10′)	• 휴식	
16:10~16:50 (40′)	• 결격사유조회시스템 운용 요령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과)
16:50~17:10 (20′)	● 질의응답	
17:10	• 교육 종료	

CONTENTS

I . 공직선거법 개요

제 1 장 총 칙	
1. 목적(「법」 § 1) ············· ;	~ つ
2. 선거인의 정의(「법」 § 3) (
3. 인구의 기준(「법」 § 4) ;	
4. 선거사무 협조(「법」 § 5)	5
5. 선거권행사의 보장(「법」 § 6)	5
6.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법」 § 6의 2)	5
7.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법」 § 9, 「법」 § 85①)	6
8.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법」 § 10)	6
제 2 장 선거건과 피선거권	٦
제 2 8 전기단의 패턴기단	
1. 선거권(「법」 § 15)	7
1. 선거권(「법」 § 15) ···································	
	8
2. 피선거권(「법」 § 16)	8
2. 피선거권(「법」 § 16) ···································	8 8 9
2. 피선거권(「법」 § 16) ······ 3. 연령산정 기준(「법」 § 17) ····· 4. 선거권이 없는 자(「법」 § 18①) ·····	8 8 9
2. 피선거권(「법」 § 16)	8 8 9
2. 피선거권(「법」 § 16) ······ 3. 연령산정 기준(「법」 § 17) ····· 4. 선거권이 없는 자(「법」 § 18①) ·····	8 8 9
2. 피선거권(「법」 § 16)	8 9 4
2. 피선거권(「법」 § 16)	8 8 9 4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공직선거 업무편람

세 4 상 선거인명부 작성	
1. 명부 관련 용어의 운용기준	18
2. 선거인명부 작성(「법」 § 37)	
3. 선거인명부작성 감독 등(「법」 § 39)	27
4. 선거인명부작성의 전산처리(「법」 § 37)	27
5. 선거인명부의 수기 작성	29
6. 전출·전입자 조치(국내체류 외국인도 이를 준용함) ····································	29
7. 국외이주자 조치	30
8. 선거권이 회복된 자의 처리	30
9.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자의 처리	31
10. 주민등록 위장전입자 등에 대한 처리	31
11. 명부의 효력	32
제 5 장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1. 거소투표신고 기간·방법·내용·대상(「법」 § 38, 규칙 § 11) ·································	33
2. 거소투표신고서 처리 및 투표절차	38
3. 거소투표신고서 교부	39
4. 거소투표신고서 접수	39
5. 거소투표신고의 철회	42
6.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및 확정	43

CONTENTS

제 6장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누락자 구제	
1. 명부 열	람(「법」 § 40, 규칙 § 13)	49
2. 이의신청	영과 결정(「법」 § 41, 규칙 § 13) ······	51
3. 불복신청	성과 결정(「법」 § 42) ·····	51
4. 명부누락	박자의 구제(「법」 § 43, 규칙 § 15)	52
제 7 장	선거인명부의 수정 및 확정	
1 서거이미	병부의 수정(규칙 § 14) ······	5/1
	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법」 § 44, 규칙 § 16) ···································	
<i>2.</i> 0/10/6		50
제 8 장	선거인명부의 재작성 및 사본교부	
1. 명부의	재작성(「법」 § 45, 규칙 § 17) ···································	60
2. 선거인명	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사본의 교부(「법」 § 46, 규칙 § 18)	61
3. 세대주망	병단 작성·교부(「법」 §60조의3, §111) ······	64
제 9 장	투표	
1. 선거방법	넙(「법」 § 146) ·····	68
2. 투표소의	의 설치(「법」 § 147, § 148) ······	68
3. 투표관리	니관 및 투표사무원(「법」 § 146조의2, § 147⑨) ····································	69
4. 투표안니	H문의 발송(「법」 § 153) ······	70
5. 거소투표	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법」 § 154) ······	70
	간(「법」 § 155) ·····	
7. 투표의	제한(「법」 § 156) ·····	71
8. 투표용제	디 수령 및 기표절차(「법」 § 157, 규칙 § 82②)····································	72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공직선거 업무편람

9. 사진쿠표, 거소쿠표('립」 \$ 156, \$ 156의2)	12
10. 투표참관(「법」 § 161, § 213)	74
11. 사전투표참관(「법」 § 162, § 213)	75
12. 투표소 등의 출입제한(「법」 § 163)	75
13. 투표소 등의 질서유지(「법」 § 164~ § 166)	76
14. 투표의 비밀보장(「법」 § 167, 규칙 § 92)	76
15. 투표록의 작성 및 투표함의 봉쇄·봉인(「법」 § 168, § 169) ······	77
16. 투표함 등의 송부 및 인계(「법」 § 170, § 171)	77
제 10 장 개 표	
	70
1. 개표관리(「법」 § 172)	
2. 개표소(「법」 § 173, 규칙 § 95)	
3. 개표사무원(「법」 § 174)	
4. 투표함의 개함(「법」 § 177)	
5. 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법」 § 183)	78
# 4171010 TIVI=171 074	
Ⅱ. 선거업무 전산처리 요령	
1. 선거업무 처리 절차	83
2. 선거 전산업무 처리일정	84
<시·군·구 담당자>	
3. 선거정보관리(시·군·구용) ···································	
4. 선거구정보관리(시·군·구용) ···································	
5. 선거인명부 작성상황통보서	
6. 기타통보서 출력(작성상황)	88

CONTENTS

7.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상황통보서	88
8. 거소투표신고서 접수내역	89
9. 인터넷 열람용 선거인 명부 작성 방법	89
10. 선거인명부 확정상황통보서	90
11. 기타통보서 출력(확정상황)	90
12. 선거인명부 확정내역	91
13. 선관위용파일작성(시·군·구용)	91
〈읍·면·동 담당자〉	
14. 주민오류자료 조회	94
14. 기타주소정비	97
15. 외국인선거인등록	98
16. 재외국민주민등록자 등록	102
17. 선거인파일 작성	105
18. 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	116
19. 선거인명부 조회	118
20. 거소투표신고서 접수	120
21. 거소투표신고서접수부	124
22. 거소 • 선상투표신고인명부	125
22. 거소투표신고인명부	126
23. 거소 • 선상투표신고인명부 확정상황통보서	128
24. 선관위용파일작성	129
25. 후보자용파일작성	129
26. 선거인명부열람	130
27. 선거인명부확정상황통보서	135
28. 우편발송물주소조회	136
29. 투표안내문	138
30. 주의사항	139

III. 시건·사고 사례 및 예방대책

1.	최근 선거경향	144
2.	주요 사건·사고 사례 ·····	144
3.	분야별 사건·사고 사례	151
4.	이번 선거에서 달라지는 점	163
	Ⅳ.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일정	170
2.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등	171
3.	「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	173
4.	「정당법」·「정치자금법」의 제한·금지규정	198
5.	중점추진사항 및 협조사항	200
	Ⅴ. 결격시유조회시스템	
1.	결격사유조회시스템 소개	206
	결격사유조회시스템 소개 ····· 결격사유조회 담당자 업무 ·····	
2.		207
2. 3.	결격사유조회 담당자 업무	207 219
2. 3.	결격사유조회 담당자 업무	207 219
2. 3.	결격사유조회 담당자 업무선거부서 담당자 업무	207 219
 3. 4. 	결격사유조회 담당자 업무	207 219 22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공직선거 업무편람

공직선거법 개요













제1장 총 칙

제 2 장 선거건과 피선거권

제3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 4 장 선거인명부 작성

제 5 장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제 6 장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누락자 구제

제 7 장 선거인명부의 수정 및 확정

제 8 장 선거인명부의 재작성 및 사본교부

제 9 장 투 표

제10장 개 표

제1장 총 칙

1. 목적(「법」 § 1)

○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 정치의 발전에 기여

2. 선거인의 정의(「법」 § 3)

○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인구의 기준(「법」 § 4)

- O 선거사무관리의 기준이 되는 인구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국민의 최근 인구통계에 의함
 - ✓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법」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의 수를 포함함
- 선거사무관리의 기준이 되는 인구의 기준일(규칙 §2①, §118①)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 ※ 동시선거에 있어서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빠른 선거의 인구의 기준일에 따름
 -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의 경우: 2017.12.31.
 - ✓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법」제60조의2)
 - 시·도지사·교육감선거: 선거일 전 120일(2018.2.13.)
 -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2018.3.2.)
 -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2018.4.1.)

- 구·시·군의 장은 인구의 기준일 후 15일까지 인구의 기준일 현재의 인구수, 세대수, 19세 이상의 주민수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규칙 § 2②)
 - 인구기준일 후 15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5일까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 ✓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외국인의 수와 그 세대수를 포함함

[별지 제1호서식] (규칙 제2조제2항 관련) 〈개정 2015.8.13.〉

인구수등통보서

(년 월 일 현재)

읍·면·동명	투표구명	인구수	세대수	19세 이상의 주 민 수	비고

- 주: 1. 하나의 구·시·군안에 2이상의 읍·면·동으로 된 선거구가 2이상 있는 때에는 "읍·면·동맹"란 앞에 "선거구명"란을 마련하고 선거구별로 "소계"란을 둔다. 이 경우 시·도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의원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읍·면·동명"란 앞에 시·도의원선거구,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 순으로 "선거구명"란을 마련하고 선거구별로 각각 "소계"란을 둔다.
 - 2. 하나의 읍 \cdot 면 \cdot 동안에 2개의 지역구자치구 \cdot 시 \cdot 군의원선거구가 있거나 2이상의 투표구가 있는 때에는 읍 \cdot 면 \cdot 동명별 또는 선거구별로 "소계"란을 둔다.
 - 3. "인구수·세대수·19세이상의 주민수"란에는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따로 적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외국인의 수를 적어 각각 쉼표(,)로 구분한다.

4. 선거사무 협조(「법」 § 5)

과공서 기타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함

5. 선거권행사의 보장(「법」 § 6)

-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함
-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함
 -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 10의2호)
 - 「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로 함
 - ✓「근로기준법」(§10. §110)
 -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밖의 공민권 행사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함(§10 공민권행사의 보장)
 -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110 벌칙)
 - * 2018.5.29. 시행(법률 제15108호. 2017.11.28. 일부개정)
- 각급 선관위(읍·면·동선관위 제외)는 선거인의 투표참여 촉진대책 수립·시행 가능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 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함)
 - ✓ 교통 불편지역 거주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 제공
 - ✓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 면제·할인 등

6.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법」 § 6의 2)

- O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함
- 위반시 벌칙 :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법」 § 261③)

7.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법」 § 9, 「법」 § 85①)

-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검사(군검사 포함) 또는 국가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리 포함)은 「법」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여야 함
- O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8.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법」 § 10)

- O 사회단체 등은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등 공명선거추진활동이 가능함
 -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항상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하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

- 특별법으로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와 후보자 또는 그 배우 자의 직계손·비속과 형제자매나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설립 하거나 유영하고 있는 단체
-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또는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
-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

제 2 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1. 선거권(「법」 § 15)

-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 : 19세 이상의 국민(외국인 제외)
 -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은 19세 이상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됨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주민등록법」 제6조제 1항 제3호(재외국민)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 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O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1999.6.14. 이전 출생자

- 19세 이상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주민등록법」제6조 제1항 제3호(재외국민)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되어 있는 사람(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2018.2.23, 까지 등재)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2015.5.21. 이전 등재)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법 §37①)

- 대통령 : 선거일 전 28일,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의원): 선거일 전 22일
- 동시지방선거의 경우 선거기간이 긴 선거의 예에 의함(「법」 §202②)
 -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 2018.5.22.(화)

2. 피선거권(「법」 § 16)

- O 대통령선거
 -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
 - ✓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봄
- 국회의원선거 :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의 국민
-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후에 귀국한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
 - ✓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 또는 구역 변경 (법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 포함)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함
 -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어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장의 주민등록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게 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봄

3. 연령산정 기준(「법」 § 17)

-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함
 - ✓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함(「민법」§158 연령의 기산점)

4. 선거권이 없는 자(「법」 § 18 ①)

- O 선거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음
 - 1호: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 2호: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②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
 - 3호: 선거범,「정치자금법」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 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
 - 4호: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선거권이 없는 자」의 해석

<법 제18조 제1항 제1호> : 금치산자

- 대상 :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용어 정리】

- ✓ 금치산(禁治産) 선고를 받은 자란,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어 가정법원으로부터 자기 재산의 관리·처분을 금지하는 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함
- ☞ 2013. 7. 1. 개정 민법의 시행으로 부정적 인식이 강한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 도입
 - 개정 민법 시행 전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법」시행 이후 공직선거법에서 인용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는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민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성년후견'을 인용한 것으로 봄
 - ※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민법10조), 피성년후견인에게는 선거권 없음

개정 민법(2013.7.1. 시행)

-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한다.
 -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10429호, 2011.3.7>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② 제1항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u>"금치산"</u> 또는 "한정치산"을 <u>인용한 경우에는 성년후견</u> 또는 한정후견을 <u>받는 사람에 대하여 부칙 제2조제2항에</u> 따른 5년의 기간에 한정하여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법 제18조 제1항 제2호> : 일반범죄

- 대상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②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의 의미
 - ①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수형자, ① 가석방 중인 자가 이에 해당

【용어 정리】

- ✓ 수형자란,「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수형자를 말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수용 중인 자를 말함
 - cf) 수형자가 아닌 미결 구금자는 선거권이 있음
 - * 미결구금자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구금되어 있는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을 말함
- ✓ 가석방이란, 교도소 등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중 교도소 안의 규칙을 잘 따르고 죄를 뉘우치는 등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한 죄수들 중에 형기를 마치기 전에 석방 하는 제도를 말함.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처분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잔형기를 경과한 때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형법」 제76조 제1항) 가석방 중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로 선거권이 없음

- ②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의 의미
 - ☞ ⑦ 집행유예 중이거나. ④ 형의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거나.
 - ⓒ 형 집행면제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이에 해당
- ▶ 이 중에서 집행유예자들은 투표 가능
 - [2015.8.13. [법] 제13497호에 의하여 2014.1.2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관한 부분)된 이 조 제1항제2호를 개정함]

【용어 정리】

- ✓ 집행유예란, 일단 유죄의 형을 선고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기간 그 형의 집 행을 유예한 후 유예기간을 특정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형법」제62조)
 - cf)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이 경과 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형법」제59조)
- ✓ 형의 시효의 완성이란,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판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 그 집행이 면제되는 효과를 말함. 즉,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형벌의 집행권이 소멸하는 제도(「형법」제77조, 제78조)
- ✓ 기타 형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로,
 -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형법」제1조 제3항)
 - 형 집행을 면제하는 특별사면의 경우(「사면법」제5조 제1항 제2호)

<법 제18조 제1항 제3호> : 선거범 등

- 대상 : 일정 선거관련 범죄의 전과자(선거범과 「정치자금법」・「형법」・「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 ① '100만워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 자'

【용어 정리】

- √ 형이 확정되는 시기는, 재판이 통상의 불복 방법에 의해 다툼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함
 - 대법원 판결과 같이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의 경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됨
 - 불복이 허용되는 재판의 경우, ② 상소기간 등의 도과(선고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상소하지 않거나), ⑷ 불복신청의 포기·취하, ৷ 불복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의 확정 등에 의해 확정됨

- ②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형법」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상실함
- ③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 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l)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형이 실효된 경우라도, 형 집행종료 또는 집행면제일부터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나 형이 실효되면 실효된 형에 따른 권리를 회복할 수 있으나, 선거범에 해당하는 경우는 형이 실효되더라도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선거권이 제한됨

【용어 정리】

- ❖ 형의 실효와 복권은 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전과사실로 인해 여러 자격제한이나 사회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과사실을 말소시키고 자격을 회복 시킴으로써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형법이 두고 있는 제도임
- ❖ 「형법」제81조(형의 실효)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음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형의 실효)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실효됨. 다만, 구류·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됨

-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 2.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 3. 벌금: 2년

<법 제18조 제1항 제4호> : 법원의 판결, 다른 법률에 의한 제한

- 대상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의 의미
- ☞ 「형법」제43조·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선거권에 관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을 선고받은 자
 - ①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선거권 상실)
 - ②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선거권 정지)
 - ③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말함

✓ 선거권 제한 예시

-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
 - 벌금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집행유예의 선고
 -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역형의 선고
 - 징역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형 법」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 ①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되는 자격
- ② 유기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u>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u>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6.1.6.>

[2016.1.6. 법률 제13719호에 의하여 2014.1.2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공선법의 선거권'에 관한 부분)된 이 조 제2항을 개정함.]

제44조(자격정지)

- ① 전조에 기재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 ②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 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의 의미
-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함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치료감호의 선고와 자격정지) 피치료감호자는 그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정지된다.

-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 업무에 관한 자격
- ※ 치료감호는 형벌은 아니지만 범죄와 법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대인적 보안처분으로서 「형법」제10조(심신장애인)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에 판사가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선고하는 보안처분을 말함

5. 피선거권이 없는 자(「법」 § 19)

- O 선거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음
 - 「법」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제1항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
 - 가.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

제 3 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1. 선거기간(「법」 § 33)

- 선거기간
 - 대통령선거 : 23일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 선거 : 14일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 2018.5.31.(목) ~ 6.13.(수), 14일
- 선거운동기간(법 § 59)
 -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 2018.5.31.(목) ~ 6.12.(화), 13일

2. 선거일(「법」 § 34)

- O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 대통령선거 :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 국회의원선거 :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 O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일이나 그 다음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주의 수요일로 함
 -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의 경우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 공휴일(6.6. 현충일)이므로 그 다음 주 수요일인 6.13.임

3.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법」 § 35, § 197, § 203)

선 거 별	선거실시기한	공 고 권 자	공 고 기 한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재선거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	선거일전 50일까지		
지역구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	 4월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 선거일 전 3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에 실시 ※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에 실시 ※ 민속절 등의 범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0호 및 한식일(규칙 제8조)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에 실시하지 아니하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 대통령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에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고 선거일 전 30일 후부터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의 기간 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 위원회위원장 ※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직무대행자 포함)과 협의해야 함	선거일전 30일까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기간 중에 그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이 있는 보궐선거 등,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후에 해당되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30일전까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				
선거의 일부 무효로 인한 재선거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그 재선거일을 정하여 공고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 2018.5.14. 까지 실시사유 확정시 보궐선거 실시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 일요일
-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1월 1일
- 설날 전 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 5월 5일(어린이 날)
- 6월 6일 (현충일)
- 추석 전 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12월 25일 (기독탄신일)
- 「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법」§35⑤)

-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 지역구국회의원의 보궐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
-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판결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이 경우「법」 제195조(재선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에 있어서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를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봄
-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새로 정한 선거구에 관한「법」별표2 또는 시·도 조례의 효력이 발생한 날
-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관한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 날
- 연기된 선거는 「법」제196조(선거의 연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선거의 연기를 공고한 날
- 재투표는 「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투표일을 공고한 날

제 4 장 선거인명부 작성

1. 명부 관련 용어의 운용기준

-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자를 미리 정확하게 가려 선거인의 범위를 확정시키고 선거권을 공증 또는 확인하기 위하여 구·시·군의 장이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직권으로 작성하는 공부를 말함(「법」 § 37)
- "거소투표신고인명부"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거소투표사유에 해당하여 거소 투표신자를 등재한 공부를 말함(「법」 § 38)
- "국민"이라 함은 「국적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를 말하며, 복수국적 자도 대한민국의 국적이 있으면 국민에 해당되고, 해외영주권 취득자도 대한민국의 국적이 있으면 국민에 해당됨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란 사실상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임

✓ "거주불명 등록이 된 사람"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해당됨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및 선거인명부확정일"의 "일시"는 해당일의 24시를 기준으로 함
- 「법」제3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문과 거소투표신고서 발송대상자"는 구·시·군의 장이 장애인복지법 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사람을 말함
- O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란 영내기거를 의무로 하는 자와 영외 거주가 허용된 장병도 포함하는 사실상 영내에 거주하는 장병을 지칭함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는 휠체어에 의하여 거동 하는 자도 포함함
- "외딴 섬"이란 1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이 없는 섬을 지칭함

- 지방선거의 경우 "외국인 선거권자"란「출입국관리법」제10조(체류자격)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선거인 명부작성기준일 현재「출입국관리법」제34조(외국인등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를 말함
- "거소투표신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이나 시설의 장"이라 함은 다음의 단위기관·시설의 장을 말함
 - 군부대: 직인을 가지고 있는 중대장 이상의 부대의 장 ※ 다만, 직인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본대로부터 독립되어 설치된 부대의 장을 포함함
 - 경찰관서: 지구대 이상의 경찰관서의 장
 - 병원·요양소: 그 시설의 장
 - 신체장애로 인하여 거동할 수 없는 자: 거소지 또는 주소지의 통·리·반의 장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통리반장의 확인없이 거소신고 기능)
- "관계인"이라 함은 신청인과 선거인이 다른 경우 당해 선거인을 말함
-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선거인명부 등의 사본을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라 함은 당해 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와 투표참관인이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나 그 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을 뜻함
- "전산자료 복사본"이라 함은 선거인명부작성 전산자료를 디스켓에 복사한 것을 말함
- "위장전입자"라 함은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 (다른 목적의 위장전입자를 제외함)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 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를 말함

거주불명 등록제도

♣ 제도 개요

O 도입이유

-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각종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되어 기본권이 침해됨에 따라 거주 불명등록제도로 변경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
-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자일지라도 선거권, 아동취학, 기초생활수급, 의료보험, 연금 등 국민으로서의 기본권보장 기반조성 필요

○ 처리요령: 주민신고 또는 직권조치

-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
-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재등록하지 아니하면 재공고후(2회)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

♣ 관련 Q&A

1. 「거주불명 등록제」란?

- 실제 거주지를 가지지 못한 자임에도 선거 등 기본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공법상의 주소가 아닌「행정상 관리주소」를 임시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행정상 관리주소를 부여받았으므로 기본권 보장 및 사회복지 혜택 등 행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2. 「거주불명 등록자」의 주민등록법상 지위는?

- 거주불명자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습니다. ※ 주민등록증발급, 등초본발급 등 거주자와 동일함.

3. 어느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설정하는지?

-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신고 또는 직권 거주불명등록자가 마지막으로 전입신고 했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등록합니다.
- 신고된 최종 주소에 거주불명등록된 자가 1년이 지나도록 재등록 하지 않은 경우, 2회 이상 공고 후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의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 (정정으로 처리) 합니다.

4. 신청에 의해「행정상 관리주소」를 다른 읍·면·동 주소로 이관할 수 있는지?

- 마지막 주소지인 행정상 관리주소에서 신청에 의해 해당 읍면 사무소 또는 동주민 센터로 주소를 이전할 수는 있으나, 다른 행정구역으로 주소를 이관할 수는 없습니다.
-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주소 이관은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법」부칙 제2조의 재등록은 이전신청을 의미

5. 「행정상 관리주소」를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 건물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 해당주소의 재산권자가 행정상 관리주소의 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기존 말소자가 1년 경과기간 내에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주소로 거주 불명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는 행정상 관리주소의 이전이 아닙니다.

6. 거주불명 등록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누릴 수 없었던 선거권,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의 기본권 관련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7. 거주불명 등록제 신설로 말소제도는 폐지되는지?

- 무단전출말소 제도는 폐지되었으며, 사망말소, 국적상실말소 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8. 주민등록 무단전출 말소대신 거주불명 등록하면 「주민등록법」상 공법상 주소와 충돌되는 문제는 없는지?

- 거주불명 등록자에게 부여되는 행정상 관리주소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임시주소에 불과하고 공법상 주소가 아니므로 충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행정상 관리주소가 공법상 주소가 아니므로 공시송달이 가능하는 등 기본권보장 이외의 분야에서는 기존 말소와 동일합니다.

9. 주민등록 무단전출 말소제도가 폐지되고 거주불명 등록제가 도입되면 장기로 거주불명 등록하여 악용할 우려는 없는지?

- 거주불명 등록제는 기본권보장 이외에는 기존 말소제도와 동일하므로 대상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거주불명등록'이 표시되고 거주불명등록자의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되어 악용 우려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2. 선거인명부 작성(「법」 § 37)

- O 작성권자
 -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함), 군수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선거일 전 22일
 -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 2018.5.22.(화)
- O 작성기간: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
 -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 2018.5.22.(화) ~ 5.26.(토)
- 등재대상자
 - 선거일 전 22일 현재「법」제15조에 따라 그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
 - ✓ 지방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
 - ✓ 2009.10.2부터 시행된「거주불명등록제도」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도 행정 주소를 가지고 선거권이 있으므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함
- 작성방법(「법」 § 37, 규칙 § 10)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그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 (지방선거의 경우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자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외국인을 포함)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주민등록표에 따라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에 작성
 - 선거권자의 성명·주소·성별 및 생년월일 기타 필요 사항 기재
 -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선거권자가 거주하는 통·리의 장과 그 통·리에 거주하는 선거권자 2인 이상의 보증으로 작성 가능
 - 투표구별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 외국인선거권자의 순으로 각각 구분 하여 작성
 -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 → 외국인선거권자

- 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 2 이상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될 수 없음
- 하나의 투표구의 선거권자의 수가 1천인을 넘는 때에는 선거인명부를 선거 인수가 서로 엇비슷하게 분철 가능
- 선거인명부의 작성은 전산조직에 의할 수 있음
- O 작성단위: 투표구별 1통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5.22.) 1통(확인용)
 -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미감일(5.26.) 1통(보관용)
 - ※ 거소투표신고인 정보를 반영하여 출력
- 선거인명부에 관한 특례(「법」 § 204)
 - 동시선거에 있어서 선거인명부와 거소투표신고인명부는 하나의 선거인명부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로 함
- O 명부송부(「법」 § 37④, 규칙 § 10⑥)
 - 구시군의 장은 작성 후 즉시 그 전산자료 복사본 1통과 선거인명부작성상황 통보서[별지 제9호서식의(가)]를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송부
 - ※ 2018.4.6.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인명부 등본 송부 폐지(거소투표신고인 명부는 등본과 전산자료복사본 둘 다 제출)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2018.5.26.(토)

-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포함)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거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자,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157조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허위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한 자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247①)
-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선거인명부 작성에 관계 있는 자가 선거인명부에 고의로 선거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한 때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247②)

[별지 제2호서식의(나)] (선거인명부) <개정 2015.12.24.>

등재번호	주 소	세대주	성 별	생년월일	성 명	투표용지	수령인⑦	비고
1	2	3	4	5	6	(가)	(나)	8

주: 1. 명부기재방법

- ① 등재번호란에는 투표구단위로 그 구역안의 주소의 건물번호순 또는 통·리·반 또는 선거인의 성명의 가·나·다순이나 생년월일순에 따라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 ② 주소라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적는다.
- ③ 세대주란에는 세대주일 경우 "세"로 표시한다.
- ⑥ 성명란은 선거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 ⑦ 투표용지수령인란 중 "(가)"란은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선거인의 본인여부를 확인받은 후 본인이 서명하거나 날인 또는 무인하며(동시선거를 포함한다), "(나)"란은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등을 실시할 때에 한하여 서명하거나 날인 또는 무인한다.
- ⑧ 비고란의 기재와 선거인명부의 수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구·시·군의 장은 이의·불복신청 또는 명부등재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비고란에 기재하고 구·시·군의 장 자신의 도장을 찍는다.
 - 나.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있는 사람은 비고란에 "비례대표 선거권자"로, 동시선거에서 일부 선거의 선거권만 있는 사람은 "○○ 선거권자"로, 외국인선거권자는 "외국인"으로 적는다.
 - 다.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른 사람은 비고란에 "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로, 국외부 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른 사람은 "국외부재자"로 표시하되,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있는 사람과 동시선거에서 일부 선거의 선거권만 있는 사람은 나.에 따라 적은 내용 아래에 괄호를 하여 그 안에 적는다.
 - 라.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 확정 전에 선거권이 없는 자·사망자·이중등재자·재외선거인명부 등재자·다른 구·시·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등재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두줄로 삭제하고, 오기의 발견시는 그 오기된 글자만 두줄로 삭제하되, 각각 비고란에 그 사유(선거권이 없는 자·사망자·이중등재자·재외선거인명부등재자·다른 구·시·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등재자·오기)와 연월일을 기재하고 구·시·군의 장 자신의 도장을 찍는다.
 - 마.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확정 후에 선거권이 없는 자·사망자·이중등재자·재외선거인명부등재자·다른 구·시·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등재자·오기된 자를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선상귀국투표신고·재외귀국투표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통합선거인 명부의 비고란에 기재한다.
 - 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에 선거권이 없는 자·사망자·이중등재자·재외 선거인명부등재자·다른 구·시·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등재자·오기된 자를 구·시·군의 장으로

부터 통보받거나,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상귀국투표신고자·재외귀국투표신고자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비고란에 기재한다. 다만,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를 투표관리관에게 송부한 후에는 투표관리관이 그 사실을 비고란에 기재한다 이하 "사"에서 같다

- 사.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거소투표용지 미발송자와 반송자의 해당 비고란에 "미발송", "반송"이라 기재한다.
- 2. 선거인명부 작성시 윗란과 동일사항이 계속될 때에는 "상동" 또는 "" 표시로서 생략할 수 있다. 단. 쪽을 달리할 경우는 생략할 수 없다.
- 3. 선거인명부가 작성되면 대철하여 선거인명부의 표지와 끝쪽의 대철부분에 구·시·군의 장의 직인을 날인하다.
- 4.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 외국인선거권자 순으로 빈 줄 등을 두어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되,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을 먼저 적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있는 사람을 적는다. 다만, 동시선거에서 일부의 선거에 대해서만 선거권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해당 선거권자를 선거인명부의 맨 끝에 적는다.

[별지 제2호서식의(가)] <개정 2015.12.24.>

명부의 표지(규칙 제10조제2항·제11조제4항·제120조제1항관련)

년 월 일실시 ○○선거

(선거인) • (거소투표신고인) • (선상투표신고인) 명부

작성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확정: 년 월 일

- ○○시·도 ○○구·시·군
- ○○읍·면·동 제○투표구분(○책중○권)

○○구·시·군의 장 [인]

주 : 거소투표신고인명부 또는 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제○투표구분(○책중○권)"을 "○○읍·면·동분(○책중○권)"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라)] (규칙 제10조제2항 관련) 〈개정 2014.1.17〉

명부의 끝부분 기재사항

(1) 이 선거인명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까지 작성하고 〇책으로 (분철)작성하였음

○○구·시·군의 장 [인]

(2) 이 선거인명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까지 ○○장소와 ○○ (구)·(시)·(군)첫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게 하였음

○○구·시·군의 장 [인]

(3) 이 선거인명부는 년 월 일 확정되었음

ㅇㅇ구ㆍ시ㆍ군의 장 [인]

주: 1.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1)항 및 (3)항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2. (3)항은 명부의 이의·불복신청에 대한 결정과 변경사항의 수정에 따라 추가로 명부에 올린 후 명부의 확정시 끝부분에 기재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가)]** <개정 2015.12.24.>

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

투표구명	인 구 수 (년 월 일		거인명투 된 선거		인구수에 대한 선거인수	세대수	固	고
	현재)	계	남	여	비 율(%)			

- 주: 1. 인구수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의 인구수를 기재한다.
 - 2. "인구수·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세대수단에는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따로 적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외국인의 수를 적어 각각 쉼표(,)로구분한다.
 - 3.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가지거나 동시선거에서 일부 선거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어 선거인수가 다른 경우에는 선거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3. 선거인명부작성 감독 등(「법」 § 39)

O 선거인명부작성 공무원

- 임면권자 : 구·시·군의 장

- 임면통보 : 임면권자가 지체 없이 소속·직위 또는 직급·성명 및 임면 연월일 등을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통보

임 :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에 명부작성 공무원을 해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 해 임면권자가 관할 구·시·군선관위 또는 직근 상급선관위와 협의하여 해임

- O 선거인명부작성 감독
 - 선거인명부작성의 감독 : 관할 구·시·군선관위 및 읍·면·동선관위
 - 선거인명부작성 공무원 교체 요구 : 관할 구·시·군선관위 및 직근 상급선관위
 - 명부작성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인명부작성에 관하여 구·시·군 선관위 및 읍·면·동 선관위의 지시·명령·시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 그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또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때
- 명부작성 방해 금지
 -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작성사무를 방해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인 명부작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

4. 선거인명부작성의 전산처리(「법」 § 37)

- O 선거인명부 전산작성 사전준비
 - 단말기 및 프린터 일제점검 실시
 - 주민전산 입력자료 중 행정구역 및 명칭 변경시 사전 정비 입력
 - 투표구별 명부작성시 선거인 파일은 통/반을 선택 입력하여 작성
 - 예비선거인명부 출력 및 확인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 2018.5.15.(화) 18:30 이후 예정

• 예비선거인명부는 선거인명부 작성 이전에 1부를 출력하여 전산처리 상태 등을 사전 확인

• 예비선거인명부는 법정서식이 아니므로 외부에 절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 하여야 하고 자치단체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폐기할 것

○ 선거인명부 출력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까지 전·출입자 등 모든 변동사항을 수정·입력
- 변동사항 수정·입력 후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일과 후 선거인명부 전산파일을 작성(익일 작성 불가)
- 선거인명부 전산파일 작성이 완료되면 선거인명부를 기간 내 출력 완료

✓ 선거인명부 파일 작성

- 작성대상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5.22.) 현재「법」제15조에 따라 그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지방의회의원 및 단체장선거는 외국인* 포함)
 - *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 등재자 : 19세 이상 거주자, 전입(거소이전)신고자, 재등록자, 거주불명등록자, 해당 외국인
 - 제외자: 19세 미만자, 말소자, 해외이주자, 국적상실자, 「법」제18조 해당자
- 작성시기 : 선거일 전 22일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 2018.5.22.(화) 18:30 이후
- ✓ 주민등록자, 해당 외국인(지방선거) 순으로 작성

+ 유의사항 +

- ✓ 출력된 선거인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에는 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누락된 선거권자, 선거권이 회복된 자에 한하여 추가등재 가능
 - ** 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누락된 군인 등이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거소투표 신고를 할 경우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미등재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O 선거인명부 전산작성 시 유의사항

- 세대주가 선거권이 없어 당해 세대원 또는 동거인이 타 세대원으로 혼돈되는 것을 방지
 - ✓ 세대원 중 가장 먼저 등재된 선거권자의 세대주란에 "세"자 명기
- 명부 출력 중에 프린터의 장애로 작업이 중단될 경우
 - ✓ 중단된 페이지의 등재번호부터 출력 가능

5. 선거인명부의 수기 작성

- 수기 작성 판단 및 사전 준비
 - 선거인명부의 정확한 전산 출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구·시·군은 수기로 작성
 - 투표구 단위로 명부작성 담당자의 지정 등 사전준비 철저
- 수기 작성시 유의사항
 - 선거인명부의 등재누락 방지
 -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표에 기재된 선거권자의 누락여부 확인 철저
 - 관내 특수시설(기숙사, 병원, 합숙소, 사회복지시설 등)의 선거권자에 대한 선거인명부 등재여부 확인 철저
 - 주민등록표 등과 작성된 명부의 대조·확인 철저
 - 성명, 주소, 생년월일을 정확히 파악 기재
 -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선거권자가 거주하는 통·리의 장과 그 통·리에 거주하는 선거권자 2인 이상의 보증으로 작성
 - 외국인선거권자에 대한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 외국 인기록표에 의하여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출장소장의 확인으로 작성

6. 전출·전입자 조치(국내체류 외국인도 이를 준용함)

- 전입자에 대한 조치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에 신거주지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아 선거인명부도 신거주지에서 등재되어야 함
 - 선거인이 명부작성기준일 다음 날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신거주지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될 수 없음
- 전출자에 대한 조치
 - 선거인이 명부작성기준일에 타 읍·면·동에 전입신고를 하면 선거인명부에 등재될 수 없음

- 전출지 읍·면·동에서는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지 않아야 하며, 이미 등재된 자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기간 중 절차 등에 따라 수정하여야 함
 - ✓ 선거인명부 작성과 관련, 전입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까지 관리하고 전출자에 대해서는 선거기간 중에도 계속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이중 등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7. 국외이주자 조치

- 이민을 위한 국외이주 신고자가 국외로 출국한 후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통보(행정안전부 경유)한 이민출국자 통보서가 읍·면·동에 접수되면 그 접수일을 기준으로 재외국민출국자로 처리하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까지 이민출국자 통보서가 접수되지 아니한 자는 국외이주신고자로 거주자 선거인명부에 등재됨
- 현지이주자는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현지에서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 등을 취득하고 외교부(재외공관장 등)로부터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하며, 외교부(재외공관장 등)에서 통보(행정안전부 경유)한 현지이주자 통보서가 읍·면·동에 접수되면 그 접수일을 기준으로 재외국민출국자로 처리하므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까지 현지이주자 통보서가 접수되지 아니한 자는 거주자 선거인명부에 등재됨

8. 선거권이 회복된 자의 처리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서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 이후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선거권의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선거권이 회복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선거인명부에 등재함
 -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에는 이를 즉시 선거인명부에 등재함
 -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에는 「법」 제41조(이의신청과 결정)·제42조(불복신청과 결정)·제43조(명부누락자의 구제) 규정의 처리 절차에 준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함

9.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자의 처리

- 주민등록말소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또는 그 이전에 재등록을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되어야 선거인명부에 등재 가능하고,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이 지난 후 재등록자 또는 거주불명 등록자는 선거인명부에 등재할 수 없음
 -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5.22.) 후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선거인명부에 등재가 되어 당연히 선거권이 부여되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5.22.)에 말소된 자는 선거인명부에 등재 할 수 없음
-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구·시·군의 장의 착오 등 명백한 잘못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자가 그 말소행위가 원인 무효되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로 주민등록이 회복된 때
 -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에 발견된 때에는 당해 구·시·군의 장이 직권으로 선거인 명부에 등재함
 - 이의신청기간 중에 발견된 때에는 「법」제41조(이의신청과 결정), 「법」제42조 (불복신청과 결정) 규정의 처리절차에 준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함
 - 이의신청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발견된 때에는 「법」제43조(명부누락자의 구제)의 처리절차에 준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함

10. 주민등록 위장전입자 등에 대한 처리

- 사위(詐偽)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포함)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 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하거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변경등록신청을 한 자,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등 소위 위장전입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 247)
- 선거인명부작성 후에도 신규전입자의 거주사실 확인을 철저히 하는 등 위장전 입자에 등에 대해서는 당해 선거구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 조치 필요

◆ 참고사항 ◆

- ✓ 사위등재, 위장전입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법」 §247①)
- ✓ 「법」제39조(명부작성의 감독 등) 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인명부작성사무를 방해하거나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법」 §256③2호가목)

11. 명부의 효력

- O 선거인명부는 형식적으로 선거권을 가진 자를 확인·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확정하는 공부(公簿)임
- O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작성하도록 하여 수시명부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O 선거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야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는 선거권을 창설하는 효력(형성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님
 - ✓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라 하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선거권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 하면 투표를 할 수 없음(「법」§156)
 (다만,「법」§41·§42·§43의 이유 있다는 결정통지서를 지참하면 투표 가능)
 -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이후라도 국적을 상실하면 투표를 할 수 없음

제 5 장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 1. 거소투표신고 기간·방법·내용·대상(「법」 § 38. 규칙 § 11)
 - 신고기간 :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중(선거일 전 22일부터 5일간)
 -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 2018.5.22.(화) ~ 5.26.(토) 18:00까지
 - 신고방법 :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 구·시·군청 및 읍·면·동에 신고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거소투표신고
 - ✓ 등기우편(국가 또는 해당 지자체 부담) 또는 인편신고 가능, 구두신고는 불가
 - 신고내용: 거소투표사유,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거소
 - 신고대상 :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 거주자(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 제외)로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법」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법」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부대장 또는 경찰관서장의 확인 필요
 -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의 장 확인 필요
 -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주소지나 머무는 곳의 통·리·반장의 확인 필요
 - ✓ 다만, 통·리장 또는 반장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거소투표신고를 한 경우 그 사람이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자로 확인된 때에는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거소투표자로 등재할 수 있음(규칙 \$114) 단서)
 - ③-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 통·리·반장의 확인절차 없이 거소투표신고 가능

등록장애인 중 거동불능자 거소투표신고 관련

- 구·시·군의 장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에게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0일까지 거소투표 신고 안내문과 거소투표신고서 발송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 2018.5.12.(토)까지
 - ※ 안내문은 거소투표신고서의 빈자리에 안내사항을 적는 방법으로 갈음
- 등록장애인 중 거동불능자 판정기준(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신	체	적	장	ОН				정	신적 장	·Oll
지처 (하지 척추	l, 뇌병 ^l	변 시 ²	가 청각 (평형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 요루	뇌전 증	지적 장애	자폐성 장 애	정신
2급 이싱	3급 · 이싱			4급 이상	2급 이상	2급 이상	2급 이상	2급 이상	2급	2급	2급 이상	2급 이상	1급

- ※ 위 "기준표" 외의 장애유형 및 등급에 대하여도 거소투표 대상으로 판단될 경우 거소투표신고 안내를 할 수 있음
- ④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 확인을 요하지 않음
 - ✓ 인천 팔미도·굴업도·지도·선미도·부도, 경기 풍도·육도·국화도, 충남 유부도, 전북 상왕등도·하왕등도, 전남 소두라도·소횡간도·황제도·장도·원도·서화도· 허우도·덕우도·충도·신도·백일도·흑일도·동화도·여서도·당사도·횡간도·다랑도· 우도·섭도·어룡도·슬도·탄항도·혈도·독거도·맹골도·죽도·곽도·진목도·갈목도· 눌옥도·내병도·성남도·소성남도·소각씨도·대각이도·석만도·횡도·기도·고사도· 평사도·율도, 경북 독도, 경남 국도·갈도·가왕도, 제주 횡간도·추포도
- ⑤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자 → 확인을 요하지 않음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0일까지 지정·공고
 -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 2018.512.(토)까지
- ⑥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 선거구(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 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을 말함) 밖에 거소를 둔 사람 → 확인을 요하지 않음
- 등기우편요금
 -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는 국가가 부담,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별지 제3호서식의(가)] <개정 2015.8.13.>

거 소 투 표 신 고 서

이 신고서는 년 월 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되어야 거소 투표신고인명부에 올릴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 간만료일 전일(년 월 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주민등록지)	우편번호 (구·시·군)	(습·면) (1	대로·로·길)	세 대 주 성 명	
거 소 (우편물을 받이볼 수 있는 장소)	우편번호 (구·시·군)	(읍•면) (1	대로·로·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신고사유란의 해당 사유에 ○표를 하고, 1·2·3에 해당하는 사람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거소투표 신고사유	확 인 자	확 인 란				
1.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 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부대장· 경찰관서장	·장의 직명(성명) 				
2.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 소·구치소의 장	·장의 직명(성명) 				
3.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주소지나 머무는 곳의 통리·반의 장	·장의 직명(성명)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시는 사람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본인은 「공직선거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거소투표를 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6
	신고인			ପ୍ର
_구·시·군의 장 귀하				

주: 1.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적습니다.

- 2. "거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곳으로서 ① 군인은 부대소재지의 행정구역명칭과 고유사서함번호 및 소속 중대명을, ② 승선자는 함정 또는 배에서 내리는 때의 머무는 곳을, ③ 병원·요양소에 머무는 사람과 수용소·교도소·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은 그 기관·시설명을, ④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과 거소투표대상이 되는 외딴 섬 등에 사는 사람은 그 거주하는 곳의 상세주소와 참고항목까지(세입자는 "○○○맥"까지) 자세히 적어야 하며, "전화번호"란에는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3.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확인은 그 소속기관·시설의 명칭과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적고 직인(職印)을 찍거나, 주소지나 머무는 곳의 통·리·반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적고 그 사람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 4. 성명은 한글로 적고 신고서에는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
- 5.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 및 자신의 뜻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소투표신고인에 게는 거소투표용지를 보내지 아니합니다.
- 6.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습니다.
- 7. 삭제 <2015.8.13.>

[별지 제3호서식의(라)] <개정 2015.8.13.>

거소투표신고서

귀하께서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고, 거소투표 신고를 한 후에는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신고서는 년 월 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되어야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릴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 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년 월 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우편번호				세디	내 주	
(주민등록지)	(구·시·군)	(읍•면)	(대로・로・길))	성	명	
거 소	우편번호				저호	·번호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	(구·시·군)	(읍•면)	(대로·로·길))	(휴대전	. –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여

본인은 「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제3호에 따라 거소투표를 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_			(1)
구·시·군의 장 귀하				

- - 2. "주소"라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적습니다.

주: 1. 이 서식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위한 것입니다.

- 3. "거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곳으로서 병원·요양소에 머무는 사람은 그 기관·시설 명을,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그 머무는 곳의 상세주소와 참고항목 까지(세입자는 "○○○댁"까지) 자세히 적어야 하며, "전화번호"란에는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4. 성명은 한글로 적고 신고서에는 반드시 본인이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
- 5.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과 자신의 뜻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소투표신고인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보내지 아니합니다.
- 6.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2018.6.13.(수)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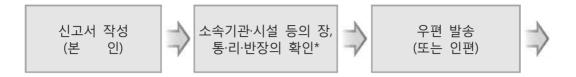
- □ 신고기간 : 2018.5.22. ~ 5.26. (5일간)
- □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초기화면 또는 분야별 정보(선거 정보) 메뉴의 자료실에서 거소투표신고서식 출력하여 사용가능

구 분	신 고 대 상 자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거소(자택· 요양소 등 머무는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곳)에서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투표할 자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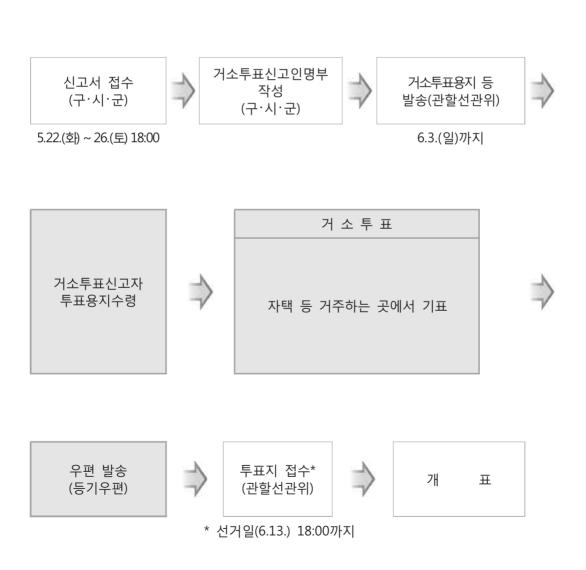
□ 신고서 작성 및 발송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하여 2018년 5월 26일(토)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시설의 장의, ③의 경우(「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18년 5월 25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거소투표신고서 처리 및 투표절차



* 소속기관·시설의 장, 통·리·반장의 확인: 등록장애인 중 거동불능장애인은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지 않으며, 사전에 거동불능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은 장애인도 거동 불능사유가 생긴 때에는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거소투표를 할 수 있음



3. 거소투표신고서 교부

- 거소투표신고서 교부시 안내 철저
 - 거소투표신고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할 때에는 주소·거소·성명의 기재요령과 거소란에는 반드시 우편번호와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안내
 - ※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인 도로명주소를 기재
 - 거소투표신고서는 2018.5.26.(토) 18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 소신고지에 도착되도록 작성하여 인편 또는 우편으로 보낼 수 있도록 안내
- 거소투표신고서 대량 수요처 사전점검
 - 거소투표신고서는 일률적으로 균등 배분하지 말고 거소투표신고대상자가 많은 지역 또는 시설(병원, 요양소 등)을 사전에 파악, 과부족이 없도록 차등 배부
- O 거소투표신고서의 민원창구 비치
 - 시·도, 구·시·군, 읍·면·동 민원창구에는 반드시 변경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신고 개시일 7일 전까지 사전에 비치하여 거소투표신고대상자의 편의 도모

4. 거소투표신고서 접수

- O 접수기간: 신고기간과 동일
 -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 2018.5.22.(화) ~ 5.26.(토) 18시까지
- 접수방법
 - 우체국 또는 구·시·군의 장은 다른 구·시·군의 장에게 송달되어야 할 거소투 표신고서를 배달 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거소투표 신고기간 만료일의 마감 시각까지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도달시킬 수 없는 경우
 - 우선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송부하고, 그 원본을 지체 없이 송부
 - 이 경우 당해 구·시·군의 장은 모사전송으로 도달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접수 하여 거소투표신고서 접수부에 기재하고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 하되, 거소투표신고서 원본을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함
 - 모사전송된 거소투표 신고서와 그 원본을 함께 거소투표신고서철에 편철 하여야 함

+ 유의사항 +

- ✓ 거소투표신고서를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송부한 후에 접수되는 거소투표신고서도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함
- ✓ 모사 전송시 거소투표신고서 여백에 "원본과 틀림없음"을 기재한 후 전송자의 사인을 날인하여 송부하고, 그 원본은 즉시 우편(등기)으로 송부하며, 모사 전송한 사본은 발송한 기관에서 당해 선거의 임기만료일까지 별도 보관
- 신고서 접수시 신고요건 미비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접수부에 기재
- 접수부의 「거소투표신고사유(비고)」란에는 거소투표신고서의 거소투표신고 사유란에 표시된 해당번호를 기재(요건 미비자는 사유 기재)
- 신고기간 중 신고서를 모아 두었다가 접수부에 일괄 기재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 요건 미비자는 그 사유를 거소투표신고서 접수부의 「거소투표신고 사유(비고)」란에 기재한 후 본인에게 지체없이 그 뜻을 통지하고 투표소에 직접 나와서 투표하도록 안내
- 신고기간이 지난 후 도착되는 신고서라도 수취를 거절해서는 안되며, 일단 거소 투표신고서 접수부에 모두 기재한 후 신고기간 경과 후 접수되었음을 「거소투표 신고사유(비고)」란에 명기하고, 신고인 본인에게는 신고요건 불비로 거소투표를 할 수 없으므로 선거일에 직접 투표소에 와서 투표하도록 통보·안내함
 - ✓ 거소투표신고기간이 5일간으로 한정되어 있고 거소투표신고대상자가 기재사항 누락 및 요건 미비자로 처리되어 통보되었을 경우 재작성 신고할 기간이 없으므로 거소투표신고인에게 작성방법을 사전 주지시키기 바람
- 거소투표신고서 작성자가 본인인지 의사, 필체 등을 통해 허위·대리 거소투표 신고 여부 철저 확인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가 통리 또는 반의 장의 확인을 받지 않고 작성한 거소투표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 구·시·군의 장이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거소투표 신고인명부에 등재할 수 있음(규칙 §11④ 단서)
 - ✓ 거소투표신고서 여백에 그 확인 내용을 기재하고 담당자가 서명 또는 날인 하도록 함

- 법령에 따라 사전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소속부대장의 확인인이 날인되어 있으나확인자의 직위가 중대장, 대대장 등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소속부대장이 아닌 것이 명백하지 아니한 이상 신고요건이 구비된 것으로 봄
- 거소투표신고서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 하여 거소투표신고인 본인임을 구·시·군의 장이 확인한 때에는 보완등재 할 수 있음
- 거소투표신고 요건이 구비된 신고라면 신고서에 반드시 본인의 자필이나 우편에 의한 신고를 요하는 것은 아니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당한 신고서로 보지 아니함
-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가 신고기간이 마감된 후 신고서의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일단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자는 반환이 불가하여 거소투표를 실시 하여야 하나
 - 허위로 신고한 자 및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거소투표신고인에게는 당해 구·시·군선관위의 의결로 거소투표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 이 경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가 되었을지라도 지체없이 당해 선거인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주민등록지 (국내거소신고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는 뜻을 통보
-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통지 받은 거소 투표용지 미발송·반송자 명단을 지체없이 투표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받은 거소투표 투표용지 미발송자와 반송자의 선거인명부 해당 「비고」란에 "미발송". "반송"이라 기재하고 당해인이 선거일 투표시 인정 처리

5. 거소투표신고의 철회

- O 거소투표신고기간 내에 철회 요구 시
 -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그 명부와 거소투표신고서접수부에서 삭선하여 삭제하고 각 "비고"란에 그 사유와 연월일을 기재한 후 구·시·군의 장의 사인을 날인함
 -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거소투표신고자"라 명기된 사항을 삭제하고 그 여백에 "철회"라고 기재한 후 연월일과 구·시·군의 장의 사인을 날인함
- 거소투표신고기간이 만료된 후에 철회 요구 시
 - 거소투표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는 철회할 수 없으나, 거소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는 때에는 투표할 수 있음을 통지·안내함

[별지 제3호서식의(나)](규칙 제11조제3항 관련) 〈개정 2014.1.17〉

거소・선상투표신고서 접수부

접수번호	성	명	주	소	거소·선상	낭투표신고
접수일자	생년월	일·성별	거 (우편번호)	소 ·(전화번호)	사 (비	유 고)

- 주:1. 이 접수부에는 거소 · 선상투표신고서의 해당 신고사항을 기재한다.
 - 2. 신고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 또는 신고를 한 사람 중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하여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올릴 수 없는 사람은 그 사유를 비고란에 적는다.
 - 3. "거소·선상투표신고사유" 란에는 해당 신고서의 신고사유란에 표시된 해당 번호 또는 내용을 적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별지 제3호서식의(라)에 따라 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람은 그 거소가 병원·요양소인 경우에는 "2"로, 그 밖의 경우에는 "3"으로 적는다.

6.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및 확정

- O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 작성기간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 2018.5.22.(화) ~ 5.26.(토)

- 작성권자 : 구·시·군의 장
- 작성부수 : 투표구별로 2통(구·시·군용, 관할 구·시·군위원회 송부용 각 1통)
- 기재방법
 - "거소"란에는 거소투표신고서의 거소란에 적혀 있는 내용을 기재
 -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되는 대상자는 즉시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거소투표자"로 기재

O 명부작성시 유의사항

- 거소투표신고서접수부는 거소투표신고서 접수순에 따라 작성함
- 거소투표신고서의 하단 중앙여백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기재하고 거소투표 신고인명부 등재순에 의하여 투표구별로 편철함
- 거소투표신고인명부가 작성되면 이중등재 여부, 결격자등재 여부, 정당한 신고자의 누락 여부, 거소성명·우편번호 오기 여부 등을 거소투표신고서와 철저히 대조하여 오류가 없도록 함
- 확정된 거소투표신고인명부는 수정할 수 없음
- 확정된 거소투표신고인이 사망자, 결격자로 확인된 때라도 확정된 거소 투표신고인 수를 변경 처리하지 아니함
- 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확정 및 송부(「법」 § 44, 규칙 § 16)
 -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일 :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 2018.5.27.(일)

- 확정된 거소투표신고인명부 등 송부
 - 구·시·군의 장은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 후 그 확정상황을 지체없이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 구·시·군의 장은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자의 거소투표신고서를 거소투표신고인명부 등재번호순으로 정리·편철하여 그 명부 확정 후 즉시 그 명부와 함께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함
- 구·시·군의 장은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후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른 자가 거소투표신고자인 때와 사망자, 결격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함

[별지 제2호서식의(다)] (거소투표신고인명부)·(선상투표신고인명부) <개정 2015.12.24.>

등재	선거인명부등재번호	성 명	주 소	刊
번호	(거소투표)·(선상투표) 접수일시	생년월일, 성별	거소(우편번호)	卫

- 주: 1.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적는다.
 - 2. "거소"란에는 거소투표신고서의 거소란에 적혀 있는 내용을, 선상투표신고서는 선박의 명칭란 및 팩시밀리 번호란에 적혀 있는 내용을 적는다.
 - 3.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있는 사람은 "비고"란에 "비례 대표 선거권자"로, 동시선거에서 일부 선거의 선거권만 있는 사람은 "〇〇 선거권자"로 적는다.
 - 4.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선거권이 없는 사람, 사망한 사람, 잘못 적힌 사람에 대한 통보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비고"란에 적는다.
 - 5. 명부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 순서는 선거인명부등재번호 순에 따른다.
 - 6. 그 밖에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방법은 선거인명부 작성방법에 준하다.

거소투표신고서 접수·처리 등의 잘못된 시례에 대한 예방·대처방안

항 목	사 례	예방·대처방안
	○ 요건이 미비된 신고서를 방치하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처리 미숙으로 신고인으로부터 이의가	○ 거소투표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거소 투표신고서 접수부에 모두 등재한 후
요건미비 신고자에	제기되는 사례	○신고요건 구비여부와 선거인명부에 등재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요건 구비자는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바로 등재
대한 처리	○접수부에 접수 처리하지 않고 신고한 본인에게도 그 사유를 통보해 주지 않은 사례	○신고요건이 미비된 자는 그 접수부 "비고" 란에 신고요건 미비사항 요지를 기재하고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할 수 없는 사유와 선거일에 직접 투표소에 나와서 투표해야 함을 본인에게 통보
선거인명부 비고란에 "거소투표 신고인" 기재 처리	○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거소투표 신고인"이라고 명기하지 않아 선거인 명부상의 거소투표신고인수와 거소 투표신고인명부상의 신고인수가 상이 하여 거소투표신고자를 조작 등재 하였다는 오해 발생 사례	○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즉시 반드시 선거 인명부와 대조·확인하여 "거소투표신고자" 기재여부 확인
	○거소투표신고 접수 마감일이 지나서 도착되는 거소투표신고의 접수를 거부하는 사례	○기한이 지난 거소투표신고서라 하더라도 일단 거소투표신고서 접수부에 모두 기 재한 후 신고기간 경과 후 접수되었음을 "비고"란에 명기함
거소투표 신고서 접수마감 처리		○신고한 본인에게는 신고요건 미비로 거소 투표를 할 수 없음을 통보하여 선거일에 투표소에 직접 와서 투표할 수 있도록 통지함
	○ 신고기간 경과 후 도착되는 신고서가 신고기간내에 발송우체국의 소인이 된 것이라 하여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하는 사례	○ 우체국소인이 신고기간 내에 찍혀진 것이라 하여 모두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신고기한 내에 접수되어야 명부에 등재할 수 있음

	11 31	MIHL FILL OF
항 목	사례	예방·대처방안
	○읍·면·동직원, 통·리·반장 등이 자기 관내 선거권자의 거소투표신고서를 대신 작성해 주는 사례	○거소투표신고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인 이 직접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함
거소투표 대리신고에 대한 처리	○장애인수용시설에 집단 거주하는 정신 지체장애인에 대한 거소투표신고를 대리신고한 사례	○ 거소투표신고자 본인의 성명과 신고자의 성명이 다르거나, 거소투표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란에 타인의 서명 또는 인영이 찍혀 있는 경우에는 신고요건이 미비된 것으로 판단하여 처리함
	○동일한 필체로 작성된 거소투표 신고서 여러 매가 접수되어 거소투표 신고인명부 확정후 대리신고 사실이 발견된 사례	○ 동일한 필체로 작성된 거소투표신고서가 여러 매 접수될 때는 대리신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본인 의사를 전화 확인하여야 함
거소투표신고의 철회 요구에 대한 처리	○신고기간이 만료된 후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가 사정에 의해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를 하기 위해 본인의 거소투표 신고를 철회 요구하는 사례	○ 거소투표신고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철회 요구가 불가하며 투표를 하여야 함을 안내. ○ 다만, 거소투표용지발송 등기우편물이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음
거소투표 신고서의 편철	○ 거소투표신고서를 거소투표신고인 명부 등재순으로 편철하지 않은 사례 ○ 거소투표신고서를 투표구별로 구분 하지 않고 접수순서에 의하여 읍 면·동 전체로 편철	○ 거소투표신고서의 하단 중앙여백에 선거인 명부 등재번호를 기재하고 투표구별, 거소 투표신고인명부 등재 순위별로 편철하도록 함
군인의 거소투표 신고서 처리	○소속 부대장의 직인이 아닌 사인이 날인 되었다는 이유로 부적격한 거소 투표신고로 처리한 사례	○사인이 날인 되더라도 유효한 거소투표 신고서로 처리함
착오입력	○신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동명이인 등)을 등재한 사례	○거소투표신고서에 의한 전산입력 철저
	○거소투표신고인의 주소, 우편번호 등을 착오 전산입력하여 투표용지가 반송된 사례	○전산입력 후 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출력 하여 거소투표신고서와 철저히 대조확인 (오기입력 사항 발생시 수정 입력)

사전투표 관련 안내사항

□ 도입 배경

- 선거일 전에 투표하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전 신고 없이도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도모하고 선거권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도입한 것으로
- 투표용지 발급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선거인에게 해당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발급·교부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사실상 세계 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제도라 할 수 있음
 - ※ 통합명부는 명부작성권자(구·시·군의장)로부터 선거인명부를 송부 받아 중앙위원회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하나의 명부를 작성**한 후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사용

□ 용어 변경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재자신고	거소투표신고	
부재자신고서	거소투표신고서	
부재자신고인명부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부재자투표소	사전투표소	
부재자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 사전투표소 대상 및 범위

○ 대상선거 : 모든 공직선거

○ 대 상 자 : 선거일 전에 투표하려는 선거인

○ 설치단위 : 관할구역 안의 읍·면·동마다 1개소

※ 읍·면·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설치 가능

○ 기 간 :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06:00~18:00

※ 2018.6.13.(수) 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기간 : 6.8.(금), 6.9.(토)

□ 사전투표 절차 및 방법

- 본인여부 확인(신분증 사진과 얼굴 대조)
- 본인확인기 신분증명서 스캔 → 선거인 조회(명부단말기)
- 명부등재 확인되면 본인확인기에 "손도장" 또는 "서명"

○ 투표용지 발급기 이용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을 출력하고, 회송용 봉투에 주소라벨을 부착 하여 투표용지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

☞ 관내선거인 : 투표용지(7종) 발급하여 교부 ※ 제주5종, 세종4종

☞ 관외선거인 : 출력된 주소라벨을 회송용봉투에 부착하여 투표용지(7종)와 회송용 봉투(1매)를 교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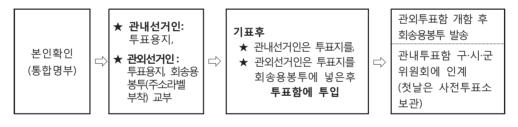
○ 관내선거인은 기표한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하고, 관외선거인은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은 후 봉함하여 투표함에 투입

<사전투표와 종전 부재자투표 방법 비교>

종전 부재자투표

 투표용지, 회송용봉투 지참
 □
 확인인 날인
 □
 투표 (기표소)
 투입
 □
 우체국 인계

통합명부사용 사전투표



□ 사전투표 장비 및 보안

- 통합선거인명부의 운영은 통합선거인명부 서버, 운용프로그램, 통합명부통신망, 통합 명부운용장비로 구성
 - ※ 통합명부운용장비는 명부단말기(노트북PC), 투표용지 발급기, 본인확인기(손도장 또는 서명입력기), 유·무선통신장비, 무정전전원장치가 있음
- 통합명부통신망은 보안성이 강화된 국가정보통신망 또는 전용망으로 구축, 전기 통신 장애 등 대비 '통신사 무선통신망'을 보조망으로 구축
 - ※ 주통신망과 보조통신망으로 이원화하여 안전성 확보
- 국가정보통신망이 설치되지 못하는 경우 전용회선을 설치하고 선거정보 통신망을 이용 하여 주통신망 구성
-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의 투표용지 발급 기록을 실시간 통합선거인명부에 기록· 유지하여 해당 선거인이 다른 사전투표소에서는 물론, 선거일에 일반투표소에서 투표 할 수 없음(이중투표 방지)

제 6 장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누락자 구제

1. 명부 열람(「법」 § 40, 규칙 § 13)

O 열람기간: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 2018.5.27.(일) ~ 5.29.(화)

- 열람시간 :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함. 다만, 인터넷 열람은 상시 열람 가능
- 열람장소 : 구·시·군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통상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 열람장소·기간·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열람방법 공고 : 열람개시일 전 3일까지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 2018.5.24.(목)

- 공고를 요하는 사항을 공고하지 않으면 선거의 무효사유가 될 수도 있음
- 공고 후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장소를 변경하여 다시 공고할 수 있음
- O 인터넷 열람과 관련 구·시·군이 조치하여야 할 사항
 -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열람 및 이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술적 조치
 -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선거인명부의 열람 방법을 안내
- O 선거인명부 열람 안내
 - 열람의 일시·장소 등을 적극 홍보하여 많은 유권자가 열람하도록 안내
- O 명부 열람시 관계공무원 등 참여
 - 구·시·군의 장은 명부 열람 시 반드시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 선거인 명부 오류 등 방지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1.7.28>

공고 제	호 선 ア	린민	병부 열	함 및	등재여니	부 확인	기간 등	공고
선거인명	부 열람	과 확					음과 같이 공	시하는 ○○선거의 고합니다. ○구·시·군의 장 ⑪
1. 선거인 가. 열택		별람						
	년		일부터 일까지			일간(-	공휴일에 불구	¹ 함)
나. 열루 다. 열루		: 매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6	시까지(인	터넷 열람은	<u>-</u> 열람시간 <i>></i>	네한없음)
	장 소	는 명 			소 	재 지		비고
라. 인E 마. 인E			페이지 주:	<u></u> 소				
2. 선거인 가. 확약		박정 후	- 등재여부	· 등 인터넷	확인			
	년 년		일부터 일까지			일긴	<u>)</u> (확인시간 계	에한없음)
다. 인터 라. 인터	!대상 : 넷 확인 넷 확인	선거인 인 홈페 인방법]명부 등7 이지 주소				인)시 접속방'	법 등을 기재합니다.

2. 이의신청과 결정(「법」 § 41, 규칙 § 13)

O 신청기간: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3일간)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 2018.5.27.(일) ~ 5.29.(화)

○ 신청권자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의신청 가능
- 신청방법 :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인터넷홈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음
- 심사결정
 - 심사·결정기한 :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 심사·결정권자 : 구·시·군의 장
 -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 :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관계인과 관할 구·시· 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
 -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 : 그 뜻을 신청인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
- 이의신청의 친절·신속한 처리
 - 구술·서면 신청에 불구하고 접수 즉시 확인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석에서 심사·결정하여 본인에게 통보
 - 심사·결정의 잘못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불복신청 요구사례가 없도록 신중 처리

3. 불복신청과 결정(「법」 § 42)

- O 신청기간 : 이의신청 심사·결정 결과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 신청권자 : 이의신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
- O 신청방법 :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
- 심사·결정
 - 기 간 :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 결정권자 :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 : 즉시 관계 구·시·군의 장에게 통지하여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게 하고 신청인과 관계인에게 통지

-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 : 그 뜻을 신청인과 관계 구·시·군의 장에게 통지

4. 명부누락자의 구제(「법」 § 43. 규칙 § 15)

○ 누락자의 명부등재 신청기간 : 이의신청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2018.5.30.(수) ~ 5.31.(목)

- O 신청권자 및 신청방법
 - 누락된 선거권자 또는 구·시·군의 장은 주민등록표등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
- 신청사유 : 구·시·군의 장의 착오 등으로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경우
- 심사·결정
 - 기 간 :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 결정권자 :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 : 즉시 관계 구·시·군의 장에게 통지하여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게 하고 신청인에게 통지
 -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 : 그 뜻을 신청인과 관계 구·시·군의 장에게 통지

★ 유의사항 ★

✓ 선거인명부 작성 후 발생된 누락자에 대해서는 구·시·군의 장이 임의로 선거인 명부에 등재시킬 수 없으며, 이의신청 및 명부누락자 구제신청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함

[별지 제8호서식] (규칙 제15조 관련) 〈개정 2015.8.13.〉

선거인명부등재신청서

	선거인명부등재대~	투표구명	드케시커카이	비고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一子華子の	등재신청사유	ul 17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선거인명부의 등재를 신청합니다.

덧붙임: 소명자료 ○부.

년 월 일

- 주 : 1. "주소" 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적는다.
 - 2. 주소·연령에 관한 소명자료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금치산 또는 수형사실에 관한 소명 자료는 해당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류 등을 말한다.
 - 3. 선거인명부등재대상자가 많을 때에는 그 명단을 별지로 작성할 수 있다.

제 7 장 선거인명부의 수정 및 확정

1. 선거인명부의 수정(규칙 § 14)

- O 선거인명부를 수정하는 경우
 - 명부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 시 구·시·군의 장이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
 -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시 관할 구·시·군선관위가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하고 그 사실이 관계 구·시·군의 장에게 통지된 때
 - 명부 누락자 구제신청 시 관할 구·시·군선관위에서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하고 그 사실이 관계 구·시·군의 장에게 통지된 때
 - 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이 지난 후 선거인명부 확정 전까지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 중 오기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

O 선거인명부 수정방법

〈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

- 수정할 사항이 있더라도 명부작성 만료일까지는 여하한 형태의 수정(삭선처리, 글자의 수정, 「비고」란에 사유기재 및 작성권자의 사인날인 등)처리는 없어야 함
 - 다만, 행정기관의 착오에 의하여 누락된 자가 거소투표신고를 하였을 경우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이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고 거소투표신고인 명부 에도 함께 등재
- ✓ 선거인명부의 수정처리는 「공직선거관리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명부의 열람 개시일부터 가능함

〈 선거인명부 확정 전 〉

- 「법」 제41조(이의신청과 결정), 「법」 제42조(불복신청과 결정), 또는 「법」 제43조(명부누락자의 구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할 때에는 그 사유와 연월일을 비고란에 기재하고, 구·시·군의 장의 사인 날인

- 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이 지난 후 선거인명부확정 전까지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 중 오기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되, 비고란에 그 사유와 연월일을 기재하고 구·시·군의 장의 사인 날인
- 선거인명부 확정 전에 발생된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선거인명부 확정 후 「선거인 명부 수정상황통보서」를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통보
 - ☞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자는 선거인명부확정과 별개로 수정상황이 발생되면 그때마다 구·시·군선관위로 통보

〈 선거인명부 확정 후 〉

- 선거권이 없는 자, 사망자, 이중등재자, 오기된 자를 발견한 때에는
 - ✓ 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경우 그때마다 지체없이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별지 제7호 서식의 (나)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당해 구·시·군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인명부「비고」라에 사유 기재
- ✓ 선거인명부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나)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
 - ① 선거인명부 확정 후부터 사전투표기간 만료일(6.9.)까지 : 그때마다 구·시·군선관 위에 통보하고, 구·시·군선관위는 통합 선거인명부의「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
 - ② 사전투표기간 만료 익일(6.10.)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 구·시·군 및 읍·면·동선 관위에 통보하고, 읍·면·동선관위는 사전투표기간 중 투표한 사람의 정보가 반영된 선거인명부의「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송부받은 거소투표신고인 명부(전산자료 복사본 포함)의 기재사항에 오기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시·군의 장에게 거소투표신고서와 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대조·확인을 요구할 수 있음
-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거나 반송된 거소투표 신고인의 명단을 통지받은 때에는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

-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투표관리관에게 송부한 후에 구· 시·군의 장 또는 구·시·군선관위로부터 오기 등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투표관리관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투표관리관은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

2.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법」 § 44, 규칙 § 16)

- 명부확정 시기
 - 선거인명부 : 선거일 전 12일
 -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 2018.6.1.(금)
 - 거소투표신고인명부 :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 다음 날
 -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 2018.5.27.(일)
- 명부의 효력 : 당해 선거에 한함
 - ✓ 동시선거에 있어서 선거인명부와 거소투표신고인명부는 하나의 선거인명부와 거소투표신고인 명부에 의함(「법」 §204①)
- 명부 확정상황 통보
 - 선거인명부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가 확정된 후 지체없이 그 확정상황을 별지 제9호 서식의 (나)·(다)에 의하여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
 - ✓ 확정된 선거인명부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도 함께 송부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구·시·군의 장에게서 제출받은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으로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하므로 지체없이 송부
 - 구·시·군의 장은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자의 거소투표신고서를 그명부등재번호순으로 정리·편철하여 명부 확정 후 즉시 그 명부와 함께 관할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
- 구·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확정된 선거인명부 등재여부, 등재번호 및 투표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6.2. ~ 6.13.)

[별지 제7호서식의(나)] (규칙 제14조제4항 관련) 〈개정 2015.8.13.〉

확정된(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오기사항등의 통보서

투표구명	등 재 번 호	성 명	오 기 사 항 등	비고

- 주 : 1. "오기사항등" 란에는 오기·선거권이 없는 자·사망자등에 대한 사실을 기재한다(예 : 성명중 "ㅇㅇ" 은 "××" 의 오기임, ㅇ년 ㅇ월 ㅇ일 ㅇㅇ법 위반으로 ㅇㅇ형을 받음, ㅇ년 ㅇ월 ㅇ일 사망함등).
 - 2.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과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각각 "주민등록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라 적는다.

[별지 제9호서식의(나)] 〈개정 2015.12.24.〉

선거인명부확정상황통보서

투표 구명	① 인구수 (년월일	② 선거역 명부에 재된	등 ' 5	③ <u>-</u> 일수정에 의한	④ 이의·불복 결정에) 신청등의 의한		⑥ 거소투표 신고인명부	⑦ 선상투표 신고인명 부등재자	인구수에 대한 선거인수	8 세대수	비고
	현재)	선거인		감	증	감	수	등재자수	수 수	비율(%)		
		계										
		남										
		여										

- 주 : 1. 이 서식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①란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의 인구수를 기재한다.
 - ②라은 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상의 선거인수(거소·선상투표신고인수를 포함한다)를 기재한다.
 - ③란은 선거인명부확정 전까지 사망자·선거권이 없는 자 및 이중등재자 등의 발견으로 직권수정하여 감소된 선거인수를 기재한다.
 - ④란은 선거인명부열람에 의한 이의·불복신청에 대한 결정 및 선거인명부열람기간이 지난 후부터 선거인명부 확정 전까지 누락자에 대한 명부등재결정으로 인하여 증감된 선거인수를 기재한다.
 - ⑤란은 ②란의 선거인수에 ③・④란의 수를 증감한 수를 기재한다.
 - 2. ①부터 ⑧까지의 란에는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따로 적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작성(⑥⑦란 제외)하되, ()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외국인의 수를 적어 각각 쉼표(,)로 구분한다.
 - 3.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가지거나 동시선거에서 일부 선거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어 선거인수가 다른 경우에는 선거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4. 이 통보서에는 별지 제1호 〈선거인명부수정상황〉과 별지 제2호 〈선거인명부확정내역〉을 작성·첨부한다.

<별지 제1호>

선거인명부수정상황

F고기머	선거인명부	ᇪᇳ	수정	내용	人づりの	धो न
투표구명	등재번호	성 명	수정전	수정후	수정사유	미끄

- 주: 1. 수정사유란은 이의신청: 불복신청등에 대한 결정, 오기, 누락, 이중등재, 사망, 선거권이 없는 자 등으로 기재한다.
 - 2. 선거인명부에 누락되었던 자가 "세대주"인 때에는 비고란에 "세"라고 기재한다.
 - 3.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과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각각 "주민등록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이라 적는다.

<별지 제2호>

선거인명부확정내역

	① 주민등록이 된 거주자·거주불명자 선거인수						②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 선거인수								
투표 구명	확정된 선거인수 (①+②+ ③)		계	사전 투표소 또는 투표소 에서 투표 할 선거인	거소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	선상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	재외 투표소 에서 투표 할 선거인		계	사전 투표소 또는 투표소에 서 투표할 선거인	신고를 한	선상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	1 71-1-	③ 외국인 선거인 수	비고
		계						계							
		남						남							
		여			·			여							

주 : 이 서식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①란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선거인수를 기재하되,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 거소·선상투표신고를 한 선거인,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②란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 선거인수를 기재하되,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 거소·선상투표신고를 한 선거인,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 거소·선상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은 동시선거에서 일부선거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는 경우(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15조제2항제2호에 해당 하는 자)에는 선거별로 구분하여 그 수를 기재한다. ③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외국인선거인수를 기재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다)] <개정 2015.12.24.>

(거소투표신고인명부) · (선상투표신고인명부) 확정상황통보서

변 인 구 수 투표 (년 월 구명 이 참개)	(서거인명부작성기가			확정된 (거소투표)· (선상투표) 신고인 수				선거인수에 대한 (거소투표)·(선상투표)	비고	
	일 현재)	계	남	여	계	남	여	신고인수 비율(%)	신고인수 비율(%)	

- 주: 1. 인구수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의 인구수를 적습니다.
 - 2. "인구수·선거인수·확정된 (거소투표)·(선상투표)신고인수"란에는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따로 적습니다.
 - 3.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가지거나 동시선거에서 일부 선거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어 선거 인수가 다른 경우에는 선거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4. 거소투표신고인명부와 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구분하여 각각 작성한다.

제 8 장 선거인명부의 재작성 및 사본교부

1. 명부의 재작성(「법」 § 45, 규칙 § 17)

- O 재작성 사유
 - 천재·지변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포함)가 멸실·훼손된 경우 선거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
 - 다만,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송부한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포함) 등본이 있는 때에는 선거인명부를 재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재작성권자 : 구·시·군의 장
- O 재작성 방법
 - 일반적인 경우
 - 「법」 제37조(명부작성) 내지 제45조(명부의 재작성)의 규정에 따라 재작성하되,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송부한 선거인명부등본(전산자료 복사본 포함)이 있는 때에는 선거인명부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관할 구·시·군위원회의 의결로 선거인명부의 작성기준일·작성기간·열람 기간·열람장소·이의신청 및 심사결정·유효기간과 확정 기타 선거인명부의 재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음(규칙 § 17①)
 - 구·시·군선관위가 선거인명부 재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근 상급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규칙 § 17②)

2.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사본의 교부(「법」 §46, 규칙 §18)

○ 교부권자 : 구·시·군의 장

○ 신청권자 :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 비례대표 후보자 및 선거사무장은 제외

○ 신청방법 : 구·시·군의 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다)에 의하되 1종에 한함

O 신청기간: 선거기간 개시일까지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2018.5.31.(목)까지

O 교부수량 : 후보자별 1통(사본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

○ 작성비용 : 교부신청자가 교부신청과 함께 납부하며, 구·시·군의 장이 선거인 명부 작성마감일까지 공시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 2018.5.26.(토)까지

- 서식 :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포함)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의 앞표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에 의하고, 그 끝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나)」에 의한 기재를 하여 원본과 틀림없음을 증명하여야 함
 - ✓ 선거인명부사본은 전산자료에 의하여 출력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사본의 양도·대여금지
 -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 교부받은 선거인명부 또는 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함)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하게 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법」 §256③2호다목)
 -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의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전산자료 복사본에 변조방지 장치를 할 수 있음

[별지 제10호서식의(가)] (표지) 〈개정 2014.7.29〉

(선거인) · (거소투표신고인) · (선상투표신고인) 명부 사본

- 1. 이 사본은 「공직선거법」 제44조에 따른 확정된 선거인명부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한 선거권자가 누락·이중등재 또는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선거권이 없는 자가 올라 있을 수 있습니다.
- 2. 누구든지 이 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ㅇㅇ구·시·군

○○읍·면·동 제○투표구분

ㅇㅇ구·시·군의 장

인

주: 전산자료 복사본에는 "인"을 생략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나)] (끝부분) 〈개정 2014.1.17〉

이 사본은 ○○읍·면·동 제○투표구의 작성된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 인명부)·(선상투표신고인명부)와 틀림이 없습니다.

년 월 일

ㅇㅇ구ㆍ시ㆍ군의 장 인

- 주 : 1.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및 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 교부시에 사본 끝부분에 기재하여야 한다.
 - 2. 전산자료 복사본에는 "인"을 생략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다)] 〈개정 2014.1.17〉

(선거인명부) · (거소투표신고인명부) · (선상투표신고인명부)사본교부신청서

투표구명	명부의 종류	사본의 종류	비고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서「공직선거법」제46조제2항에 따라 명부의 사본교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덧붙임: 사본작성비용 워

년	월	일
─ 후보자	000	@ —
── 후보자 신청인 ── 선거사무장	000	• -
선거연락소장	000	<u> </u>

ㅇㅇ구ㆍ시ㆍ군의 장 귀하

- 주 : 1. 신청인은 신청대상투표구명과 명부의 종류(선거인명부, 거소투표신고인명부 또는 선상 투표신고인명부) 및 사본의 종류(일반 사본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2. 일반 사본과 전산자료 복사본 중 1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0호서식의(라)] 〈개정 2014.1.17〉

공시 제 호

선거인명부ㆍ거소투표신고인명부 및 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 작성비용공시

년 월 일 실시하는 O O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선거 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및 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년 월 일

ㅇㅇ구ㆍ시ㆍ군의 장 인

사본의 종류	일반사본 매당 작성비용	전산자료 복사본 비용	비고
선거인명부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선상투표신고인명부			

3. 세대주명단 작성 - 교부(「법」 § 60조의3. § 111)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관련(「법」 § 60조의3)
 - 교부목적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인쇄물 발송
 - 교부신청범위 :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
 - 신청주체 : 예비후보자등록을 한 예비후보자
 - ✓ 예비후보자 등록시기(「법」§60조의2)
 - · 시·도지사·교육감 : 선거일 전 120일부터(2018.2.13.)
 - ·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 :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2018.3.2.)
 - ㆍ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2018.4.1.)
 - ✓ 선거기간(「법」§33)
 - · 대통령선거 : 23일 / 국회의원·지방의원·자치단체장선거 : 14일
 - 교부신청 :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 전 5일까지 서면으로 신청
 -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 2018.5.19.(토)까지
 - ✓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법」§49①)
 - · 대통령선거 : 선거일 전 24일
 - ·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 선거일 전 20일
- 의정활동보고 관련(「법」 § 111)
 - 교부목적 : 의정활동 보고를 위한 보고서 발송
 - ✓ 다만,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발송할 수 없음(인터넷 게재만 가능)
 - 신청주체 : 국회의원, 지방의원
 - 교부신청 : 연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신청
 - 교 부 : 신청 시 지체없이

- 세대주명단 작성·교부(규칙 § 26조의2, § 49 등)
 - 신청서식 : 별지 제15호의 4서식의 (가)
 - ✓ 신청대상은 지역별·연령별·성별 등을 특정하여 기재
 - 교부의무자 : 구·시·군의 장
 - 작성·교부
 - 신청한 발송대상 범위 안에서 행정구역순, 지번순으로 세대주를 선정하여 교부
 -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고, 전산자료복사본 교부로 갈음할 수 있음
 - 세대주명단의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전산자료복사본에 변조방지 장치를 할 수 있음
 - 작성비용 공시
 - 구·시·군의 장이 매년 1월말까지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의해 공시

[별지 제15호의4서식의(가)] (규칙 제26조의2제11항·제49조제2항 관련) 〈개정 2009.2.19〉

세대주명단 교부 신청서

ㅇㅇ선거 ㅇㅇ선거구

명단의 종류	신청대상	신청세대수	비고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3항)·(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명단의 교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덧붙임: 작성비용 원

년 월 일 국 회 의 원 OOO ① 신청인 OO의회의원 OOO ① 예비후보자 OOO ①

○ ○ 구·시·군의 장 귀하

- 주 : 1. 명단의 종류에는 "일반명단"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을 기재합니다.
 - 2. "신청대상"은 지역별·연령별·성별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3. 예비후보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수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2호의2서식] <신설 2005.8.4> 공시 제 호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3항)·(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 명단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년 월 일

○○구·시·군의 장 [0]

일반명단 매당 작성비용	전산자료 복사본 비용	비고

[규칙 제31조제4항 규정 관련]

시각장애선거인 세대주 명단 교부신청서

1. 선거명 : ○○선거 ○○선거구

2. 후보자 성명:

3. 명단의 종류 :

「공직선거법」제66조에 따른 점자형 선거공약서의 우편 발송을 위하여「공직선거관리규칙」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각장애인선거인과 그 세대주 성명·주소의 교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후보자 ①

○○구·시·군의 장 귀하

주 : 명단의 종류에는 "일반명단"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을 기재합니다.

제 9 장 투 표

1. 선거방법(「법」 § 146)

-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함
-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함
 - 다만, 국회의원선거, 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의원선거마다 1인 1표로 함
-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

2. 투표소의 설치(「법」 § 147, § 148)

- O 투표소의 설치 및 공고
 -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 구역안의 투표구마다 투표소를 설치하고, 선거일 전 10일까지 그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
 -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 2018.6.3.(일)까지
 - ✓ 학교·관공서 및 공공기관·단체의 장은 투·개표 장소 협조요구에 우선적으로 응해야 함.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법」 §261④)
 - 병영 안과 종교시설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함, 다만 종교시설의 경우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허용
- O 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공고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때에는 선거일 전 9일까지 그 명칭·소재지 및 설치·운영기간을 공고
 -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 2018.6.4.(월)까지

3.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법」 § 146조의2, § 147⑨)

-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법」 § 146의2, 규칙 § 67)
 - 대 상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투표구마다 1인씩 위촉
 - 역 할 : 해당 투표구의 투표사무관리
 - 해촉 사유
 - 법규에 위반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구·시·군위원회 또는 읍·면·동위원회의 지시·명령에 불응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 건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투표사무원(「법」 § 147⑨)
 - 위촉/공고 : 읍·면·동위원회가 위촉하고 선거일 전 3일까지 성명을 공고
 - ✓ 투표사무원 공고 : 2018.6.10.(일)까지
 - 대 상
 -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
 - ✓ 다만, 일반직공무원 중 공안직군의 공무원과 교육공무원외의 특정직 및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함
 - 각급학교의 교직원
 - 「은행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의 직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직원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입원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이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직원
 -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공단의 직원
 -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 ✓ 투·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유기·해태한 경우 ⇒ 100만원 이하 과태료(법 §261®2호바목)

4. 투표안내문의 발송(「법」 § 153)

○ 주 체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O 대상(방법): 관할구역 안의 매세대(우편발송)

○ 기 재 내 용 : 세대별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투표할 수 있는 시간,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기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선거공보 동봉)

O 기 한 :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 2018.6.3.(일)까지

○ 우편요금 :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 제65조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세대(시각장애선거인)는 점자형 투표안내문 동봉

5. 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법」 § 154)

○ 주 체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O 발송대상: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선거인

○ 시 기 : 선거일 전 10일까지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 2018.6.3.(일)까지

O 발송·참관

-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발송하되, 정당추천위원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봄
-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절취한 후 거소투표용지를 바코드가 표시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함
- 책자형 선거공보를 동봉하여 발송
- 투표방법 기타 선거에 관한 안내문을 거소투표용지와 동봉하여 발송
- 발송·회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되.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담
- 우체국장은 다른 우편물보다 우선하여 취급하여야 함

6. 투표시간(「법」 § 155)

- 투표시간 : 선거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함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 2018.6.13.(수) 오전 6시 ~ 오후 6시

○ 거소투표자의 경우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용지가 도착되어야 함

7. 투표의 제한(「법」 § 156)

- 투표할 수 없는 자
 -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자. 다만, 「법」제41조(이의신청과 결정) 제2항·제42조(불복신청과 결정)제2항·제43조(명부누락자의 구제)제2항의 이유 있다는 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온 자는 투표할 수 있음
 -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음
- 거소투표자의 투표
 - 거소투표자는 거소투표를 하여야 함
 - 다만, 허위신고자 및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거소투표용지를 송부받지 못한 자와 거소투표용지가 반송되어 거소투표용지를 송부받지 못한 자, 거소투표용지를 송부받았으나 거소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한 사람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음
 - 이 경우 투표관리관은 선거인명부 또는 제154조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거소 투표자의 명단과 대조확인하고 선거인명부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함

8. 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절차(「법」 § 157, 규칙 § 82②)

○ 투표관리관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됨

✓ 신분증명서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국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 자격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이들 기관이 기록·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비례대 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함)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함
-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함
- 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초등학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 제외) 안에 출입 할 수 있으며.
 -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음
 - 같은 기표소 안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 갈 수 없음

9. 사전투표, 거소투표(「법」 § 158, § 158의2)

〈 사전투표 〉

O 대 상 : 선거일 전에 투표하려는 선거인 누구나(거소투표자 제외)

○ 투표기간 : 2018.6.8. ~ 6.9.(2일간)

○ 투표시간 : 오전 6시부터 오후 6까지

○ 제 시 물 : 신분증명서

- 시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시전투표소에서 신부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함
- 사전투표의 우편발송
 - 발송자 : 사전투표관리관 등
 - 시 기 : 사전투표 기간 중 매일의 시전투표마간 후 또는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 방 법 :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다음에 따라 처리
 - ①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교부하여 투표하게 한 경우에는 사전투표 함을 개함하고 사전투표자수를 계산한 후 관할 우체국장에 인계하여 등기 우편으로 발송
 - ②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않고 투표하게 한 경우에는 첫째날은 사전투표소에 보관하고 해당 사전투표함을 사전투표 종료 후 직접 관할 구·시·군선거 관리위원회에 인계

〈 거소투표 〉

○ 기관·시설의 장은 거소투표용지 도착 즉시 거소투표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 유의사항 +

- ✓ 해당 기관·시설에 안내
 - 기표소 설치대상 기관·시설 신고 및 기표소 운영 등에 치질이 없도록 해당 기관·시설에 관련내용 안내
- ✓ 공정성·중립성 견지
 - 거소투표 제도는 선거인의 거소·건강상태 등을 감안하여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 신고인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의식불능자 또는 의사표시 불능자를 대신하여 허위 신고 또는 대리투표하거나, 의식불능자 또는 의사표시 불능자의 가족의사를 물어 허위신고 또는 대리투표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 필요
- 투표장소 : 자택, 군부대,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 등 거소
 - ※ 거소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 후 투표 가능

○ 투표절차

- ① 관할 구·시·군선관위로부터 송부 받은 거소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 하여 투표용지의 해당카에 기표
- ②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등기우편(무료)으로 발송
 - ※ 회송용 봉투에는 도장날인. 거소·성명 등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도록 안내
 - ※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도착되도록 발송

10. 투표참관(「법」 § 161, § 213)

-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함
-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 신 고 자 :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
 - 신고인수 :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인
 - 신고시기·방법 : 선거일 전 2일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
- 투표참관인의 지정 : 투표소마다 8인
-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자
 - 후보자 및 후보자의 배우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 미성년자
 - 「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법 제18조 제1항 제2호 후단 위헌판결로 집행유예자는 가능
 - 「법」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투표참관

- 투표참관인은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투표관리관은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투표 참관인을 교대로 참관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당·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함

- 투표참관인은 투표참관 도중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투표관리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음

11. 사전투표참관(「법」 § 162, § 213)

-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사전투표 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함
- 사전투표참관인 선정·신고
 - 신 고 자 :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
 - 신고인수 :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인
 - 신고시기·방법 : 선거일 전 7일까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
- O 기타 투표참관에 관한 사항은 「법」 § 161 준용

12. 투표소 등의 출입제한(「법」 § 163)

- O 투표소에 출입할 수 있는 자(그 외에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음)
 - ✓ 투표하려는 선거인, 투표참관인, 투표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 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투표사무원
-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하며, 이 규정에 의한 표지외에는 선거와 관련한 어떠한 표시물도 달거나 붙일 수 없음※ 표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양여 불가
- 사전투표소의 출입제한에 대해서「법」 § 163 준용

13. 투표소 등의 질서유지(「법」 § 164~ § 166)

- O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 요구
 -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투표소 안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원조요구를 받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함
 - ※ 투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안에서 무기·흉기· 폭발물을 지닐 수 없음

14. 투표의 비밀보장(「법」 § 167, 규칙 § 92)

- 질문 및 진술요구 금지
 -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인이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질문하거나 진술을 요구할 수 없음
- O 텔레비전방송국 등의 예외적인 질문허용
 - 대상 : 텔레비전방송국·라디오방송국·「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사
 - 목적 : 선거의 결과 예상
 - 방법 :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 으로 질문할 수 있음(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음)
- 공개된 투표지의 처리
 -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함
 - 투표관리관은 선거인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투표소에서 공개한 투표지는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투표지를 회수하여 공개된 투표지라는 표시를 한 후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다음 투표함에 투입

15. 투표록의 작성 및 투표함의 봉쇄 · 봉인(「법」 § 168, § 169)

- 투표관리관은 투표소를 닫는 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투표소 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봉인하여야 함
 -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투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함
- 투표함의 열쇠와 잔여투표용지 및 번호지는 위의 규정과 같이 각각 봉인
- O 투표관리관은 투표록을 작성하여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함

16. 투표함 등의 송부 및 인계(「법」 § 170. § 171)

-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와 투표록 및 잔여 투표용지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
 - ※ 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1인과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2인에 한하여 동반 가능
-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선거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인계

제 10 장 개 표

- 1. 개표관리(「법」 § 172)
 - 주 체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2. 개표소(「법」 § 173. 규칙 § 95)
 - 공고기한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까지
 -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시 공고
 -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 2018.6.8.(금)까지
 - O 설치기한 : 선거일 전일까지
- 3. 개표사무원(「법」 § 174)
 - 위촉·공고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
 -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 2018.6.10.(일)까지
 - O 대 상
 -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제2조), 지방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 교직원, 「은행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의 직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직원, 농업·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직원, 지방공사·공단의 직원,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 ※ 다만, 일반직공무원의 행정직군 중 교정·보호·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공안 직렬의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외의 특정직공무원 및 정무직공무원은 제외

4. 투표함의 개함(「법」 § 177)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개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개함
-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

5. 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법」 § 183)

- 개표소에 출입할 수 있는 자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 개표사무원, 개표사무협조요원, 개표참관인
- 일반관람인석에 들어갈 수 있는 자
 - 관람증을 배부받은 자, 방송·신문·통신의 취재·보도요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공직선거 업무편람

선거업무 전산처리 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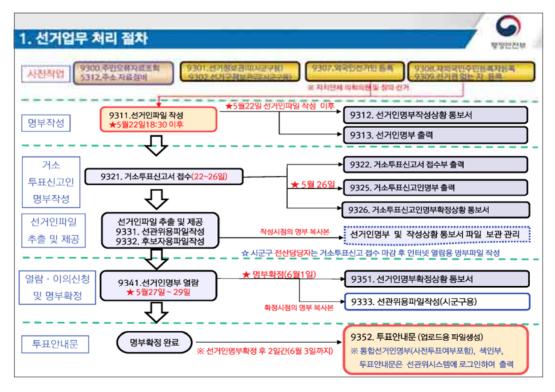






- 1. 선거업무 처리 절차
- 2. 선거 전산업무 처리일정
- 시·군·구 담당자
- 읍·면·동 담당자





사무	일정	시스템업	2421-GFF	워격기관
주민등록 자료성비	5/14	주민등록 시군구 정보시스템	9300. 주민등록오류자료조회 5312. 자료정비	용면됨 # 5.15. 메비명부작성
선거정보확인	5/15 오전	주민등록 시군구 정보시스템	9301. 선거정보관리(시군구용) 9302. 선거구정보관리(시군구용)	시군구(선거담당)
작성당일(5/22) 09:00~18:00 작성 준비 -예비명부(5/15) -본 명부(5/22) 5/22 18:30 이후 ~ 중료시 까지		결격사유 조회시스템	선거권 없는자 일괄추출	시구/옵면 (결격사유시스템담당) ↓ 옵면동(주민등록)
	09:00-18:00	외국인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외국인 선거권자 자료 추출 및 옵면동별 송부	시군구(선거담당) 나 읍면동(주민등록)
		주민등록 시군구 정보시스템	9300.주민오류자료조회 및 5312.주소자료정비	옵면동(주민등록) 선거인명부작성 담당자
			9307. 외국인선거인등록	
			9308. 재외국민주민등록자등록	
			9309.선거권 없는 자 등록	
			9311.선거인파일작성	
		9312. 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 9313. 선 거 인 명 부 출 력		
	종료시 까지	RIUS	340. 선거인명부 작성상황통보서(외국인포함) 370. 선거인명부 기타통보서(외국인포함)	시군구(선거담당)
거소투표신고서 접수	5/22 ~ 5/26 선거인파일작성 완료 이후	주민등록 시군구 정보시스템	9321. 거소투표신고서접수	읍면동(주민등록)

The state of	검무 처리일정	(州舎)		W 정면관	
AIR.	WE:	MANS	মার প্রকৃ	XIIIZI	
거소 선상투표	5/26	추민정복 사군구 정보시스템	9322, 거소두표신고서집수부들력 9325, 거소 - 선상투표신고인정부슬러 9326, 거소 - 선상투표신고인정부 확정상활동보시	828	
신고인명투직성			9313. 선 거 인 명 부 출 력		
		RIUS	360.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상황동보서	시군구(선거담당	
		서비작업	지자체 홈페이지 인터넷 열람용 선거인명부 파일작성	시군구(전산담당	
및 선관위파일제 거소투표	5/26 ~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 이후	주민등록 시군구 정보시스템	9331.선관위용파일작성 9332.후보자용파일작성	읍면동 시군구(선거담당 구시군(선관위)	
열람 및 이의신청	5/27 ~ 5/29	주민등록 시군구 정보시스템	9341.선거인명부열람	읍면동	
선거인명부 확정	6/1	주민등록 시군구 정보시스템	9351.선거인명부확정상황통보서	읍면동	
		주민등록 시군구 정보시스템	9333.선관위용파일작성(시군구용) 파선거인(확정)명부 선관위 송부	시군구(선거담당) ↓ 구시군(선관위)	
		RIUS	350. 선거인명부확정상황통보서_외국인포함 370. 선거인명부기타통보서_외국인포함	시군구(선거담당)	
		서버작업	지자체 홈페이지 인터넷 열람용 선거인명부 파일작성	시군구(전산담당	
투표안내문 송부	6/1~6/3	주민등록 시군구 정보시스템	9352.투표안내문 파일추출(선관위시스템 등록용)	읍면동	
		선관위시스템	투표인내문 출력	읍면동	
투표일 전 준비	6/9~6/12	선관위시스템	사전투표가 반영된 통합선거인명부 및 색인부 출력	읍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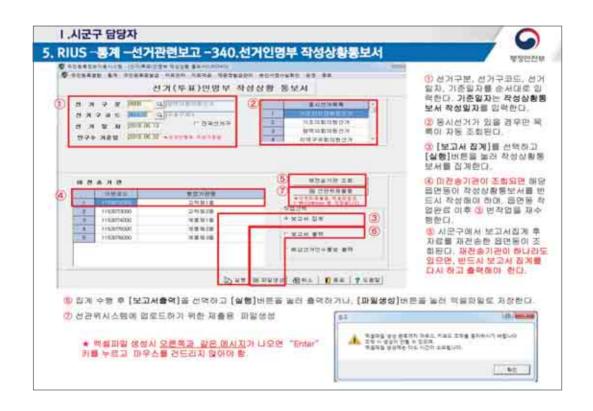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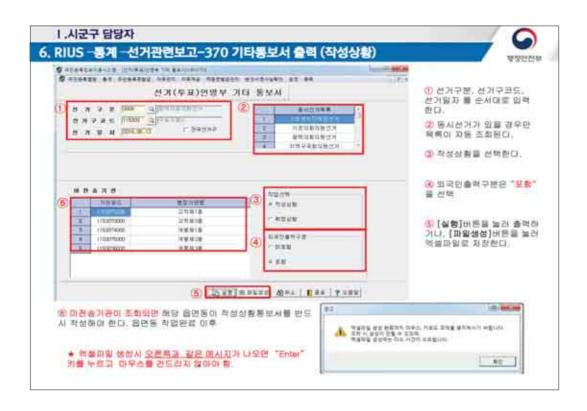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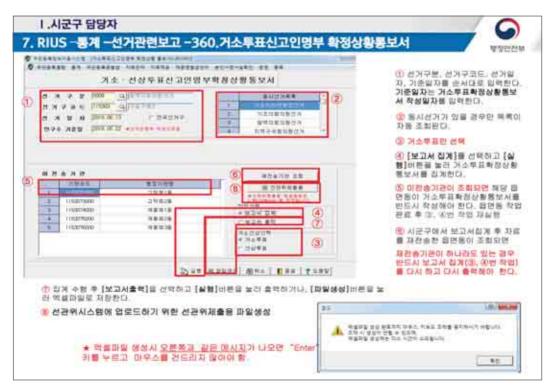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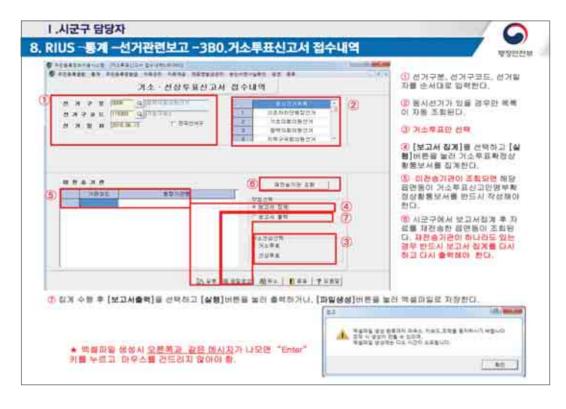


1.시군구 담당자 5. RIUS - 통계 -선거관련보고 -340. 선거인명부 작성상황통보서 발장만전체 -# TERRESONAL CONTRACTOR STATE AND CONTRACTORS A curata 선거교트찾기 e 34 9 25 26 SHAMME! -0.0 M | 哲学や 선거구분교도 선거구교도 20円数 観明おれで展覧され 対象収集対象され 世界。四月子在 计算量指令 10 29 6 対象が対対を設定される 対象が対対を設定され 対象を手を対しません 111100 息をつ 0010 110001 81/2 000 24 (8 22 17 2 11530 BI # 10 99 25 24 DOGS 0000 WHEN REPRESENTATION MERCHANIST \$5.80 | Th.He. ○ RIUS->통계->800 선거관련보고-> * 340 선거민영부작성상황종보서* 에서 선거구분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회면 ○ 선거구분코드는 실시하는 선거명을* 선택해야 한다. *시·도 의 장 선거인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선거' , 시·도 의회의원선거의 경우 '광역의회의원선거' ,구·시·군의 장 선거인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선거', 구·시·군 의회의원선거의 경우 '기초의회의원선거'등 9종 ○ 선거구코드는 해당 시군구에 해당되는 선거구를 선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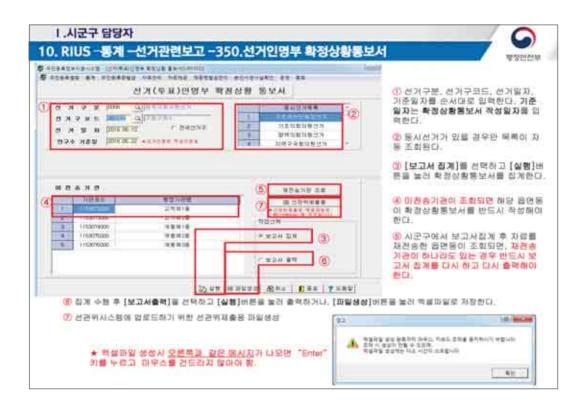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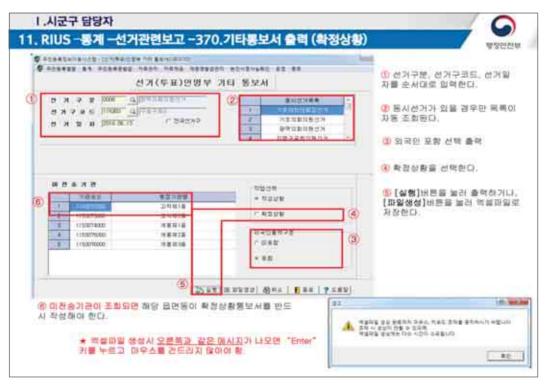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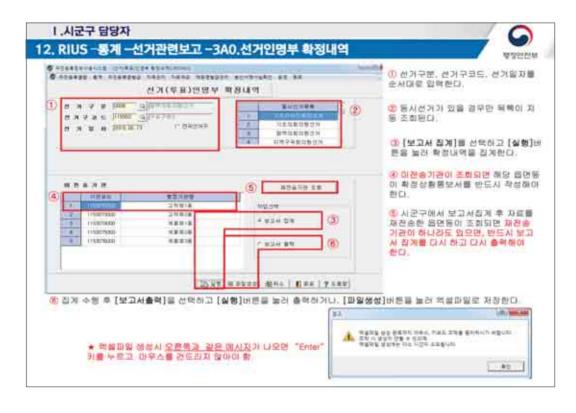




















1.시군구 담당자 13.선관위용파일작성(시군구용) - 파일 저장위치 선택 발장만전체 -THE RESERVE AND PARTY OF THE PROPERTY OF THE P 11. WEST TOOK MARK MACCHANISM STREET, SQUARE, SQUARE ----www.hillians.com HARBONES (10) (S. HILLS OF DE DAUE BY 2.9000000 NO KRID A CONTRACT + 00 00 00 Alde elte wn 42 Stine Ball Balls STATE SALES n/195m **医科型对格型内(利用自用**) BRO 파일명은 건드리지 114131 OHAIR 35 MUNICIPAL PRINT DE WALL ○ 차용하고차 하는 폴더 위치를 자동하고 파일이름을 확인한 후 처장한다. ○ 파일전송 진행률의 정선이 증가되면서 진행과정이 조회되고, 서버에 생성된 선거인명부 파일을 가져온다. ★ 위의 파일 가져 오기가 안 될 경우(FTP가 막힘) 구.시.군 전산담당자가 서버의 작업디렉토리(/irais/a_rsr/log)에서 파일(VOTEMANCOPY_20180613_작업일자_행정기관코드 .dat)을 ftp로 전송 받는다. ☀ 파일형식을 VOTEMANCOPY_20180613_작업일자_행정기관코드.txt 파일로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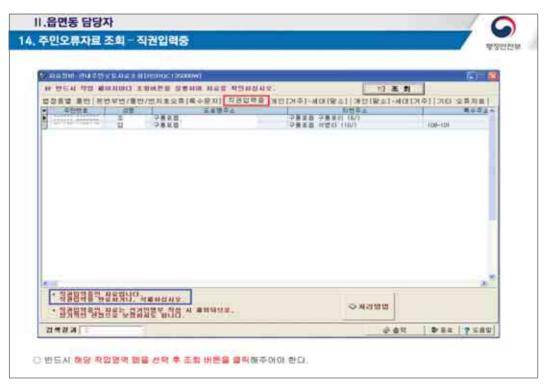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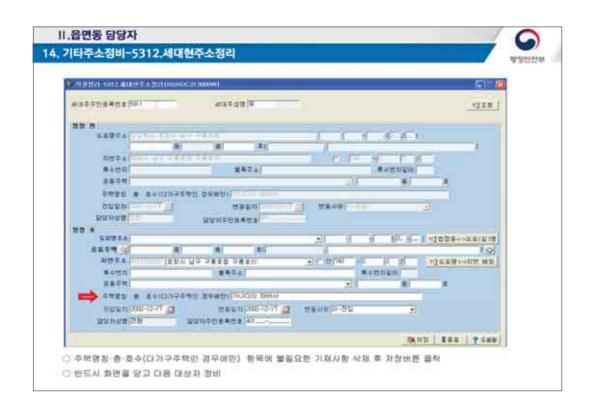






11.읍면동 담당자 14. 주민오류자료 조회 - 기타오류자료 무장안건보 PARTIE HIS CHOCKER BRIDGE HIS HOW 种 银宝板 祝雪 使用其印刷 医动脉管管 经集制制 和混合 有效可提品学 10 6 2 파크트를 통한 [용면부발/통일/방지로오른[목수문자]] 작권실목을 [RD[가주]·AD(W±) [RD[당소]·데(D)자리 기타 오류기표 0200 E #12000 25 #12000 25 #12000 25 通知 解於 年 等性學問題으로 FAX 交通等利用 明智以助。 21 44 27 28 1 DES TENT **产金**市 O DESM - 세대없는 개인: 세대자였기 없는 개인자료로서 열람 등 모든 주민등록업무에서 조회가 불가는 트록구분 누박: 거주자, 앞소지 등의 같은 등록구분이 누락된 자료 - 세대주관계 오류: 개인의 세대주요의 관계 오류 자료 ○ 직접 수정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출력하여 수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FAX송산









11.읍면동 담당자 15. 외국인선거인등록 - 외국인추기 **발장만전체** mbe! ◆ → 新華田 田澤竹田 学年 世別日本田田田田 本書報LICI ell mitt - North Catherine | Ch 호텔의 설구 구름보를 이번의 SHUTE 0.75 **科研究基本的主** Ma Discha 30,000 Party a (010-222-2001 BRUD DOS-CO. II SHRUM DI NO-CO. 1 fig the thright deservations 보통병하스 [강성부모 보장시 성구 구름보다 전복조 . . (0) 2 BEST EST AND SEED SERVI -11 at 報刊学生 mode) · NACISATE DE TEL TOTA TRACE LIGIT DES CRUSINE ENC IT NEEDS NOW ② 数用型 動部は 상 문화사 성구 구름보다 구. 면 보험사 성구 구름보다 함! 프랑시 남구 구름로를 받았다 요합시 남구 구름로를 받았다 ODDOODS. ○ 외국인선거인등록은 "추가" 버튼을 클릭한 후 외국인등록번호, 이용, 주소 등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뭐 메뉴에서 등록한 외국인은 모두 선거인명부에 들재되므로 산중하게 입력한다.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만 등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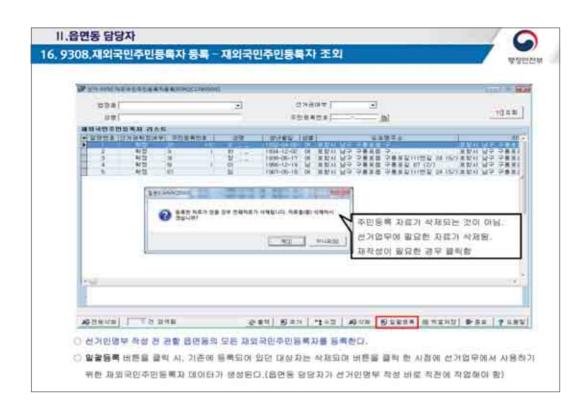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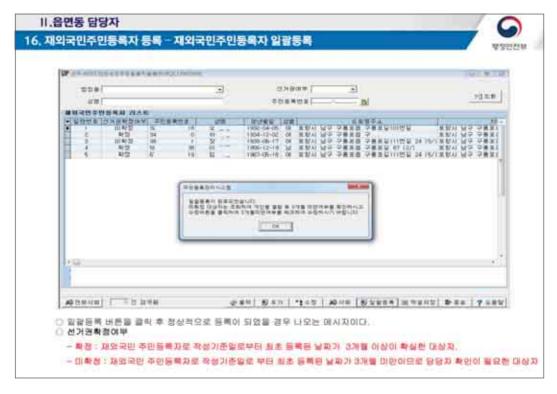




11.읍면동 담당자 15. 외국인선거인등록 - 외국인일광등록2 **발장만전체** 知识的表明。如果的理解是图 HISBCC120000WI 목독발자 単発料 단환병원 世代専出 만료일자 TON IN CASE OF SERVICE F+3 1005.08.30 경상적도 포함시 英マ 합성처리 高維色 お無はもの 2006.08.04 2005.06.16 건상북도 포함시 북구 통해된 성원221 2007.06 14 20 47 1 20 2005 10.14 검상적도 포함시 복구 플래핑 박찬리 _-- ---F-3 2006.07.V2 THE F-3 2006.02.20 18 6/ 11/2 2 國事일병기 원 및 환자장 X 학업하소 등 등로 핵심파일의 내용과 그라드의 내용이 값은지 확인한다. 그 "임광자장" 비용을 클릭하다. ○ 처리결과가 '정상처리'가 아닌 외국인에 대해서는 자료를 확인하고, '추가' 버튼을 이용하여 건별로 입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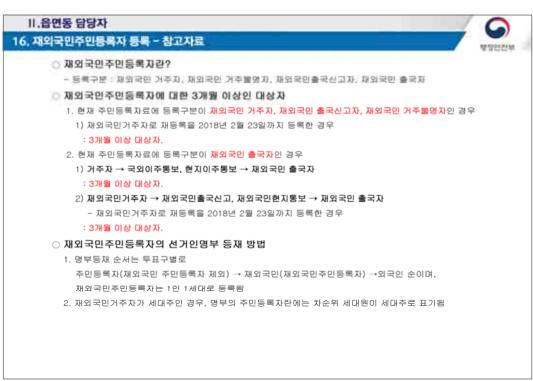




11.읍면동 담당자 16. 재외국민주민등록자 등록 - 재외국민주민등록자 추가 무장안건보 OF STREET, WHICH PERSONS AND ADDRESS OF THREE PARTIES AND COMMENTAL PROPERTY. 4.7 **化等效性模型的基础的** CHERRY House H - 100年四年 - 株式 江川市市市 C OWNERS. TR 8(0.0) 014 DROK BEHFRIGHRUSDEN) 42 ENSPA 167 O B - I several plans as as - se us owned by an action by a second by a se m 41 -0 BINE D.A. Mitchia MADA DIES D. ... IT NOTE WAY BAND | BOOK **神**世紀28 三世 21 28 18 18 ## # # 100 | ### | Bunes | mennu | # ## | 7 mmu | ○ 선거인영부작성 전 누막된 재외국민주민등록자를 개인별로 등록한다.(에비엄부 작성이후 전입자 등 누락자 발견 시) 건 별 입력은 "추가"버튼을 클릭하고 주민용복변호 입력 후 "조화" 버튼을 클릭하여 주민들복자료를 조회한다. ○ 필하!! 주민등록 3개들미만 여부(선거원 부여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체크형)와 최초 재외국민주민등록자로 원목한 날짜를 입력 후 저장 버튼을 끌려한다.









11.읍면동 담당자 17. 9311.선거인파일 작성 - 기초사항조회 **및장만전체** LEASE WE SEE THE SEE T ON ENGREEN S 13.00 special series SH WA MERREN 28 AME CR.E WEDL | Farmur | *** 전기가 없습니다. 목표를 전기기조사항환(함) 등록하시겠습니 DESIGNATION OF witten : MI MOS RIVERS 16 == 30 111 THE PERSON NAMED IN COLUMN TO PERSON AND PERSON OF PERSON ASSESSMENT OF THE PERSON OF ○ 선거구분은 '0009-전국동시지방선거'를 선택한다. ○ 선거입자 "2018-06-13" 로 자동 출력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 등록된 선거가 없다는 메시지가 출력되고 "예"를 선택한다.(기초사랑 등록 후에는 메시지가 출력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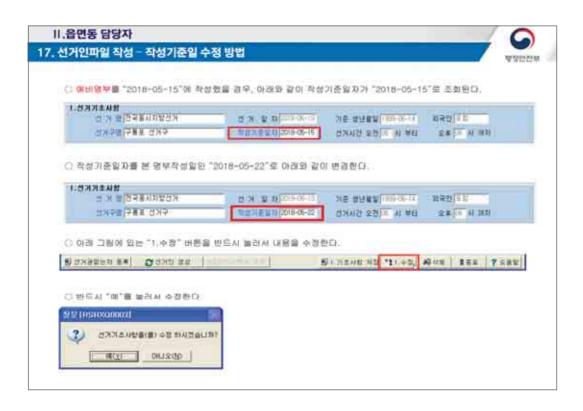






11.읍면동 담당자 17. 선거인파일 작성 - 투표구간 입력2 **및장만전체** ロスマ E MRE 5484内型サス CAR DESIGNATION 13 2 5 HENDERHE BERTHER 4.8. VACUUM NE SURVENIE SERVICE SHIPPHRIEN 日本中国 マ東京 田田中 HANT AND - HOME BEIN HIME F SHEET #### ##### ##### VAUL VALUE SANNED TREETS [HARMMA] 报准测 *1+2 路川県 1,9 x 220 **股本3**8 *1+0 AD HOSE NAME OF STREET SCHOOL SE CONDICT CONTROL SECTION SECT 하 해당 투표구를 선택하면 선택한 무료구의 투표구간을 볼 수 있다. 투표구간 검복 시 다음의 사항을 주의한다. 1. 반이 지점되지 않은 세대가 있는 경우는 시작 범위의 반(부터) 함복은 압력하지 않고 비위불는다. 2. 용이 없는 세대가 있는 경우는 시작 용 범위에 0을 입력하면 등이 없는 세대가 모두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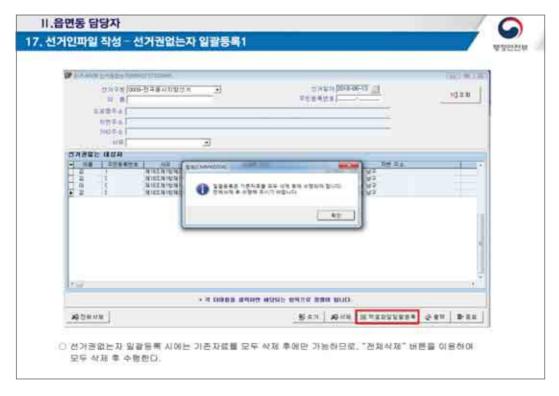




11.읍면동 담당자 17. 선거인파일 작성 - 주민등록자 선거권없는자 등록 **및장만전체** CHENKER FERRNITHER PROPERTY. TOSMOST. 111 10 12 1028 KARRA BUNK SUN UP PRES PRESIDES (\$110) HERE BUNG BUNG OFFE SEEK (V) 4465 DASE GEN THE SER - IT DODG BEING MUNCH SPECK BRID BLICK 45-7110-4130 野の川 森田県 全事性 歌曲点 ○ 대상자를 조회하여 사유를 선택하고 화면 하단의 "추가" 버튼을 눌러 선거권 없는 대상자에 추가한다. ○ 삭제해야 할 경우, 대상자 리스트에서 대상자를 선택한 후 화면 하단의 "삭제" 버튼을 누른다. □ 선거균 없는 대상자의 출력을 판함 경우, "출력"버환을 눌러서 선거권없는자 명투를 출력한다.









11.읍면동 담당자 17. 선거인파일 작성 - 선거권없는자 일괄등록2 **발장만전체** (場合に)は大き間とい 中を出る Paneautanes (Szece)weit Jeanthuga -(I) IN EN is times H MERTS BY White Park DASCENSW.HE-STREET, TORSEN BUTTO CLIMB CAMER SEEDS WITH A VASSE . ○ "파일열기" 버튼을 클릭하여 제공된 선거권없는자 대상 엑셀파일을 읽는다. ○ 입력하고자 하는 엑셀파일은 변경사유란이 "삭제"인 대상자를 제외(대상자 줄 삭제)하여야 하며, 엑셀 칼럼을 아래 나열된 칼럼순서대로 조정한 파일이어야 한다. ○ 결격사유조회시스템 담당자로부터 제공된 엑셀파일을 선택한다 (읍면동에서 결격사유조회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읍면동 담당자가 엑셀파일을 내려받음) ○ 엑셀 칼럼순서 : 연번, 성명, 주민번호, 거주지, 거주지행정동코드, 거주지행정관서, 선거권없는기간, 공직선거법제18조 위반 조항, 변경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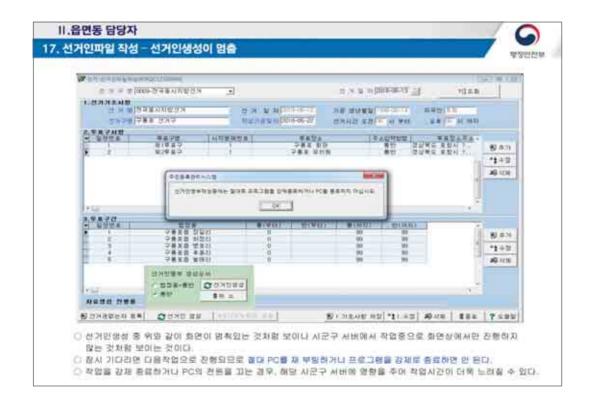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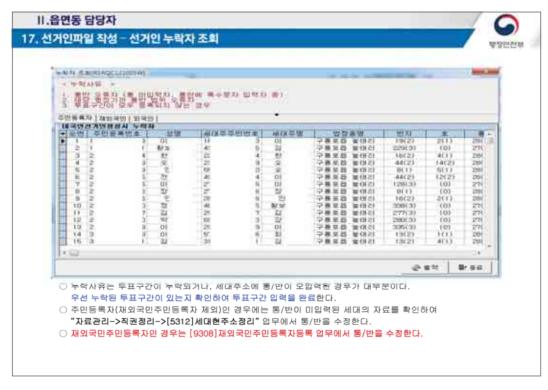




11.읍면동 담당자 17. 선거인파일 작성 - 선거인생성2 무장안건보 State of the least the latest occurrences. -1010 SOLF E 10000-전국통시지방당동 27 N S 70 000 H (8-15) HER I MANAME O M DEPRESA C 2 × 2 h Denney NA W WAR THE RINKS IN WAR WARE BOOKS Water B (2018-06-22) BARRIPRE BAR ATTOWN. NO STACKEL NO. 8878 81987 从处理特性生活 PRUA. 数本計 可用用 混乱的 *1+2 O A SEE SAS ASA NASTE 30 Actio THE PARTE OF SERVICE 会社をはなる。本本の人の会に対する。 行 實際的 暴水利 网络地名美国格里地名 O 📖 7815 UUU 7815 UUU 7815 UUU 7816 UUU 7816 480 粉里沙 1142 マ書京日 年長日 マ書京日 日日日 AG HE 过足设施本 存货币件 CERTIFIED COSTON A 380.00 200 4 Aund bus ○ "선거인생성" 버튼을 누렸던 다음과 같이 기 생성된 선거인 파일을 삭제한다는 메시지가 흘러된다. ○ "선거인 생성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에서 "예"를 선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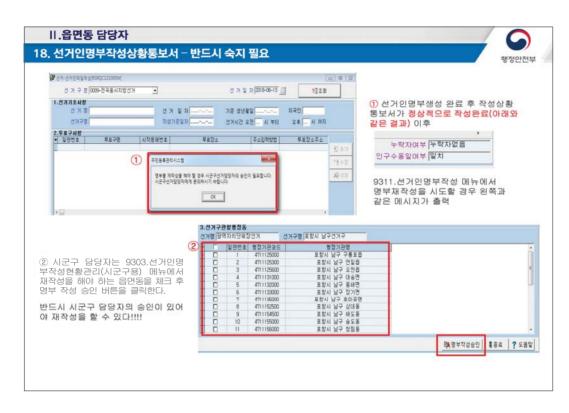


11.읍면동 담당자 17. 선거인파일 작성 - 선거인생성의 완료1 **및장만전체** ENPERMENTAL PROPERTY OF A PARTY O STATE OF THE PARTY OF rdam! 1. 日本本本本語 日 年 第1日本本本科目日日本 II N. W. II COMPANY NAME OF TAXABLE PARTY OF TAXABLE PARTY. THE 20TH WINDSHIPS CHANGE SO - N WE SE - N MED 世界中國 学事业 经济学 FARRING FREE REALT BY BURS REALT BY BURS BEALT 報号報等 で具等(株 で具等(株 무료보소 구료보 회원 구료보 회의원 TARROTTE 80.424 *1+2 30 tris W ACCOMPANDODO D DANGER OF TRANSPORTER OF THE PARTY OF THE PA 200 E 2(80) 89 BC dox *192 **5G** 1216 BUNEAU NO TIME BAR TERE 다용의 조건을 만족해야만 선거인명부 생성이 완료된 것이다. 1. 누탁자가 없음 것 ("선거누탁자조의" 버튼 비활성화) 2. 자료생성 진행를 표시가 모두 끝까지 갈 것 3. 생성 중에 어떤 오쀼에서지도 표시되지 않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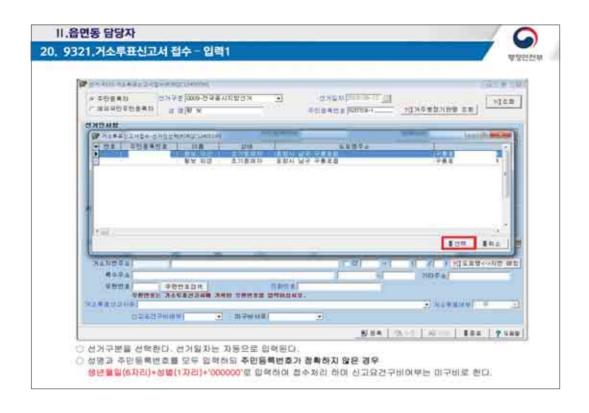
11.읍면동 담당자 18. 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 - 출력 행정안전부 선거인명부 작성상황통보서 선 거 명 : 광역자치단체장선거 포팅지 불구선 남구 구룡포읍 전기구멍 : 행정기관 : 페이지: 1 인구수 인구수에대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 (2018년 03월 09일 현재) 투표구명 선거인수비율 세대수 HI 7 u H 04 (%) 6.594 6, 157 3,141 3,016 93.37 3,703 제 1 투표구 (736) (365/ (83.16/ (738/ 3.512 3,399 1,629 96.78 (96.34/ 1,962 제 2 투표구 10,106 5,665 9,558 4,911 4.645 94.56 #1 계 (488) (88.09/ ○ 출력버튼을 클릭하여 선거인명부 작성상황통보서를 출력한다. ○ 출력물 왼쪽 상단에 선거명이 표기된다. ○ 윗 줄의 선거인수는 전체 선거인수이고 ()안의 숫자는 다음과 같이 표기된다. - 전국동시지방선거인 경우: (재외국민주민등록자수 / 외국인수)





11.읍면동 담당자 19. 선거인명부 출력 - 페이지지정 출력 **발장만전체**O₅₀, 0 早早被私企物料 4 NN 4088 5 AV. 28 (30) (44) A410 14 N SERVICE THE RIS 17 SEC 15 LIA 203 報道 200 × 日本日本 34 日本日本 34 42.2 (d) (d) (d) RENGE OF City of Um ti ○ 상단의 "프린터" 아이콘 옆에 ① <mark>"프린터설정" 아이콘</mark>을 누른다. ○ 인쇄범위의 페이지 지정에 ② 페이지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눌러 원하는 페이지를 설정한다. ○ 인쇄매수 또한 1매에서 지정매수까지 지정 할 수 있다. ○ 상단의 ③ **"프린터"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 프린터설정에서 **지정한 페이지를 출력**한다.







11.읍면동 담당자 20. 거소투표신고서 접수 - 인력2(도로명주소) 부장만전부 WATER STRANGE BOOK CO. m (* 1.0) expension at HARP GOOD BUILDING 10 李砂田東対 +0.00m (1995年日 1997年日 Seminar P. T MARKENNE AN 70.00 ERREAL ERRE マ 本 | 祖知書文正 三京 三 | [中華報告には対す 10.08 DEPATE **M**+44 西班牙里门 MARRAM Degnipo DOME BUTTON 世世界---年月日日 G) **美事里** Rolls (9E) FED V NE ENGL V Style B ERROAI NAME OF A PERSON. ✓ NOT X NAMED B = 4 | 10 + 0 | 10 188 7 SHE ○ 거소투표신고자의 도로명주소를 입력 시 행정기관명을 입력 후 엔터키 입력을 하면 도로명주소를 조회하는 화면이 나온다. ○ 현정기관명을 일찍 후 엔터키 일찍을 하면 현정동주소 검색 화면칭이 나오고 해당 변청기관을 선택한다.







11.읍면동 담당자

20. 거소투표신고서 접수 - 주의사항1



■ 거소투표신고서 접수 시 "비거주등재자" 메시지 발생 시 조치방법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5월 22일) 명부생성 시 명부에서 등재되지 않은 경우이며. 아래 3가지 사항 중 하나이므로 다음을 참조한다.

- 1) 만19세 미만인 자
- 2) 선거권없는자
- 3) 본 명부 작성일 (5월 22일) 이후 전입자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자라도 거소투표접수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우편물을 반송한 경우 제외). [9321.거소투표신고서접수]에서 신고서 내용 그대로 등록해야 한다. (유효한 거소투표신고서로 처리되지 않으며,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도 등재되지 않음)

11.읍면동 담당자

20. 거소투표신고서 접수 - 주의사항2



거소투표신고서 접수 시 선거인명부에 미 등재된 자 입력하는 방법

선거인파일 작성기준일 이전에 발소된 대상자가 선거인명부에 등재가 안된 상태에서 거소투표 신고접수 를 하였을 경우 (단,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말소자인 경우로 가정하여)

- 1) 작성기준일자의 주소지에 재등록한다.
- 2) [9341.선거인명부 열람] 업무에서 "직권정정" 작업을 선택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 시킨다. 이때, 거소투표신고서를 이미 접수했으면 선거인명부 등재 전 입력한 거소투표신고서 내역을 먼저 삭제한다.
- 3) 본 명부 작성시 출력한 선거인 명부에 수기로 등재 시킨다.
- 4) [9321.거소투표 신고서 접수] 업무에서 거소투표 신고내역을 입력한다.
- 5) 거소투표신고서 입력 마감 후 [9312.선거인명부작성통보서] 업무에서 "작성" 버튼을 이용하여 통보서를 재 작성한다. 이때, 선거인명부작성기간('18.5.22.~5.26.)에만 작성한다. 재 작성하지 않으면 각종 통보서(거소투표신고인명부확정상황통보서, 선거인명부확정상황통보서)에 선거인 수가 증가하지 않는다.







11.읍면동 담당자

21. 거소투표신고서접수부 - 참고사항



■ 부등재 거소투표 특정대상자 접수내역 확인방법

부등재거소투표자란?

우리 읍면동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거소투표신고서가 접수되어 단순 접수 입력만 한 대상자

거소투표신고서 접수 입력 후, 위의 대상자를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성명만 알고 입력한 주민등록번호(주로 생년월일+성별+000000)를 모르는 경우

- 1) [9322.거소투표신고서접수부] 업무에서 조회 후 조회결과 표의 "투표구" 타이틀을 클릭 하여 투표구별로 정렬한다.
- 2) 상단에 조회되는 대상자들로 투표구와 등재번호가 공란으로 조회되는 대상자들이 "부등재 거소투표자"이므로, 특정대상자 성명이 해당자들 중에 존재하는지 확인하여 성명 옆 주민 등록번호를 확인해둔다.
- 3) [9321.거소투표신고서접수] 업무에서 2번에서 확인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조회조건에 입력 후 조회한다.

11.읍면동 담당자 22. 9325.거소 · 선상투표신고인명부 - 조회 Walkers he was all and a processing 世 河 田 1000年五世年以前都召出 THE CHEMISTREES PERSONS AND *** 482 70.00 At describing the property by the property of 28-24 · NATARESEE EGGEN AND BURN LES ARE BEINGIN 正数四45 HIRDRES ORSPICE | HE NEVERSTRATED | HE PROCES gen bis 7 sav ○ 선거명을 선택하면 선거일자는 자동으로 일렉되며, 구분을 선택한 후 조회형 투표구간을 입력하여 조회한다. ○ 거소투표 산고서 검수 시 미구비사유가 의학된 대상자는 감수부에는 출력되나 거소 선상투표산고민영부에는 출력 되지 않는다. 또한 선거인명부 미 등짜 거소투표자도 접수보여는 출력이 되나 거소·선성투표신고인명부에는 출력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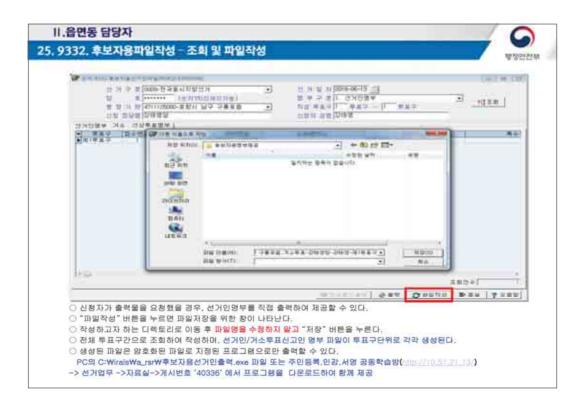
11.읍면동 담당자 22. 거소투표신고인명부 - 접수내역조회2 거소투표신고서 접수내역 間이지: 1 일레변호 거소투표신고**사유** 건수 01~사전후표소 및 후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령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문었더나 결합권구원 1 함기 2 ○ 출력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이 미리보기 화면이 출력이 된다.







11.읍면동 담당자 24, 9331,선관위용파일작성 - 조회 및 파일작성 투장만전부 SHANDRESCH. 東京世界 | 東京ラード rd su 東京大学 | 新田田 | 100000-東京日本学 7番車番 2220 00H-03-09 O MAN Une 495 495 の有名文字 PRESENTE TO 34904 · + 82 # 25-AD MADE: THE Fruppe Sample Kingles 0-825 M⁽⁶⁾ 2017-02-07 M5 18. 2017-02-01 R.B 4 2017-03-08 M.B 6 200 HERE SHIP pulition of 184 . DECIDENCE. • DW WHITE DEE 7 CAU の名言は白 ○ 저장면치와 파일이를 확인 후 짜장한다. 이때, 선거인영부 파일명은 명부작성 구분들 위해 "(작성)"으로 표기된다. 열망기간 이후에는 작성할 수 없다. ○ 명부구분은 "선거인명부"와 "거소-선상투표명부"총 선택한다. 시.군.구 당당자도 작성이 가능하며, 형경기관별로 조회하여 파일을 작성한다.



11.읍면동 담당자 참고, 선거인 명부의 수정 **박장만전부**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선거인명부 확정 이전 선거인명부 확정 이후 (5/22 - 5/26)(5/27 - 6/1)(6/2-) 이의신청, 물복신청에 의한 수정 ◆ 중양선거관리위원회에서 甚합 ◆ 명부 수정 불가 신거인명부를 작성하므로 친산처 (「공직선거관리규칙」제14조의 규정 [9341.선거인명부열람] 업무에서 에 의거) '이의신청' 혹은 '불복신청'으로 리는 하지 않음 수정 ◆ 사망자, 선거권없는자, 오기된 자 등은 제7호 서식 (나)에 의하여 ◆ 명부누락자의 구제에 의한 수정 ◆ 단, 행정기관의 착오에 의하여 누 통보 락된 자가 거소투표신고를 하였을 경 [9341.선거인명부열람] 업무에서 '직권정정'으로 결정사항을 등재로 우 등재 위해 명부 수정 가능 하여 수정 ◆ 사전투표소 투표 종료 후 선관 ☞ [9341.선거인명부열람] 업무에서 위시스템에서 사전투표정보를 반 '직권정정'으로 추가 등재 영한 선거인명부 출력 후의 수정 ◆ 오기, 선거권없는자, 사망자가 있는 사항은 명부 비고란에 기재 경우 수정 ▶ 명부 등재 즉시 혹은 5/26일 까지 ☞ [9341.선거인명부열람] 업무에서 ☞ [9312. 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세] '직권정정'으로 결정사항을 삭제로 재작성 하여 수정 ▶ 명부 확정(6/1) 후 ☞ [9351, 선거인명부확정상황통보서] 작성 「선거인명부수정상황통보서」수기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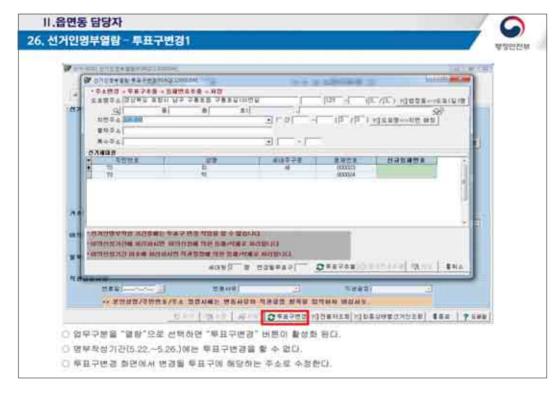




11.읍면동 담당자 26. 선거인명부열람 - 추가1 **및장만전체** White said the standard services SECTION TO SE 전 의 현 0009-전국용시지합인가 DO WILLIAMS 京中世界東京 广新年世 1948 一、神社会性単位性素な 田田丁 -nesent W ARREST. SHERWA DESCRIPTION WHEN WHITE 三世紀神代末 MIND COLM EARS A 50 21 mera! BERRY O CARM SHAN DE NAMEDADEAN DADOUR ANNS 4400 a 8400 mon Provide HAPBURNE Dev MINISTRA 田田村田丁 10 Hall BURE MINIOMATE SINAME - Built -- MUNICOPPE AND SEASO SEASO SEASO SEE SEE SEED SEED. E DE | N. D. | N. D. | D. D. D. D. | PRENCH | TRANSMINISTRATION | THE | 7 SAW | ○ 거주자, 거주불었자인 경우는 "주민등록자" 선택, 재료모인 주민등록자인 경우 "제외국민주민등록자" 선택한다. 업무구분을 선택한 후 자료를 입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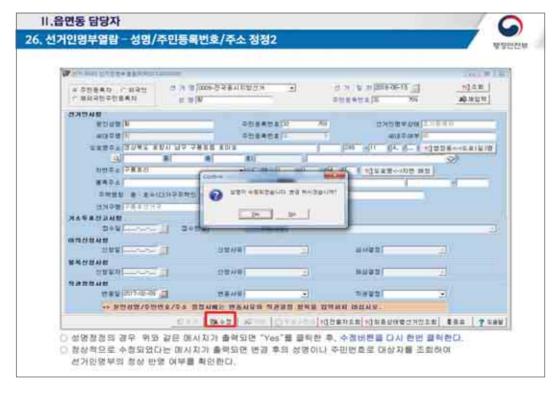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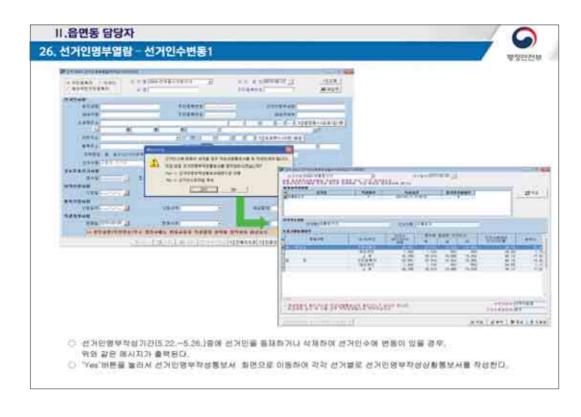


11.읍면동 담당자 26. 선거인명부열람 - 투표구변경2 ON STATE STATE AND P dhiles ** ** districtions 2年 - 東京東京部総長 - 東京東京中 日間上京。 医胃腺炎学 医肉皮皮 医肉叶 四点 古書者母 古書書戶 ()10日月 GL/JL) 7日常禁禁・・年末1号7世 8 . 1 対理学会 事業器 - rai (日 (日) (日本日本(cotte 田田) 単句を立「 Augal TIP 130 クス4000 平位のま HO. HI35.78 200 OLT: · 经对价值保存款 对方法确定 苹果花 新姓 有效的 新 中 自由以及 COURSE SERVER OF REELS TRANSPORTED 2 0 CHARLES WHEN SHARE ASSESSED THE ENGINE WASHING 司令其事操权的 (数) [[[[[[]]]]]] OPERAS ORNUSAS BANK | SHA *11 WENG nage >> 新型性性/交型性多/交生 性性从稀色 性多种化物 有多效性 机构排 似有种名 研结科及 C - A - C - D = R 7 EB | 7 EBW | 7 EBW | 7 EBW | 7 EBW | "투표구추출" 버튼을 클릭하면 변경된 주소에 해당하는 변경될 투표구가 추출된다. ○ '등재번호주춤' 버튼을 클릭하면 변경될 무표구의 새로운 등재번호가 부여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변경된다. 이의신청기간에 투표구변경 시 [이의산청에 의한 증/강]으로 반영된다. ○ 이의신청기간 이후부터 열부확령 전까지 투표구 변경 시 [이의신청에 의한 중/직원수정에 의한 감]으로 변영된다.















11.읍면동 담당자 28. 우편발송瀑주소조회 - 세대주구분정합성체크 투장만전부 (学型ACON + 1944年中日第2000ADCIABOOH) | マロ製品分々を支援-行対でする人称] マ神経製品質である句-問題品製成体や利取| 三米米州西班牙斯二丁 거주불병하 제외 #70000 | #1000 | #100000 | #1000 | #1000 | #1000 | #1000 利田多田 存包备基款的利益額 자료가 항상입니다. 우편방송물주소물 조회 후 출학하십시오 CK B.8159-LHUS-3[DALOTTE DE LA SEALURE DE LA was lysav ○ 세대추구분 정확성 체크가 정상일 경우 위와 같은 메시지가 출력된다. 출력하고자 하는 투표구, 동재번호 범위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세대주가 거소부표자이거나 영부에서 덕권삭제 될 경우 부표권이 있는 세대원 중 등재변호가 빠른 자를 자동으로 세대주로 지청 한다. 세대별 뿌프만내문을 정확히 출력할 수 있도록 "세대주구본점립성채크"를 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투표권이 있는 세대의 세대수가 조회된다.







11.읍면동 담당자

30. 주의사항



- 이비선거인역부 작성일에는 반드시 모든 읍.면.동에서 선거인역부를 완벽하게 작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선거인 본 명부 작성 시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 예비명부 작성 전 [9300,주민오류자료조회] 업무에서 조회된 오류자료를 모두 보정해야 한다.
- 주택명칭,층,호수(기타주소)가 투표안내문 주소에 포함되어 출력되므로 선거인명부작성(5/22)전까지 기타주소 내에 오류자료(주소정보가 아닌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는 미리 정비해야 한다 (교재내 기타주소정비 참고)
- 예비선거인명부 작성일과 선거인본명부 작성일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작업을 한다.
- 1. [9300.주민오류자조회] 업무에서 오류 자료 조회 및 자료 보정
- 2. [5410.관내현황작성] 업무에서 작업일자의 관내현황을 작성하여 총 인구수 확인
- 3. [9307.외국인선거인등록],[9308.재외국민주민등록자등록]에서 등록여부 확인. 예비선거인명부 작성 시 등록했을 경우, 선거인 본 명부 작성시에는 변동된 자료만 보정
- 4. [9311.선거인파일작성] 업무에서 선거인명부 작성
- 5. [9312. 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 업무에서 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 작성
- 6. 관내현황 총 인구수와 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의 총 인구수가 같고 누락자가 없는지 확인
- 7. [9313.선거인명부출력] 업무에서 기타통보서와 선거인명부 출력
- ※ 예비선거인명부 작성 시 출력한 선거인명부는 대사완료 후 파기하여 본 명부 작성 후의 선거인명부와 섞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 ※ 재외국민주민등록자에 대한 3개월 미만(주민등록표 등재) 확인이 중요함
- 1. 등록구분이 거주자,국외이주신고자가 재외국민 출국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3개월 이상으로 체크함.
- 2. 재등록 및 신규등록으로 등록구분이 재외국민 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재등록 및 신규등록 된 날짜부터 선거인 명부 작성일까지 3개월 미만 여부를 확인 후 체크해야 함.

감사합니다

주민등록 인감 서명 공동 학습방 (http://10.51.21.13)

「선거업무 → Q&A, 자료실」

FAX: 02)2100-372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공직선거 업무편람

사건·사고 사례 및 예방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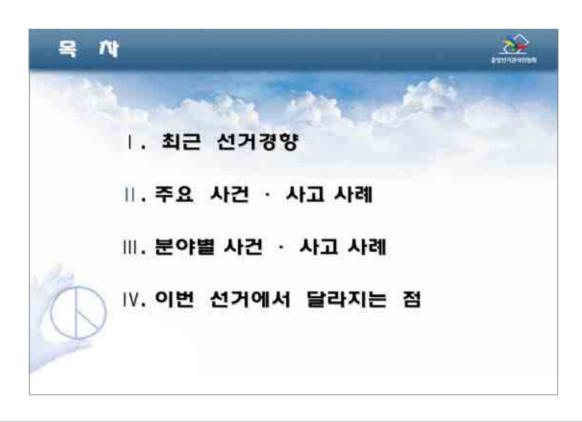






- 1. 최근 선거경향
- 2. 주요 사건·사고 사례
- 3. 분야별 사건·사고 사례
- 4. 이번 선거에서 달라지는 점

2018. 6. 13.(今)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건 · 사고 사례 및 예방대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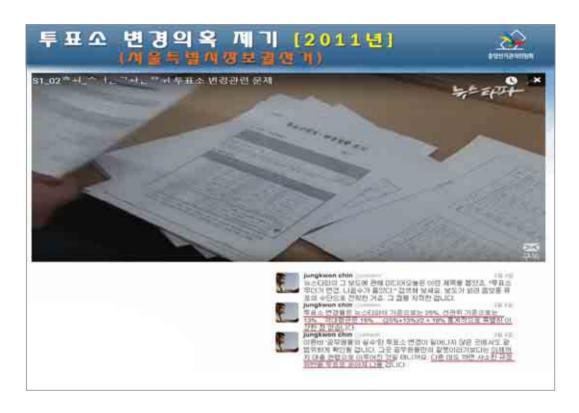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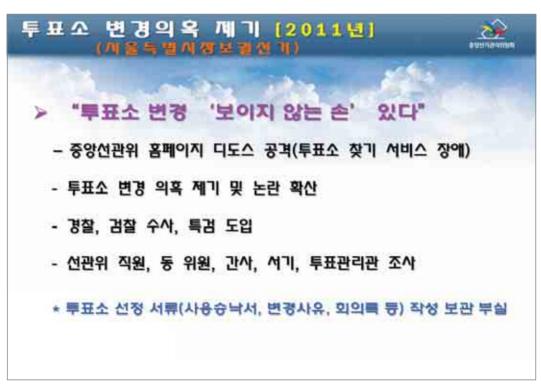
의근 선거경양 → 유권자, 정당・후보자 등의 기대치 상승 → 절차적 공정성・투명성 요구 → 일부 지역의 사안을 쟁점화, 전국적・파급 → SNS는 문제를 확대 재생산하는 최고의 무기 → 다수의 관심유도, 사실관계 확인 없이 우선 전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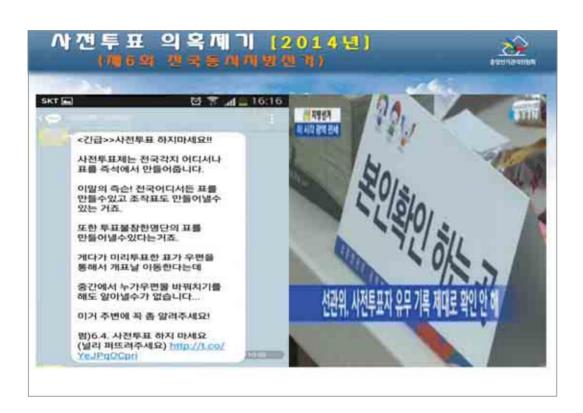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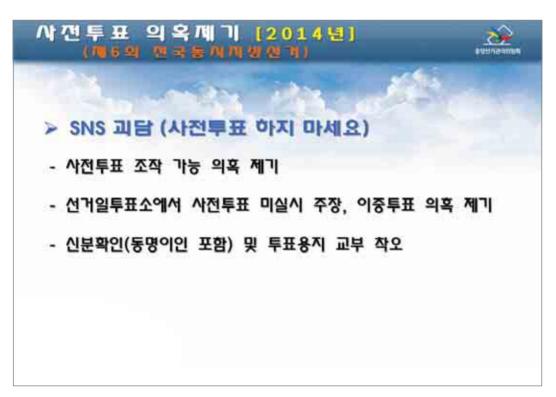


투표암 미봉인 논란 [2012년] ▶ 투표함 이송 등 바꿔 치기 했나? - 강남을 투표함 봉함·봉인 누락 - 개표중단 항의 농성, SNS 의혹확산 - 증거보전 신청, 선거무효소송 - 관련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징계 * 매뉴얼에 의한 절차 미 준수(방심)













사건·사고 약산 경양 > 의혹제기(인터넷, 모바일 등) > SNS등을 등한 급속한 확산 ▶ 정치권 개입 ▶ 소송제기 신뢰저하 물이익, 피애



선거인명부



- > 선거권이 있는 자 누락
- 선거당일 투표소에서 자신이 선거권이 있음에도 명부에 누락,
 참정권 침해 항의
- ▶ 선거인명부 편철 부실
- 투표소에서 본인확인 중 명부의 내지 1매가 누락되어 있는 것을 발견, 선거인과 참관인이 부정선거라 항의

선거인명부



- > 선거인명부, 투표안내문 투표구 구분 오류
- 선거인명부에 투표구 관할구역 착오 작성
- 투표안내문에 관할구역(1개 등)을 바꿔(1투↔2투) 작성·발송
 - * (원인) 선거경험 없는 명부작성공무원의 착오, 확인 행정 미흡으로 신뢰 손상

선거인명부



2013. 10. 20. 민주당은 국회에서 "투표권 없는 서청원후보, 후보 나설 자격 없다" 선거인명부 누락에 대해 현안 브리핑

[화성시갑 국회의원보궐선거(2013. 10. 30.)]

처 리 : 명부 작성과정의 행정착오에 의해 발생 명부누락자 구제절차에 따라 등재

선거인명부



- 부재자신고서 보관·관리 부주의
 - 동 주민센터에서 부재자신고서(현, 거소투표신고서)를 전산입력 도중 입력담당자가 임시직원에게
 - "신고서를 갈라라" → "신고서를 갈아버려라" 로 이해
 - 파쇄기로 신고서 66매를 파쇄
 - * 등기우편 접수 신고서를 우체국에 확인하여 등재

선거벽보



> 선거벽보 첩부 오류

- 특정 후보자 선거벽보 첩부 누락, 기호순 투입 착오
- 특정 후보자 선거벽보를 볼 수 없도록 가로수 뒤편 게시
- 차도 쪽에서만 볼 수 있도록 부착

선거벽보 분실

 후보자가 제출한 벽보를 책상 위에 두었다가 자리를 비운 사이 분실





선거벽보



- > 선거벽보 첩부로 인한 건물벽면 훼손
 - 아파트 벽면에 풀칠로 벽보 첩부, 관리인이 철거요구
 - 비닐 벽보판을 건물담벽에 계시하기 위해 못을 박아 담벽 훼손, 테이프 부착 흔적 → 원상복구 요구
 - * 원상복구 소요비용 600만원 지급 후 합의

선거공보



- > 선거공보 수량 미확인 접수
- 선거공보 발송작업 중 甲후보의 공보 500매 부족 발견
- 추가제출 요구하자 "동위원회가 분실하였다." 항의
- * 타 동 잔량 조사 후 해당 동 송부, 발송완료
- > 화재로 보관중인 선거공보 소실
 - 세 후보자 공보(전부 또는 일부)
- * 추가 인쇄 제출

선거공보



- > 투표안내문 발송작업 소홀로 다량 반송
- 발송 작업시 창봉투 주소 기재면 거꾸로 투입
 - * 관할 우체국장 협조로 신속이 재발송
- > 직전선거의 투표안내문 출력·발송
 - 착오로 직전선거 투표안내문 출력프로그램 사용
 - 출력 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발송
 - * 위원장 사과문 동봉, 투표안내문 재발송





투표사무원이 잔여투표용지 투표함에 임의 투입

- 선거별 투표용지 교부매수를 맞추기 위해 기표되지 않은 일부 선거 잔여투표용지(9매) 투표함 투입

- → 타 투표사무원 신고, 기소, 1·2심 집행유예(생교포기확정), 공무원 신분상실(법 249至)
- * (원인) 투표사무원의 안이한 업무처리, 교육 소홀 등



- > 투표함 봉쇄·봉인 누락
 - 국회의원선거 개표시 000 후보 개표참관인 측이 개함과정에서
 붕함・봉인 누락 투표함 발견, 이의제기
 - → 개표중단 요구, 농성·항의집회, 국회 진상규명, 선거무효 소송 제기(기각)
 - 유명인 투표장면 언론보도 시 투표함 미봉인 영상 방송
 - * (원인) 교육 소홀, 투표관리관의 업무처리 미숙 등





- > 투표관리관 지각으로 인한 투표개시 지연
- 투표지가 들어있는 투표함 열쇠 휴대한 투표관리관 지각
 - * 자물쇠를 부순 후 투표 개시
- 투표지 보관금고 열쇠 분실로 투표개시 지연
 - 면위원회에서 투표관리관 인계 시 문제발생
 - 06:20 군위원회에서 무번호투표용지로 투표개시
 - * 06:45경 포크레인 동원 금고 개방 후 투표용지 배부



- > 투표개시 직전 정전
- 지하1층 투표소에서 개시직전 전기고장 정전
- * 양초 등을 이용 투표진행 후 신속이 복구
- 투표관리관의 부주의로 투표용지 오손
 - 커피잔을 엎질러 투표용지 150매 정도 오손
 - * 오손된 투표유지는 잔여투표유지로 처리



- > 기표소에 남겨진 투표지를 투표관리관이 임의투입
- 투표관리관이 기표소 안에 남겨진 투표지 1매 발견
- 투표소 안이 소란스러운 틈을 이용, 투표함 투입
- 이를 목격한 투표참관인이 이의제기
- → (처리절차) 공개된 투표지로 처리, 투표록에 기재
- * 선거 후 공무원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기소



- 선거인이 투표개시 및 마감 시 관여
- 투표참관인이 정상적으로 출석하였음에도
- 선거인이 불필요하게 투표함 및 기표소 검사 등
- 투표마감 시각전의 투표종료
- 선거인수가 적은 투표소, 17시경 투표마감
- 투표함 회송준비 중 참관인 이의제기



- > 투표용지 교부수 취합·보고 시 1개 투표소 누락
- 투표용지 교부수 2.720매 누락
- SNS 등에서 부정선거 의혹 제기
- > 잠정투표자수 착오 보고
- 잠정투표자수 1,657,753, 투표수 1,657,821(68표 증가)
- 후보자 사퇴 안내문 첩부 누락
- 일부 투표소 미 첩부(상대후보자 이의제기 후 첩부)

투표관리 > 투표소 건물 승강기 고장 - 역성 선거인 2명 30분 갇힘 > 점자형 투표보조용구 비치 착오 - 도익원 → 시익원 > 선거법위반 벌금형 투표관리관 공정성 문제 제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을 위한 선거운동 전력



사건·사고 예방을 위아여 > 선거관리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책임과 의지 > 매뉴얼(사무편림)에 의한 사전 점검·확인 > 지방자치단체와 선관위와의 긴밀한 협조 상호 신뢰 바탕 → 원활한 소통!!!





이번 선거에서 달라지는 점



- ▶ 투표소 내 반려동물 출입 제한
 - -투표소내 반려동물 동반은 원칙적으로 금지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출입 허용)
 - 다만, 질서유지 및 선거인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투표관리관이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
 - ※ 동반이 허용된 경우에도 다른 선거인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품에 안도록 함(품에 안을 수 없을 정도로 큰 반려동물은 동반불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공직선거 업무편람

IV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 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일정
- 2.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등
- 3. 「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
- 4. 「정당법」·「정치자금법」의 제한·금지규정
- 5. 중점추진사항 및 협조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호자상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주권의 수호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위상 표현

☞ 좌 대

투표지를 쌓은 형상으로 국민주권을 표현

☞ 인 체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명선거에 대한 굳은 의지와 엄정중립을 표현한 것으로 중성의 인체로 남녀평등을 의미

☞ 장 대

공평성 상징

☞ 비둘기

희망찬 민주국가발전과 활기에 찬 국민을 상징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일정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일정

2018년

- 2.13.(화)부터 (시 도지사, 교육감선거)
- 3. 2.(금)부터 (시 도의원, 구 시의원 및 장의 선거)
- 4. 1.(일)부터 (군의원 및 장의 선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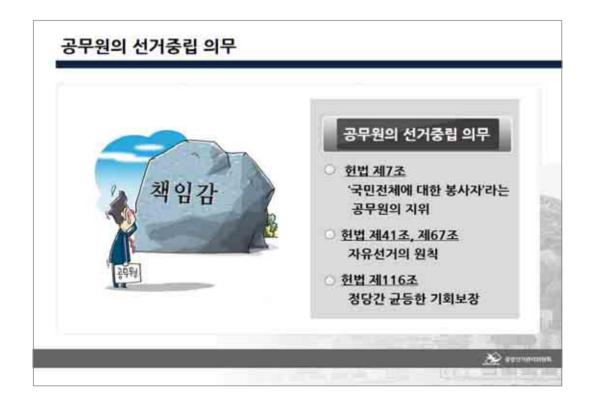
5,24,(목)~25,(금) 5,31,(목)부터 6,8,(금) ~9,(토) 6,13,(수) 오전6시~오후6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등

공무원 선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 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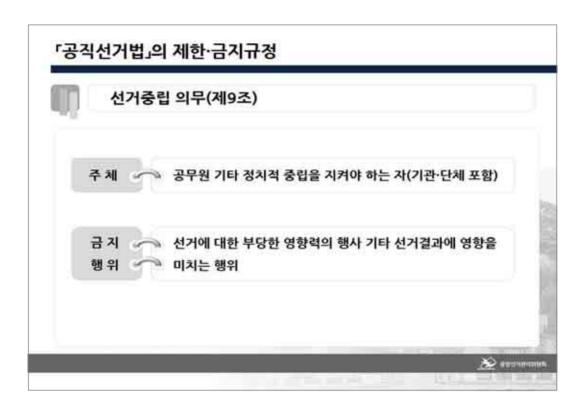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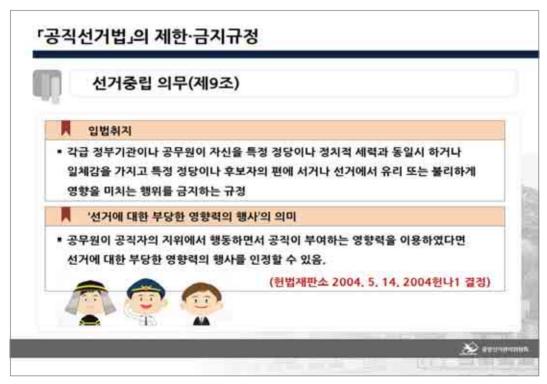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제한 강화



- 「공직선거법」규정 신설(2014, 2, 13,)
- 🔈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고,
-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공무원의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

「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







선거중립 의무(제9조)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의 대표자 또는 공직선거 후보자 방문시 관례에 따라 수행하거나 현황을 설명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선거와 무관하게 정부의 직무활동에 해당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행사, 도로 개통식,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개관식, 회의 등을 개최하는 행위



「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



선거중립 의무(제9조)



현직 장관의 정당 대표자와의 동행 및 특정 정당 지지발언

현직 장관이 소속 정당의 대표자와 함께 자신의 연고지역을 방문하여 기자간담회에서 "○○를 위해 진정으로 일할 수 있는 인재들을 찾으러 왔다", "〇〇, △△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발언을 하고, 당격자 등과 함께 "지방권력 교체하자"는 구호를 제창함

(2006, 2, 22,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선거중립 의무(제9조)



각 정당의 복지공약 재정소요 검토결과 발표

정부부처가 선거기간 중에 선거에 참여하는 각 정당의 복지공약에 대하여 재정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등을 검토하여 보도자료 및 간부공무원의 인터뷰를 통하여 재원조달방안이 그대로 실현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며, 제기된 복지공약을 모두 이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소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복지공약 전면이행을 위해서는 추가증세 또는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므로 이는 조세 및 미래세대 부담 증가로 연결될수 있다고 공표함 (2012, 4, 5,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촉구)



「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



선거중립 의무(제9조)



기타 할 수 없는 사례

- 공무원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의 정책 개발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정당또는 그 정당 소속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정책이나 공약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하는 행위





선거운동 금지(제60조)

입법 취지

- 공무원이 그 직을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할 경우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특정 개인을 위한 선거운동에 남용할 소지가 많게 되고, 자신의 선거운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하거나 관련 법규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등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바,
-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이나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려는 규정임

(헌법재판소 2008, 4, 24, 2004헌바47 결정)





최근「헌법재판소」위헌결정

결정주문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5호 중 제53조제1항제4호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 부분 및 같은 법 제255조제1항제2호 중 해당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2018, 2, 22, 2015헌바124 결정)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허용

- 현법재판소는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순 위헌 결정 → 선거운동 허용
- 다만,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다른 기관의 상근직원은 여전히 선거운동 제한



「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



선거운동 금지(제60조)

주체

법 제60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공무원

-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장·차관, 지방자치단체장 등 다른 정무직 공무원 제외)
-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 국회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 「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 summents



선거운동 금지(제60조)

금지행위 선거운동

선거운동

-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함.
- * 선거운동의 목적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정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만한 객관적 사정에 기초하여야 하며,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되, 특히 선거일이 가까 우면 가까울수록 특정 선거를 목표로 하는 선거운동임을 쉽게 인정할 수 있음

(대법원 2016, 8, 26, 2015도11812 판결).



「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 선거운동 금지(제60조) 군수 자서전 돌리고 SNS로 치적 퍼나르고 경쟁 후보 임탐하고 원들이 다음에 등 경우를 수여 사용 비사관 근하게 시간단거공의, 하는 대비 당위 되면 모집 시장 출판가입의 홍보 대한 11-29 구스, 10명 영구소 있건 선생님 전대 선생님 전대 物を設づり 包料的料 行送草屋 製造 利音 ぶん 시합과 공무원 2명 시장 되시간 500부 무섭 제공 시장 비사실장 #int CAL 선생님 건물 그림 시장 모네일 약임 네트 노인의 행시비용 지원 63/104 군수의 공무원 1명 군수 State File 출반기상이에 업학 회상 출생시다. 참사와 2000년 대상 무섭 공학



선거운동 금지(제60조)



선거구민의 인적사항을 후보자 측에게 제공

동사무소 직원이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에 평소 친분이 있는 △△ 등 8명에게 전화하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부탁하여 58명의 인적사항을 통보받아 이를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근무자에게 제공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됨

(서울지방법원 1999, 10, 28, 99도합851 판결)



「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



선거운동 금지(제60조)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단체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선거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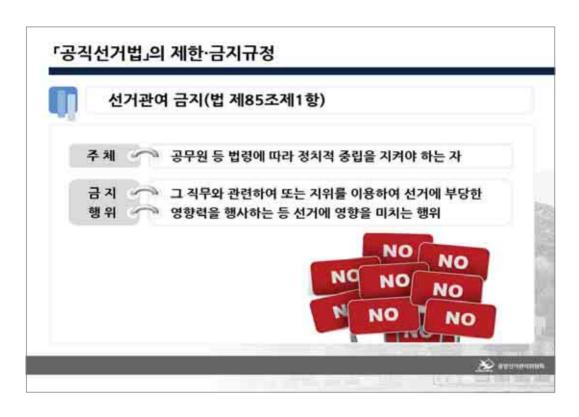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단체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의 지원 하에 ○○○당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전국대의원대회와 소속 단체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당을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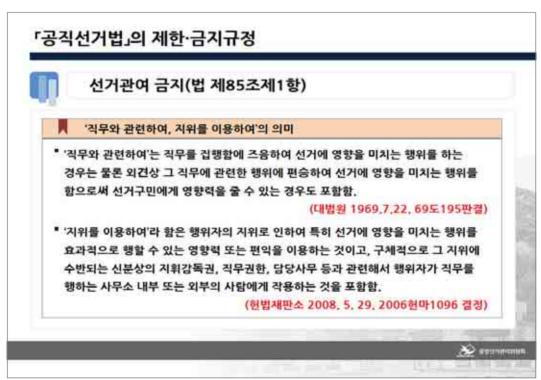
(대법원 2004, 12, 23, 2004도7101 판결)



「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 선거운동 금지(제60조) 기타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정무직 공무원이 출마 예정인 제자들과 선거홍보용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 • 지방의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선거대책기구에 참여하는 것은 무방하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대책기구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됨.









선거관여 금지(법 제85조제2항)

주체 🔷 공무원

금지행위 🔷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

" 공무원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직무상의 지휘·명령권, 인사권, 예산권 등에 근거한 영향 력을 이용하여 공무원이 부하 또는 직무상 관계있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선거에 즈음 하여 특정한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



선거관여 금지(제85조)

지방자치단체의 대선공약자료 개발·건의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공약자료 개발·건의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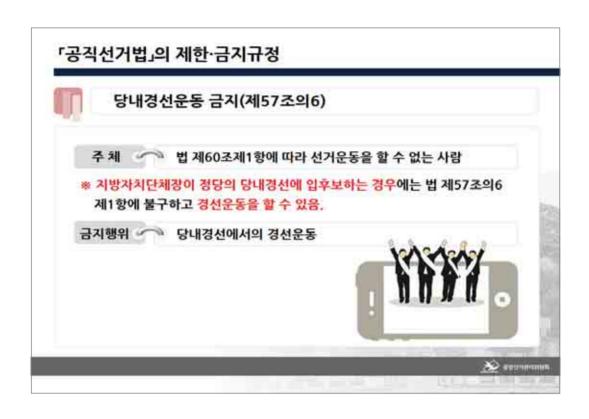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선거 공약자료를 개발 하여 각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전달하고 채택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직무 수행을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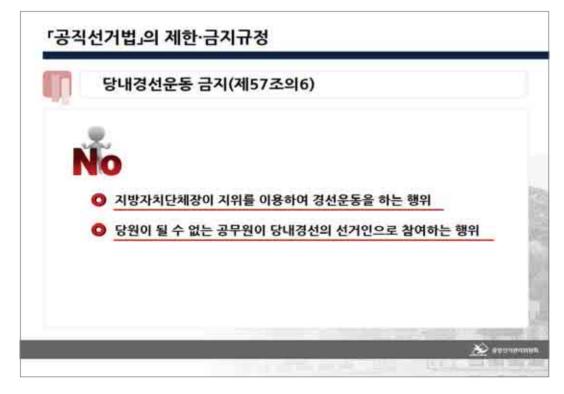
■ 건의한 공약자료가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채택된 사실을 알리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한 공약자료에 대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채택사실을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보도자료 제공 등 외부에 알리는 경우 공약을 채택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불가능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제86조)

정당·후보자의 업적홍보 등 행위(법 제86조제1항)

주 체 -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원은 제외), 통- 리- 반장, 주민자치위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 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상근 임·직원 등

금지행위

-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참여,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발표 하는 행위



「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제86조)



'업적'

 선거에서 긍정적인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를 말하고. 미담사례를 발굴 소개하려는 취지였다고 하여 홍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1997, 4, 25, 97도320판결)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행위 또는 그 계획을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에 관하여 지시, 지도하는 행위임

(대법원 2011, 2, 24, 2010도16650판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제86조)



동장이 부녀회 모임에 참석하여 시장 업적 홍보 행위

지방선거에 있어 동장이 선거일 직전에 자신이 관할하는 동[洞]부녀회장 등 10여 명이 모인 식당에서 "동을 위하여 시장님이 사업비를 많이 지원 하여 주셨다."라고 발언하는 등 시장의 업적을 홍보

(대전고법 2002노 785 판결)



「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제86조)



지방공무원이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인쇄물 배부 등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역지부의 수석부지부장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선거기간 중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지원하고 투표를 권유하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의 인쇄물 총 50매를 배부

(대법원 2004도 7100 판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제86조)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지방공무원이 선거에 출마한 현직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후보자의 연설문. 인터뷰자료, 선거공약, 토론회 자료, 보도자료 작성에 관여하거나 선거용 프로필을 작성한 행위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에 해당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069 판결)



「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제86조)

정당·후보자의 업적홍보 등 행위(법 제86조제1항)

금지행위 🦟

- * 선거기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 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제86조)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정상적인 업무 외의 출장으로 법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명목상·형식상 이나마 당해 공무원 등의 업무와 관련한 출장행위의 외관을 지니고 있음을 전제로, 그 실질에 있어서 통상적인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여야 함

(대법원 2005, 8, 19, 2005도2690판결)



「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제86조)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공무원의 정상적 업무 외의 모든 출장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기간 중'에 그리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고 있음

(헌법재판소 2005, 10, 27, 2004헌바41 결정)



「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제86조)

정당의 정강·정책 홍보 등 행위(법 제86조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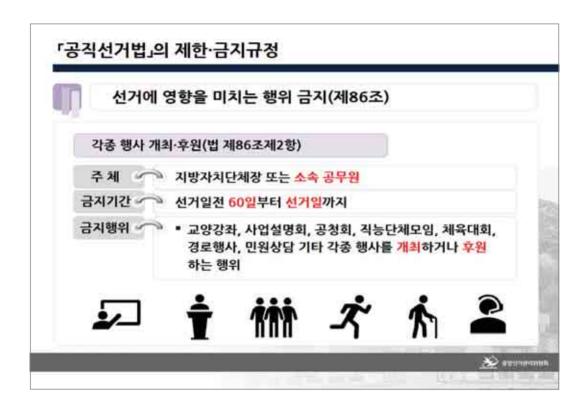
주체 기방자치단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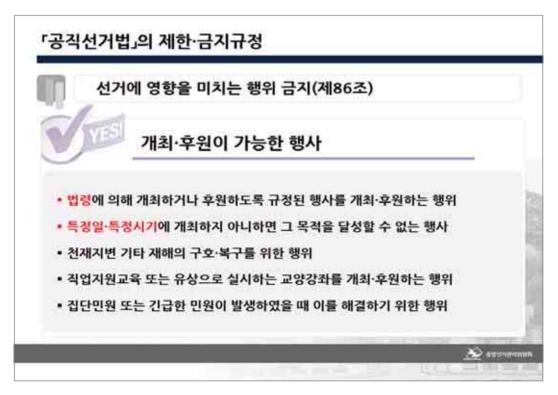
금지기간 서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행위 🛫 *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 홍보-선전하는 행위 ※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 ※ 다만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제86조) 정당의 정강·정책 홍보 등 행위(법 제86조제2항) 주체 기방자치단체장 금지기간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행위 * *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 선출대회를 제외 하고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제86조)



개최·후원이 가능한 행사

-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제외
- 국가유공자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시행 되는 기념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읍·면·동 이상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제86조)



'법령에 의한 행위'의 운용

- 어버이날(5, 8,), 노인의 날(10, 2,), 경로의 달(매년 10월)
 - 「노인복지법」제6조(노인의 날 등) 및 동법시행령 제11조(노인의 날 등의 행사)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개최
 - 중앙정부가 수립·시달한 지침 범위 안에서 식사·기념품 제공 가능
 - 중앙정부가 수립·시달한「어버이날 행사 및 포상계획」범위 안에서 소외계층 노인에게 위문품 제공 가능
 - 지방자치단체 개최 및 민간단체 개최 모두 가능
- 어린이날(5, 5,), 어린이주간(5,1, ~ 5, 7,)
 - 「아동복지법」제6조(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통상적인 기념행사 및 부수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제86조)

'법령에 의한 행위'의 운용

- 산림청장이 「산림기본법」제4조 및 제11조에 근거하여 수립·시행하는 "기본시책"
 -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산림계획 수립(지방자치단체)
 - 식목일(4.5.)의 "내 나무 갖기 캠페인"행사
-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달한「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 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무료 영화 상영 또는 무료 음악회
- 국가보훈처가 수립·시달한 「지방자치단체 보훈예우시책 추진지침」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전적지 순례사업



「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제86조)



특정일·특정시기의 개최 관련 행사의 운용

- 구·시·군(읍·면·동)민의 날 행사의 경우, 오래 전부터 그시기에 개최하여 온 행사
- 향교의 석전행사는 전국 230여 개 향교가 5월에 동시에 개최
- 농산물의 개화 파종 생육조절 등에 시기적 제한이 많은 화조류 농산물 박람회



각종 기념일 행사의 개최·후원

예비군의 날(4월 첫째 금요일), 식목일(4. 5.),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 (4. 13.), 4.19혁명기념일(4. 19.), 장애인의 날(4. 20.), 근로자의 날(5. 1.), 어린이날(5. 5.), 어버이날(5. 8.)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제86조)

- 사회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보조금 지급
-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 「공직선거법」제86조 적용대상
- 제한기간 중이 아닌 때에 개최하는 행사를 위한 보조금을 제한 기간 중에 지급하는 것은 해당 제한기간 중 후원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관할구역 밖에서 선거구민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

 제한기간 중에 상품 수출확대 및 관광객유치, 투자촉진 등을 위한 행사를 관할구역 밖에서 시·도와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은 무방함



「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제86조)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행위 제한(법 제86조제5항)

주체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속 공무원

- 금지행위 🦳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 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 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 · 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2017, 12, 15, ~ 2018, 6, 13,)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음 (1종1회도 제한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제86조)



'1종 1회'의 개념

- 1종의 개념
- '1종'이란 홍보매체 또는 제작형태·규격·배열방법 등이 모두 동일한 것을 말함
- 1회의 개념
- ▶ 인쇄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 발행・배부계획에 따라 당해 분기내에서 주민별로 1회 이내에서 배부하는 것
-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하나의 시설물을 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
- 전광판을 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시간대에 1회 방영하는 것
- ▶ IPTV의 경우 특정 채널에 1종의 영상홍보물을 게시하여 두는 것을 말함



「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제86조)



'1종 1회'의 개념

- 1회의 개념
- 신문·방송에 광고하는 경우 법 제69조(신문광고)제1항 후단 및 제70조(방송광고)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1회를 말함
 - 일간신문에의 광고회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하나의 일간신문에 1회 광고하는 것을 1회로 봄
 - 방송광고의 광고회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재방송을 포함하되,
 하나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시설을 선정하여 당해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제86조)



발행·배부·방송 가능한 홍보물

- 법령에 의하여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 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제86조)



발행 · 배부 · 방송 가능한 홍보물

- 그 밖에 공직선거관리규칙(§47@)이 정하는 행위
 - 소속직원의 직무교육이나 업무추진을 위한 홍보물
 - 각종 통계 · 정보 등을 알리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백서 · 연감 또는 총람
 -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사업설명회 · 교양강좌 · 공청회 · 체육대회 · 기념일 · 고유축제 등 각종 행사를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 (자치단체장의 성명, 사진, 활동상황, 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이 게재된 홍보물 제외)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제86조)



발행·배부·방송 가능한 홍보물

- 그 밖에 공직선거관리규칙(§47@)이 정하는 행위
 - 환경·의료·교통·조세·건축 등에 대한 민원안내서 또는 반상회보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물 (자치단체장의 성명, 사진, 활동상황, 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이 게재된 홍보물 제외)
 - 역사 · 지리 · 문화 · 특산물 · 관광명소 등을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 (자치단체장의 성명, 사진, 활동상황, 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이 게재된 홍보물 제외)



「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제8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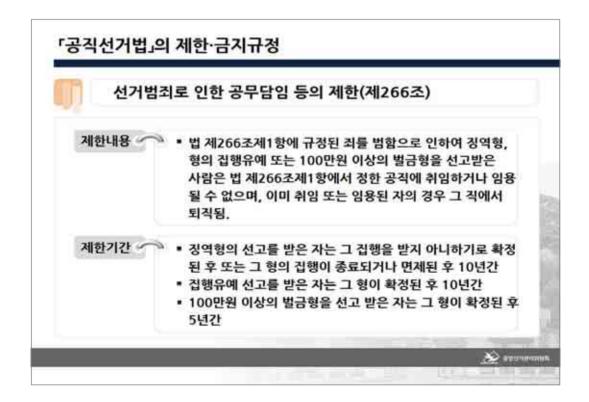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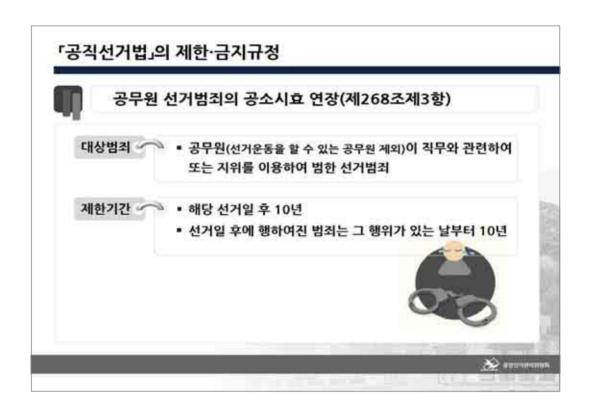
발행·배부·방송 가능한 홍보물

- 그 밖에 공직선거관리규칙(§47@)이 정하는 행위
 - 재난관리 ·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물 (자치단체장의 성명, 사진, 활동상황, 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이 게재된 홍보물 제외)
 -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입구, 외벽면 또는 담장에 게시하는 홍보물 (자치 단체장의 직명, 성명, 사진, 활동상황, 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이 게재된 홍보물 제외)



「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제86조)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등 제한(법 제86조제7항) ■ 지방자치단체장의 광고 출연 금지 금지행위 🖍 명목여하 불문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음 i 🙃 🔳





「정당법」·「정치자금법」의 제한·금지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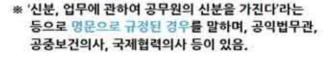
「정당법」·「정치자금법」의 제한·금지규정



정당 가입 금지(정당법 제22조)

내용

- 정당의 발기인·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등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사립학교의 교원(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제외)
 -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







「정당법」·「정치자금법」의 제한·금지규정



후원회 가입 금지(정치자금법 제8조)

내용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음.

공무원의 후원금 기부 관련 법제처 유권해석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제6조에 따른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지?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에 따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정치자금법」 제6조에 따른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금지됨.



중점 추진사항 및 협조사항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공직선거 업무편람

V

결격사유조회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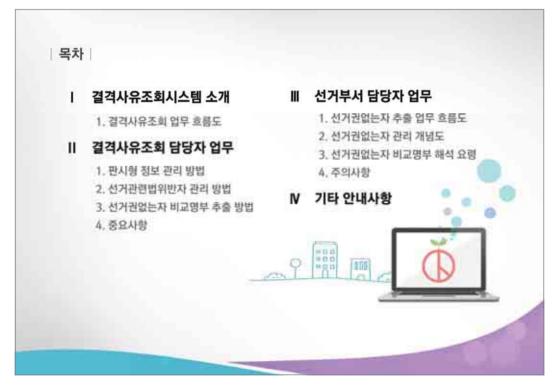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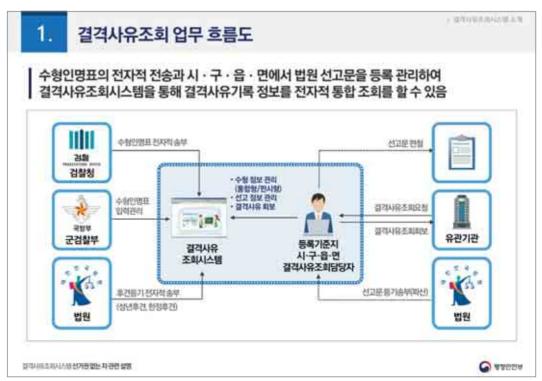


- 1. 결격사유조회시스템 소개
- 2. 결격사유조회 담당자 업무
- 3. 선거부서 담당자 업무
- 4. 기타 안내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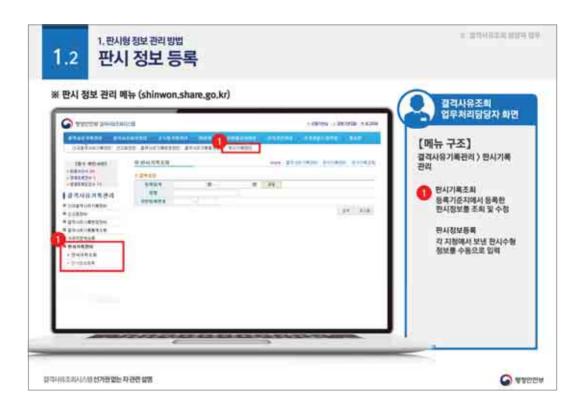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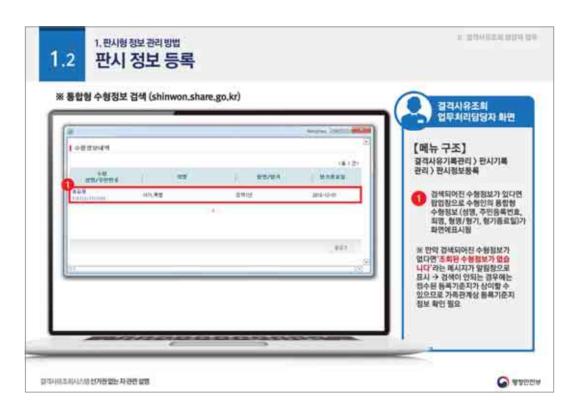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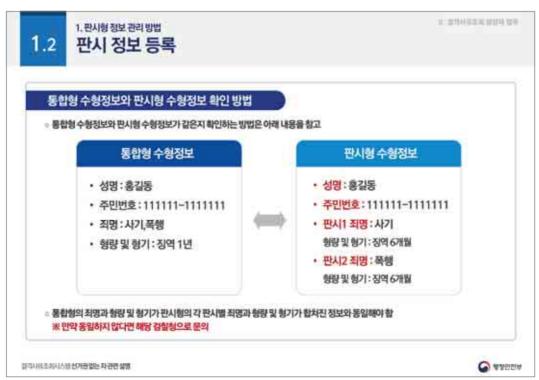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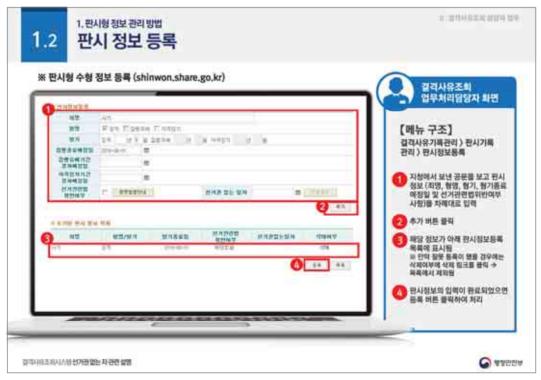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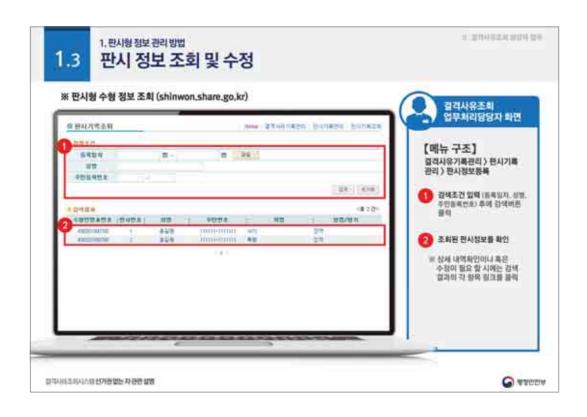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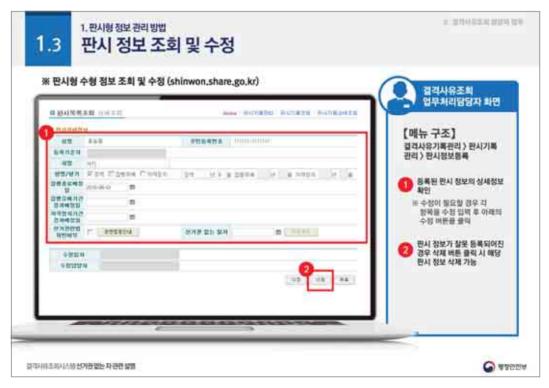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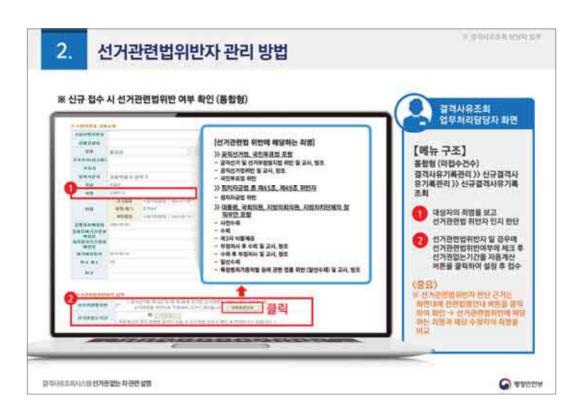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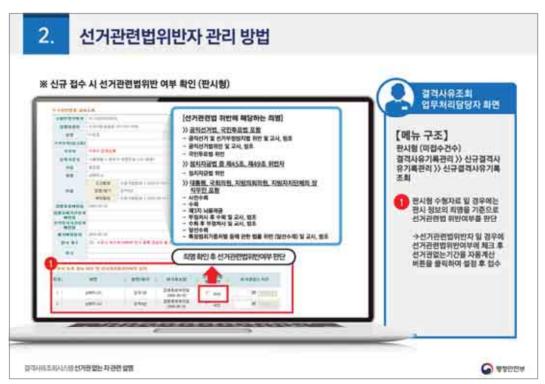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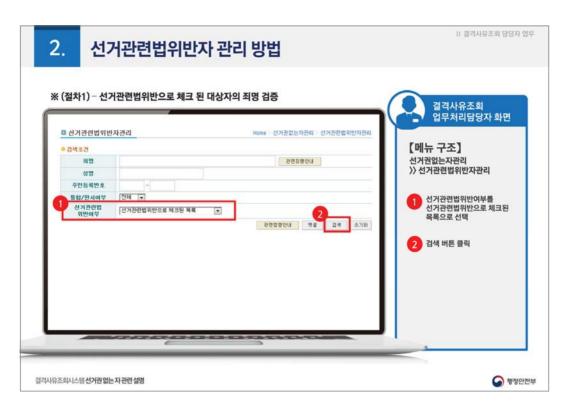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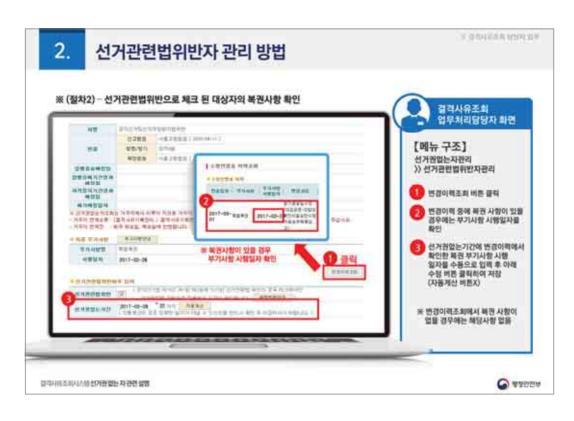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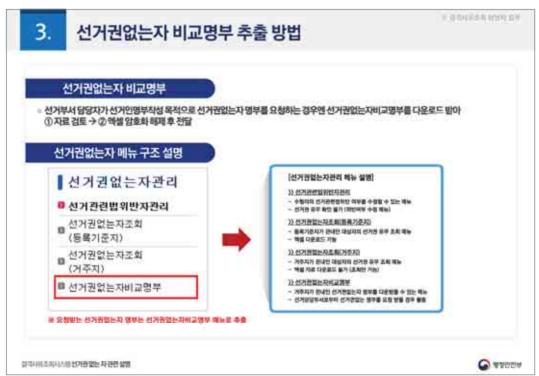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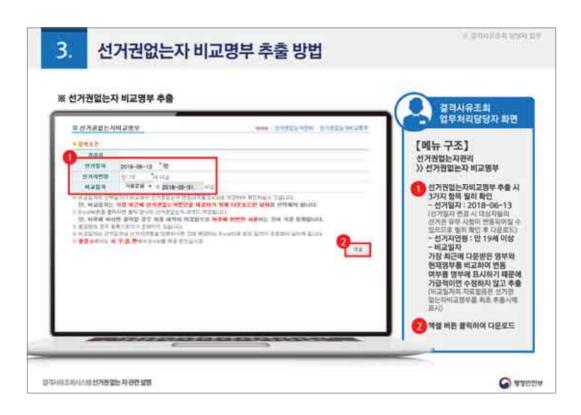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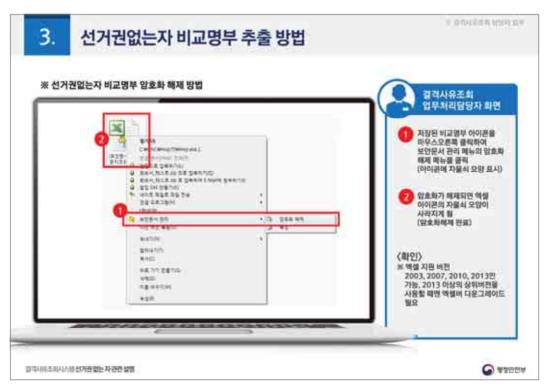












※ 資用料的有利的利用等

중요사항

중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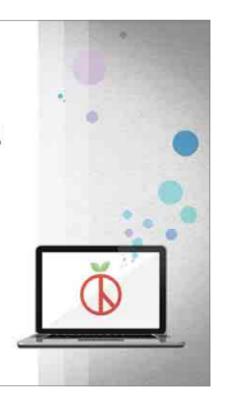
- · 선거권없는자비교명부추출 시해당 문서를 '열기'로 열지 않고 PC로 '저장'하여 명부를 관리
- 선거기간 동안에는 선거권없는자비교명부 추출 요청이 자주 발생 함
- -선거권없는자비교명부가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선거부서 답당자가 명부 해석 요청 시 이력추적이 불가능
- 비교명부 추출 시 3가지 입력 사항 확인 (선거일자, 선거자연령, 비교일자)
- 선거일자는 '2018-06-13' 선거일로 입력(선거일자가 변경될 시 선거권없는지비교명부가 상이해 질 수 있음)
- 선거자연령은 만 19세로 입력
- 비교일자는 가급적 수정하지 않고 최근에 다운로드 받은 날짜와 현재 날짜가 비교되어질 수 있도록 설정
- 선거부서 담당자에게 비교명부를 전달함 때 반드시 '파일 암호화 해제' 후 전달
- 선거권없는자비교명부 추출 이전에 '선거관련법위반자' 검증 및 정리 절차(1,2)를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 정확한 선거권없는자명단이 작성되어 질 수 있도록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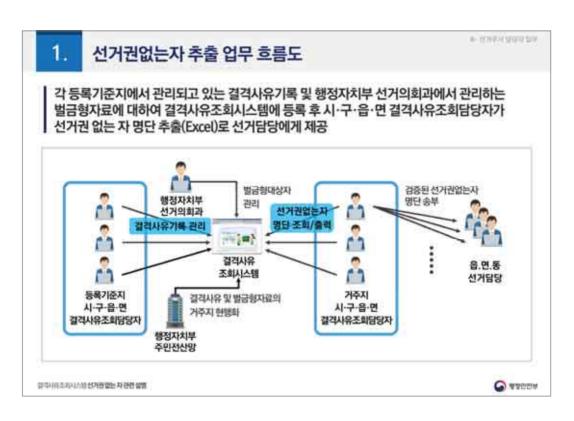
장국사용조의시스한 선거관 없는 자 관련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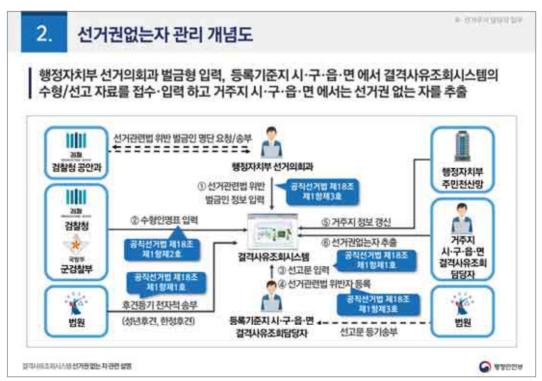


Ⅲ. 선거부서 담당자 업무

- 1. 선거권없는자 추출 업무 흐름도
- 2. 선거권없는자 관리 개념도
- 3. 선거권없는자 비교명부 해석 요령
- 4. 주의사항







3.

선거권없는자 비교명부 해석 요령

R-MINERAL STATE SAFE

◆ Excel에 표현되는 변경사유 중 추가/삭제 원인 설명

- 신규: 등록기준지에서 신규 수형/선고 자료를 접수
- 전입/전출: 신규 수형/선고 자료의 경우 거주지가 최초로 현행화. 대상자의 거주지가 실제로 변경
- 종료예정일변경: 집행종료예정일 등의 변경
- 선거관련법위반여부변경 : 담당자가 선거관련법위반여부의 체크를 선택/해지 한 경우
- 선거권없는기간변경: 담당자가 선거관련법위반자의 선거권 없는 기간을 변경하였을 경우 [예] 선거권이 부여될 수 있는 복권이 발생하여 선거권 없는 기간에 복권일자를 입력한 경우

◆ 다운받은 Excel 자료의 변경상세내역에는 위와 같은 사유와 자료의 변동 일자가 조회

[예1] 전입/전출: →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철동 [변경일자:2011-12-20][2015-10-06] [예2] 전입/전출: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철동 [변경일자:2015-10-05][2015-10-06]

강국사용조의시스에 선거관 없는 자관련 설명



4.

선거권없는자 비교명부 해석 요령

B- HINDH GUID SIV

◆ 일자에 대한 정의 (선거권없는기간 / 폐기예정일자)

- 2999-12-12: 검찰청에서 결격사유조회시스템으로 폐기예정일자를 주지 않았을 경우 → 해당 검찰청에 문의하여 검찰청 시스템의 실효일자를 수정 요청
- 8888-12-31 : 검찰청에서 사형/무기징역/도망 등으로 인해 형 집행을 하지 못하였거나 집행기간이 무기한인 경우
- 2099-12-31:97년 이전수형등록에서 형명을 사형/무기징역으로 입력하였을 경우
- 7777-12-31 : 상소권회복으로 인해 선거권이 복권되었을 경우
- 1900-01-01 : 검찰청에서 무죄판결로 복권되었을 경우
- 1111-11-11: 검찰청에서 수형인명표를 삭제하였을 경우 (즉, 검찰청에 존재하지 않는 명표)

합격사용조의시스한 성기관업한 자관련 설명



R-MINER STREET 5. 선거권없는자 비교명부 해석 요령 성명 동목기준지 건주지 거주지형점관세 변경상세계역 작업/전출-서울특별시 종로구 가리통-)서울록 별시 종로구 교님동[변경되자:2018-05-1111*** HONES -2 社会報酬人 香蕉 서용택별시 중 NUS **备130 マカ刺妄 表数 UM 전입/전출~서울폭병시 종교구 가회용~)서울록 천리님도 ~군 서울특별시 출 로구 **** 병시 종류구 고남동[변경일자:2018-05 1111*** 서울특별시 존로 85418 20 *告130 구 교내통 871 관심/관측 서울특별시 정복구 조망됨-)서울특 천막복도 보군 서울특별시 종호 별시 중로구 고남용[변경일자:2018-05 공성동 **#展 55** 구 고난동 3082018-05-311 단입/전문-서울씨열시 총보구 경문3가원-)서울 영상남도 "군 "등 100 서울특별시 중 로구 변 변 서울특별서 종립 구 영환3가원 1111-특별시 중구[반강일자:2018-05-30][2018 선거일자 : 2018-06-1 선거인명 : 만 19세 이상 산개권없는자비교명부 비뉴의 조화조건 교일자 : 201표-05-29 과 2018-05-31 비교 1. 거주지병정만서의 이동(만내 이동): 대상자 정길동은 2018-05-29일과 2018-05-31일 사이에 거주지 행정만서가 (가비롯 -) 교념통료 변경됨 2. 비교명부 Excel파일은 거주지행정관서별로 정렬되므로 [거주지행정관서 - 가회동]에서는 대상자 정길동의 변경사유가식제로 나타나고 [거주지행정관서 - 교남동]에서는 대상자 정길동의 변경사유가 추가로 보여진다. 3. 변경상세내역은 변경사유에 대한 내역으로 "전입/전출 - 구거주지행정관서-> 신거주지행정관세변경일자:(주민센터에 등록된 전입일자)] [결격사유조회시스템에 거주지가 적용된 날짜(즉 거주지현행화일)]"를 나타내게 된다. 4. 대상자 공감동은 "전입/전출"의 사유에 의해(성보구 -) 종로구)로 "추가"됩 5. 대상자유김봉은 "전입/전출"의 사유에 의해(종료구 -> 중구)로 "삭제"됨 합격사용조의시스를 선거관 없는 자관련 설명 등 학장안전부



주의사항

R-DHENSON SER

- 1. 각 시 구 읍 면 선거담당자는 액셀 컬럼이 [공직선거법 제18조 위반 조해으로 끝나는 자료는 잘못 제공된 자료이므로 [변경상세내역] 또는 [변경유무]로 끝나는 엑셀 자료를 결격사유조회 담당자에게 다시 요청하여야 함.
- 2. 선거인명부 작성프로그램에 선거권 없는 자 입력할 때 [사유]는 제공받은 엑셀 컬럼의 [공직선거법 제18조 위반조항]의 내용을 입력한다.
- 3. [거주지행정관세] 내용이 비어있는 경우는 [거주지] 컬럼을 참고
- 4. 엑셀 문서에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서를 제공한 결격사유조회 담당자에게 암호화 해제 후 제공될 수 있도록 안내(문서보안 솔루션 적용에 따른 문서암호화)
- 5. 벌금형의 경우가 아닌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3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죄명 검증이 필요함.
- 6. 개인정보 오남용 및 유출 시 처벌 등의 강화로 인한 엑셀자료 보관 및 활용 시 주의
 - 엑셀자료 유통은 암호화 후 보안 USB를 활용하여 제공
 - 담당자 PC에 있는 자료는 전산 처리 후 삭제 조치
- 7.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제2호' 중 일부 위현판결로 인하여 집행유예자가 '선거권 없는 자'로 포함되지 않도록 반드시 검증
- 8.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제2호' 중 징역 1년 미만자는 '선거권 없는 자 ' 로 포함되지 않도록 검증

장국사용조의시스한 선거관 없는 자 관련 설명



Ⅳ. 기타 안내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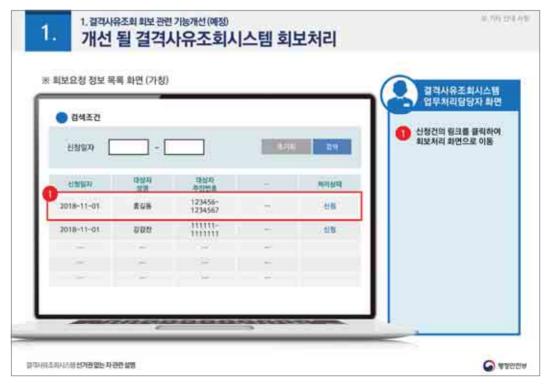
- 1. 결격사유조회 회보 관련 기능개선 (예정)
- 2. 엑셀을 활용한 명부 확인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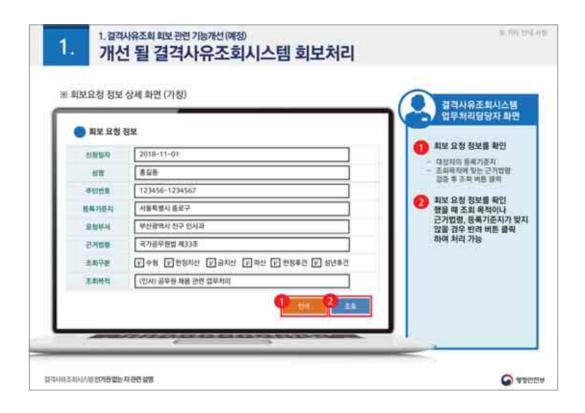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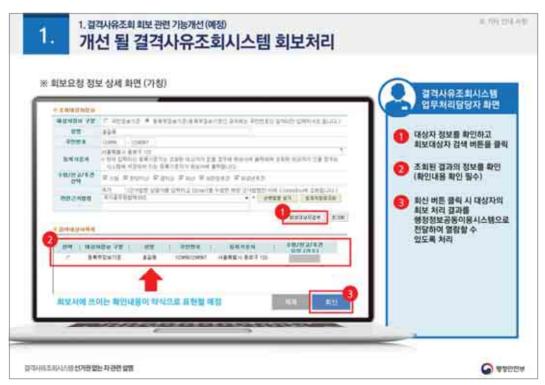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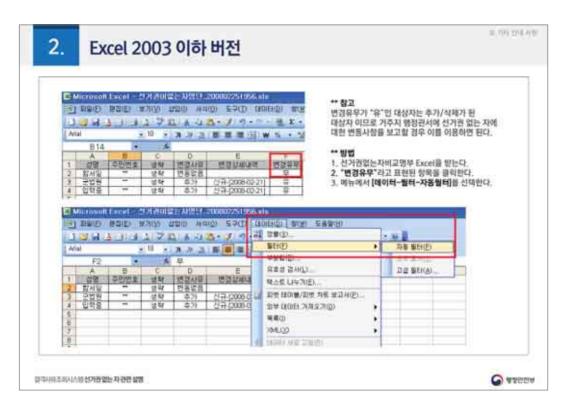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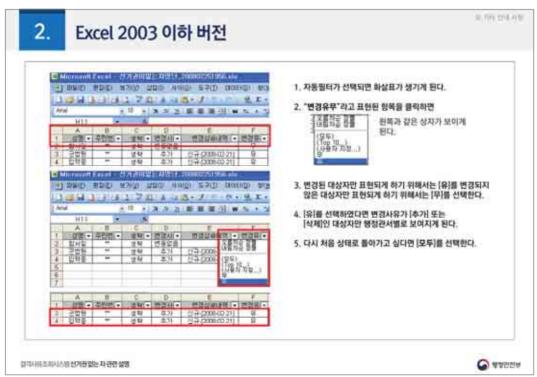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공직선거 업무편람

VI

주요 선거사무 일정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주요사무일정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세부일정



제 7 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일정표 2018.6.13(수) 실시



제 7 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일정표 2018. 6. 13(수) 실시 주요사무일정 세부일정

2018, 6, 13(수) 실시 제7회 전국통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실시사항	기준일	관계법조
	1, 15(월)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연구의 기준일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법14, 160의2(1) 급12(1)(2), 118(1
	2, 3(是)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용지 예비후보자용보물 발송수랑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7451(DQ) 74269(2(3)
	2, 13(화)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기]	선겨일 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3, 2(금)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법160의2①
-	3, 15(목)까지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왕이 선거사무관제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亿)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 5,14(월)]	世853①②
	3, 15(목)부터 6, 13(수)까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밥[111
	4, 1(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법(60억2①
	4, 14(토)부터 6. 13(수)까지	지방자치단제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86②
		선거인명부 작성		법\$37, 규\$10
	5, 22(화)부터 5, 26(토)까지	거소투표자신고 및 거소투표자신고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립부터 5일이내	법138, 규대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법165(3)
	5, 24(목)부터 5, 25(금)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으후6시)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149 규120

▲"공칙선거법。"법", "공칙선거관리규칙。"규", "정치자금법。"정급법", "참지자금서무관리규칙。"정급규", "선거관리위원회법。"선위법", "선기관리위원회법 시명규칙, "전위규", "지방교육자자에 관한 법률。"교자법", "공칙자 등의 병역사장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공병법", "공칙관기후보 지역 행역사항 산고 및공까게 관한 규칙, "공병규"

시행일정	실시사항	기준일	관계법조
5, 30(수)까지	선거백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법164(2) 규129(4)
5, 31(星)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밀 후 6일	법(33(3)
5, 31(목)부터 6, 12(화)까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산거운동기간충	법(82의2
. 117111111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165(6) 규130(5)
6.1(금)까지	선거백보 접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164(2) 규칙129(2)(5)
6, 1(금)에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법144(1)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법\$147(8)
6, 3(일)까지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법(65%), 154(1/동), 규동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465(8), 153(1) 규476
6. 8(금)부터 6. 9(토)까지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범위55②, 위58
£ 12(A)	투표(오전 6시 ~ 오후 6시)	H 72 01	법 제10장
6.13(个)	게표(투표충료후 즉시)	선거일	법 제11장
6, 25(월)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화22의2①, 인법화61 규화51의3③
8, 12(일)이내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2018, 6, 13(수)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세부일정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상사	기부행위재한	누구든지	상시	型5112-5117
상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서만신고 (청당, 방송, 잔국 또는 시, 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사 등은 제외) * 여론조사게시일 전 2월까지	+75 X	상시	對108法
1, 1(월)부터	전과기록 [발급 100만원 이상의 향의 법좌경력] 조회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정당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부터	¥34930
1, 15(월)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구 시 군위원회에>	구 시 군의장	민구의 기준일 (예비후보자등록산정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천당 말임) 후 15일까지	#14,5609(20) #\$2(3)(2), \$118(1)
2. 3(토)까지	선거비용제한의 및 예비후보자용보를 발충수량 공고 통지 <장당, 장당선거사무소, 예비후보자, 후보자에게>	선거구위원회	예비후보자등록신청캐시일 전 10일까지	법160의3, \$122 규\$26의2(3) \$51(3) 교자법149(3)
2, 12(월)부터 7, 13(금)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운명	방송통산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천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1218017, 18013
2. 13(화)부터 7. 13(금)까지	정당선거시무소 설치 변경 신고 (회계책임자 및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율을 위한 예관계작 개설신고 모함) <간빛위원회에> (시·도지사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	사무소를 설치·변경하는 때 지재 없이 [설치문업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법461912(1)(3) 정금법434(1)(3) 정금규434(1), 132(2)
2. 13(화)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선거달 천 120일부터	법160의2① 교차법149①
3、2(금)부터	애비후보자등록 신청 [지역구시·도의원, 지역구자치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예비후보자기 되려는 사람	선거기간개시밀 전 90일부터	
4. 1(일)부터	에비후보자등록 신청 [지역구군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파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시	변560912강
	전과기록 증명서류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同日)草里芥汁		
	정규회력에 관한 증명서 (외국학력의 경우 한글번역문 첨부) 제출 <선거구위원회와>	되려는 사람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 납부 <선거구위원회에>			
	기탁급 영수층 교부 및 금융기관 예지	선거구위원회	기탁금을 현금으로 받은 즉시	₩424(Z)
	파선거권 조회 <선거구 관립 검찰청의 장, 등록가준지 관할 구·시·읍 면의 장에게>	선거구위원회	데비후보자 등록신청 수리 후	∰160912/3/ ₩126/3/
	에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설치·변경신고 <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지지 않이	발161(1), 163(1) 구128(1)

시맹일정	실시시항	실시기간(자)	기준일	관계법조
	예비후보자의 선거시무장 선거서무원 활동보조인 선임·해임 및 교체신교 <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선거시무장	지쳐 없이	별462(3(성), 463(E) 구428(E)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등 신고 <관합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명함을 배뿌하려는 때	법\$60의3(3) 규\$26의2(1)
	예비후보자의 인장의 인영신고 <관합위원회에>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시	77521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선임·경임·교체신고 <권합위원회에>	데비후보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시	정금법834(0)3 635(1) 정금규(32(2)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개설신고 <관할위원회에>	여비후보자	회계책임자 선임·신고한 때	정금법\$34(8) 정금규\$34(1)
	예비후보자홍보居 발송신고 (수회에 걸쳐 발송하려는 경우 최초 신고 시 일괄신고 가능) <관형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발송일 전 2일까지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발송)	법%60의3① 규126의2③
	에비후보자공약집 2권 제출 <관립선거구위원회에> [지방자지단체장선거 및 교육검선거]	예비후보자	발간즉시	법160의4①③ 교지법149①
2, 13(화)부터 6, 13(수)까지	시-도 사이버콩정선거지원단 구성 운영	시 도위원회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0의3/2) 구(12의4(1)
3. 15(목)까지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제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선거일전 90일까지 (비례대표자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자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정이나 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한 30일까지)	법\$53①② 교자법\$47①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시무관계자 등이 되려는 때 그 직의 사직 <해당 기관에>	선가시무건계자 등이 되려는 사람	선거일전 90일까지	對於0(2)
3, 15(목)부터 5, 30(수)까지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계재 만증서 교부산형 <중앙위원회에>	중앙당	광고전까지(광고게재는 선거밀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법(137①(3)
3. 1(목)부터 5. 30(수)까지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신고 <중앙위원회에>	중앙당 대표자	방송일 전 3일까지(방송연설은 선거일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법제37의2대(6) 규동60의2
3 45/8145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금지	누구든지	선거잃잔 90일부터 선거잃까지	법(1033)
3. 15(목)부터 6. 13(수)까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게시만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은 가능)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Ham(I)
3. 15(목)부터 5. 13(일)까지	당원집회 개최신고 <개최지역 관할 구. 시. 군위원회>	85/	선거일전 90일부터(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당원잡회 개최금지)	변화41(2) 규화63①
3, 15(목)부터 5, 23(수)까지	선거방송로본위원회 추권 정책토론회 개최	충양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智822(3(3)

시행일장	실시사함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4, 14(토)부터 5. 30(수)까지	선거기간 전 언론기간 조형 대당 : 토론회의 방송일시 전행방법 등 통보 <간일 선거구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언론기관	대담-로론회 개최일 전일까지(개최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발182(1) 규145(4)
4, 14(토)부터 6, 13(수)까지	지밤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지방자치 단체의 장	선거일천 60일부터 선거일까지	图86(2)
	공정선거지원단 인원 추가 구성 운영	각급 위원회		법(10의2년) 규(2의3년)
4, 14(토)부터 6. 23(토)까지	중앙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추가 구성: 운영	중앙위원회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후 10일까지	범회(10의3년) 규정의4년)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위촉 운영	구-시-군위원회		智\$146至[2 元467生]
4, 15(일)부터 6, 13(수)까지	후보차 거주으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립구력 안에 주민등록>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선거일 현대 계속하여 60일 이상	型816③
5, 11(금)까지	시각장애선거인과 그 세대주의 성명·주소 조사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장	선거기간개시일 전 20일까지	밥165亿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지정 공고	중앙위원회		78116
5, 12(里)까지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언니로 및 신고서 발송 <법 제3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장애인배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구·시 군의장	선거일명부작성기준일 전 10일까지	21383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등의 사직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창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자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외희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등	선거일전 30일까지 (비례대표국회의된이 지역구국회의된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법153.2
5, 14(월)까지	옵 면 동위원회가 대행할 적무받위 등 결정 공고 통지 <옵 면 동위원회에>	구-시 군위원회	선거일 전 30일까지	변133 구1330년
	후보자동의 면정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시 시간대 등 홍보 <선거구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비례대표시 도의원선거, 교육감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방송시설 경영 관리자	선거일 전 30일(국회의원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산청개시일 전 3일)까지	법(기(5) 규(36(1) 교지법(49(3)
	경력방송을 행할 지역방송국 지정·동보 <중앙위원회에>	한국방송공사	후보자 등의 연설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시·시간대 등을 통보하는 때	世573()) 〒538(0/6)
5. 19(星)까지	여비후보자홍보물의 우편발송을 위한 세대주명단의 교부신청 <구·시·군의 장에서>	예비후보자	후보자동폐기간개시일 전 5일까지	법160의3년
5, 19(토)부터 5. 25(금)까지	무소속후보자추천장 검인 교부 〈교육감선거후보자, 무소속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검인: 교부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천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구위원회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5일부터 후보자등록미감시까지	법548(조(4) 교지법549(1)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탁설 제출수량 등 공고 통지 <정당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선거공약사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및 교육강선거에 한함]	선거구위원회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까지	世864(3), 965(3) 966(8) 교자업849(3)
5, 21(월)까지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사설과 일정 지정 공고·통지 <정당·후보자에게> [지방자치단제당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교육감선거 및 지역구국회약원선거]	선거구위원회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천 3일까지(통지는 후보자등록 시에)	법577(8) 교자법549(1)
	투표구의 명칭과 구역의 얼굴공고	구 시 군위원회		법(31(3) 규57
	의국인선거권자 조사·동보<관할 구청장에게>	자치구가 아닌 구를 관할하는 사장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일까지	7810/8
	선거공보 발송신장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용지 <소속 군인 -경찰공무원에게>	부대장, 경찰관서의 장	선거인명부작성기간개시알 전일까지	발65일
	선거인명부 작성	구 시 군의장	선거일 전 22일부터 5일 이내	법\$37(0). \$204(0)
	선거인명부 착성상황 통보 <구 시 군위원회에>	구 시 군의장	선거인명부 작성 후 지제없어	7510/6
5, 22(화)부터	선거인명부 및 거소투표신교인명부 등본(전산자료복사본 포함) 승부 <구 시 군화완회에>	구 시 군의장	선거인명부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한 때 즉시	법\$37년. \$38년
5. 26(토)까지	거소부표신고 <구·사·군의 중에게>	거소투표신고 대상자	—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	智838(0), 行知(0)(2), \$120(2)
	거소투표신고인맹부 작성	구 시 군의장		발5383 6 520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만할 구·시·군위원회에>	군인 경찰광무원		1365(S)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포함) 작성 공무원 임만사랑 통보 <구·사 군위원회에>	구·시·군의장	임면한 때에 지채 없이	법\$39(2) 구512(3)
5. 24(목)까지	선거인명부 열람장소. 기간.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및 열람방법 공고	구·시·군의장		21540(3) 73513(3)
	선거인명부 확정 후 등재여부 등 확인에 필요한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확인 기간 및 방법 등 공고	구시 군의장	선거인명부 열람개시일 전 3일까지	법544.2(대)
5, 24(목)부터 5, 25(금)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선거구위원회에>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당·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549①
	파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채출 <선기구위원회에>	정당·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동록신청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图849图
	방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지)	기준일	관계법조
	최근 5년간 후보자, 그의 배위자와 직계준비속의 소득세 재신체 중합부통신제의 납부 및 채납에 관한 신고서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전과기록에 관한 중명서류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번149.4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외국학력의 경우 한글반역문 정부)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1.5 - 2.5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에 관한 신교서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정당·후보자가 되라는 사람	후보자등록신청시	
	교육강력 등 증명에 관한 체출서 [교육감선거]			記状型149億
	비당원확인서 제출 [교육감선거]			교육감선거 관리규칙 12
	후보자 인장의 안영산고 <선거구위원회에>			₹521
	기다금 남부 <선거구위원회에>			발849(0), 856(1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과 일정 통지 <후보자에게>	선거구위원회	후보자등록 신청 시	법57(중)
	기탁금 영수증 교부 및 금융기관 예치	선거구위원회	기탁금을 현금으로 받은 즉시	7924(2)
	선거시무소 선거인락소 설치·변경신고 <관할 위원회에>	정당 후보자	지체없이 당, 후보자. 막시뚜장,	₩\$61(0), 63(0), \$205 ₩\$28(0), \$122
	선거사무장·선거연탁소장·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의 선임·채임 및 교택신고 <간합위원회에>	정당, 후보자. 선거시무장, 선거인락소장		변\$63(T), \$205 구\$28(E), \$122
	선거시무장 선거인탁소장 인창의 인명신교 <권회위원회에>	정당, 후보자, 선거시무장, 선거인락소장	선임-교체 신고 시	₹521
	회계핵임자 선임-변경신고 <건합위원회에>	정당·후보자 선거연락소장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 선거인락소 설치신고를 하는 때 (변경사유발생 후 지제 없이)	정금법134①3 135(1) 정금규132(3)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여급계좌 개설신고<관합위원회에>	후보자. 선거연락소장	회격책임자를 선임-신고한 때	청금법(34/4) 청금규(34/0)
	파선거권 조회 <동목기준지 관할 구·시·읍·면의 장에게>	선거구위원회	후보자등록마감 후	법149표 규(203)
	전과기록 조회 <선거구 관할 검찰정의 장에게>	선거구위원회	주보자등때마감 후 지제없이	법49%) 규1203
	정당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 결정	선거구위원회	후보자등록따감 후	型4150(3)(例 (3)(例(3)
	투표용지 언쇄원고 작성·송부 <구 시·군위원회에>	선거구위원회	투표용지 개재순위를 정한 후 자제 없이	7070
	투표용자를 인쇄할 인쇄소의 명칭:소재지 공고	시·도위원회 구·시·군위원회	인쇄소를 결정한 때 지재 없이	발1152(2)

사람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할 선거구 공고 보고 <상급위원회에> 동지 <하급 위원회에>	선거구위원회	무표를 싫시하지 아니하는 때 지체 않이	\$190(2)(3), \$191(3)
	후보자 사퇴신고 <선거구위원회에>	후보자	사퇴하고자 하는 때	법154
	후보자의 당적이탈 등의 통보 <선거구위원호제>	청당	사유발생 시 지체 없이	7522(1)
	후보자등록 사퇴 사망 등록무효에 관한 공고 보고 <상급위원회에> 통지 <하급위원회에> 통보 <지방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한하여 한국방송공사에>	선거구위원회	지체 없이	법155 균138② 교자법149①
	후보자등록무료 통지 <후보자, 추천정당애>	선거구위원회		법(52亿)
	정강· 정책홍보물 2부 제출(전자파일 대신 제출 가능) <중앙위원회에>	중앙당	배부전까지	##138/8)
	정책공약집 2권 재출(전자파일 대선 제출 가능) <관합위원회에>	청당(판매할 당부)	발간 즉시	법138의2③
	정당기간지 2부 재출(전자파일 대선 제출 가능) <중당위원회에>	중앙당	발행즉시	AU393)
	신문광고개재 인증서 교부산형 <시·도위원회에> [시·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	草里取	랑고전까지	법169(5) 교자법149(1
	방송광교의 일시와 광교비용 등 통보 <선거구위원회에> [시·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	방송시설경영자	방송 방양일 잔일까지	법570(3) 규135(1) 교자법549(1)
	선거공역서 배부 신고 <선거구위원회에>, 제출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교육감선거]	후보자	신고 : 배부일 전일까지 제출 : 배부 전까지	법166® 교자법149()
	현수막 표지 교무신청 <만할 구·시·군위원회에>	후보자	현수익을 게시하려는 때	법367① 규132② 교자법149①
	후보자의 방송사설이용 방송연설 신고 <선거구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교육감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방송일전 3일까지	범57(3) 교자법649(1
	방송사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사설명·일시·소요시간 등의 통보 <선거구위원회에>	방송시설강영-관리자	방송일전 2일까지	법472(3)
	방송사성주란 후보자연설의 방송사설명·이용일시·시간대·후보자 1인의 방송연설시간등의 통지 <정당·후보자에게>	방송시설경영 관리자	후보자의 안설됨 방송하려는 때	발172(1) 급137(1)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답용 자동차 확성장치 녹음기 및 녹화기의 표지 교부신청 <관합위원회에>	후보자, 선거시무장, 선거인락소장	자동차, 확성장치, 녹음가 및 녹화기를 사용하려는 때	법\$79(8) 규\$43(2)
	후보자등 조정 대답 토론회 개최신고 및 개최계획 재출 <선거구위원회 또는 개최지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대답·토론회를 개최하려는 단체	개최일전 2일까지	법1813) 73443)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선거운동용 자동자 선박의 표지교부 신청 <관할 위원회에>	후보자, 선거시무장, 선거인력소장	선거운동용 자동차와 선택물 운행하려는 때	質89V(4) 〒348名
	불법시설물 교시문 잡부	각급위원회	텔립시설됐 철거 등에 불용하는 때	법5271(2) 구3145(3)
	불법인쇄물 공고 <관할 구·시·군위원회 게시단에>	각급위원회	불법인생물을 수거한 때	별1271(2) 규화45(2)
	불법선전물의 우승규지 또는 중지요장 <해당 무치국전에게>	각급위원회 (읍·면·동위원회 제외)	불법선전물을 우승하려 하거나 우승 중임을 발견한 때	법5272(0)
	불법선전물 발송중지 사실 통보 <방송인> 공고 <발송인 주소 미기재시>	무제국장	발송을 중지한 때	법\$272년
5: 25(금)까지	경력방송원고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지방자치단차장선거, 교육감선가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법1733) 규138(2) 교자법149(1
5. 26(星)까지	선가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사본 및 전산자로 복사본의 작성비용 공시	구시 군의장	선거인명부작성따감일까지	변46(5) 구화8④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	구-시-군의장	거소투표신고기간만로일의 다음 날에	발844①
	기소투표신교인명부 확정상황 등보 <구·시·군위원회에>	구시 군의장	거소투표신고인영부 확정 후 지제 없이	781600
5, 27(일)에	거소투표신고서, 거소투표신고인명부 및 전산자료 복사본 송부 <구 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장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 후 즉시	7916(0)(2)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후 오기 등 발견 시 그 사실 등보 <구·시·군위원회에>	구-사-군의장	발견한 때마다 지체 없이	778 14(4)
5, 27(일)부터 5, 29(화)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구·시·군의 장에게>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착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	법\$40①(Z), \$41① 규\$13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 <신청인, 관계인, 구 시-군위원회에>	구 시 군의장	이의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법\$41(2)
	이와신창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구·시·군위원회에>	이의신청인 관계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발(42())
	불확신청에 대한 심사 결정 통지 <신청인, 관계인, 구 시 군의 장에게>	구-시 군위원회	불복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변842(Z)
	여비후보자혼보물 발송	예비후보자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법160의3(1)
5, 28(월)까지	강희방송원고 송부 <한국방송공사(해당 지역방송국)에> [지방자치단체장선거, 교육감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선거구위원회	후보자등때마감일 후 3일까지	변173/US 규138/2 교자법149()
	후보자의 경력방송일장 통보 <선거구위원회 시·도 또는 중앙위원회야> [지병자치단체청선거, 교육감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가]	한국방송공사 (지역방송국)	후보자의 검백방송 일정을 결정한 때	型473(b) 計438余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원고제공 <방송시설 경영·관리자에게>	선거구위원회	원고제공을 요청받은 때 지체 없이	발574()) -7439(i)

시험일정	실시사항	정시기간(자)	기훈일	관계법조
30.23.11.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실시 동보 <선거구위원회에>	방송시설 경명 관리자	방송일 전 2일까지	법374(2)
5, 29(화)까지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사설의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 신고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기관 사설의 장	거소투표신고마감일 후 3일까지	법\$149③
5, 30(수)부터 5, 31(목)까지	선거인명부 누락자 등재신청 <구·시·교위원회에>	해당 선거권자, 구 시 군의 장	이의신청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만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법143①
	선거인명부 누락자 등재신청에 대한 성사 결정·동지 <구 시·군의 장, 신청인에게>	구 시 군위원회	중재신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법543(2)
5, 30(수)까지	선거백보 제출 <구·시·군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	후보자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哲64(2)
5. 30(수)까지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 공고	구-시-군위원회	신고만료일의 다음날까지	(25149/2) -7570/2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 설치요정 <10명미만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에게>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면락소장	공고일 후 2월 이내	법5149년)
	기표소 설치요청서 사본 제출 <구 시 군위원회에>	기표소 설치를 요정한 정당 등	기표소 설치를 요청한 때 지제 없이	78703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운영일시 및 장소신고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기관 시설의 장	기표소설치일 전 2일까지	법(149.5
	기관 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 운영일시 및 장소공고	관합 구·시·군위원회	기표소 설치될 전일까지	범화49③ 구570④
5. 31(목)부터 6, 12(화)까지	선거운동기간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법159
5, 31(목)까지	선거인명부 또는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사뿐이나 전신자료 복사뿐의 교부신청 및 그 비용 납부 <구·시 군의 장에게>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인락소장	선거기간개시일까지	법546(군(3) 구518(3) 법549(1) 구520(3)
5, 31(목)부터 6. 13(수)까지	후보자의 전과기록 열받 <선거구위원회에>	누구든지	선거기간총	
5. 31(목)부터	선거방송로론위원회 주권 후보자등의 대답·토론회 개최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완선거]	시·도선거방송 트론위원회	4205777	법\$82의2③ 교자법149①
6. 12(화)까지	선개방송토론위원회 주권 후보자 대급 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안설회 개최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및 지역구국회약원선거]	구·시 군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선거운동기간중	법882의23
er (a program un	선거공보 재출 <구 시·군위원회가 자정하는 장소>	후보자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기원까지	법\$65일 귀1303)
6, 1(금)까지	선거박보 정부	구 시 군위원회	제출마감일 후 2일 (섬 및 산간모지는 3일)까지	발64(2)
	선거백보등의 내용 중 경희등(책자형선거공보는 후보자청보공개자료 포함) 이의제기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 <해당 상급위원회에>	제출요구받은 이의제기자, 후보자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법\$64호, \$655 규\$29(7, \$30%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선거백보통의 내용 중 검력통(적자형선거공보는 후보자정보공개자로 포함) 허위사실 개재 및 사생활비방에 대한 고발 사실 공고 및 공고문사본 투표구와 사전투표소 투표소 입구에 접부	상급위원회. 선거구위원회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허위사실의 판명 또는 사성활 비방에 대한 고발 시	間864金刀。 865年 〒8298、830日
6. 1(금)까지	부위원장 추천의뢰 <지방법원장 또는 자원장에게>	구-시-군위원회	선거일 전 12일까지	선위법(53) 선위규(5의33)
o. NB/MM	보조위원 주천의뢰 <교섭단제를 둔 정당에>	T // 2124	(2개 이상의 개료소를 설치하는 경우)	선위법(4년) 선위규(5의2년)
6, 1(급)에	선거인명부 확정	구 시 군의장	선거일 전 12일에	\$344(E)
	선거인명부 확정상황 통보 및 선거민명부 전신자료 복사변 송부 <구-시-근위원회에>	구·시·군의장 선거인명부확정 후 지제 없이		7916(I)
	선거인명부 수정상황 품보 <구 시·군위원회에>	구시 군의장	시 군의 장 선거인명부 확정상황 동보 시	
	통합선거인명부 작성	중양위원회	환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선자로 복시변을 제출받았을 때	
6. 2(토)부터 6. 13(수)까지	선거인명부 확정후 오기 등 발견시 그 사실 동보 <구·시 군위원회 읍·먼·동위원회에> * 사반부표기간 동료 전에는 구·시 교위원회에 * 사반부표기간 동료 후에는 구·시 교위원회의 옵·언·동위원회에	구 시 군의장	선거인명부 확정 후 발견 시마다	74162123
6. 2(토)부터 6. 13(수)까지	구 시 군의 인터넷홈페이지로 확장된 선거인명부 등재여부, 등재번호 및 투표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구시 군의장	선거인맹부확정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법\$44(2)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교	읍 면 통위원회		到147%
	무투표 통지 <거소투표선고인에게>	구 시 군위원회	MANAGES AND THE TO	발1882), 5190(2), 5191(3) 78109(3)
6. 3(일)까지	가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가소투표인대문 용평) <가소투표신과인에게>	구 시 군위원회	선거밅전 10일까지	\$154(1)(\$). \$154(1)(\$).
	군인 등 산정자에게 선거공보 발송	구 시 군위원회		법165%
	루표인내문(참자형 포함) 발송 (선거공보 동봉) <매세대에>	& 만·동위원회	선거민명부확장일 후 2일까지	법565億. 1153①, 1211億 구1127
	우편투표함 비치	구-시-군위원회	기소투표용지를 발송한 다음	7480(1)
	허위신고자등에 대한 거소투표용지 미별송 사유 및 투표소투표의 뜻 용지 <해당 선거인에게>	구 시 군위원회	거소투표용자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 지체 없이	변화54·2 구화78②
6, 4(월)까지	사천투표소의 명칭·소재지 및 설치·운영기간 공고·통지 <선거시무칭·선거인락소장에게> 및 루표구마다 공고문 청부	구 시 군위원회	선거일전 9일까지	법화48(2) 구46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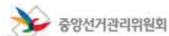
시땀잃장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6, 6(수)까지	사전투표소의 참관인 선정·신고 <옵 면 통위원회에>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정. 선거인력소장		별5162(2),5213/2 귀63(3)
	사천투표참관인 선정 (사전투표참관인이 없거나, 한 후보자기 선정한 사전투표참관인 밖에 없을 때)	읍·면·동위원회	선가일전 7일까지	智516239
	부표용지 모형공고	구-시-군위원회		gs152(I)
6. 7(목)까지	사전투표소 설비 《옵·먼·동마다》	사전투표관리관	선거일전 6일까지	7168(4)
6. 8(금)부터 6. 9(토)까지	사전투표소 투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관리관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25148(0), 5155(2), 5158
	사전투표소에서의 회송용봉투 발송 및 관내사전 투표함 구·시·군위원회 인계	사전투표관리관	매일의 사전투표 마감 후 또는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图\$158⑥
	개묘소 공고(2개소 이상 설치 시 개표소별 개표할 선거명 공고·롱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에게>)	구 시 군위원회		법화73년(2) 구1952)
6. 8(금)까지	정자형선거공약서 우편謀송을 위한 사라형애인과 그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신청 <구 시 군의 장에게>	후보자	선가일전 5일까지	74931@
	부위원장 위촉 공고 (2개 이상의 개표소 설치 시)	구 시 군위원회		선위법(5%) 선위규(5의3(1), (7
6. 10(일)까지	투표사무원 위촉 공고	읍 ·면 · 동위원회	ANDERS SOURCE	智8147(例
	개표사무원 뒤촉 공고	구·시·군위원회	선거일전 3일까지	93174(DO
6, 11(월)까지	투표참관인 선정·신교 <옵-면-동위원회에>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일전 2일까지	質\$161(2)。 \$213(j)
	거소투표용자를 발송하지 아니하거나 선거있던 2일까지 거소투표용지가 반송된 거소투표신고인의 명단 작성·등지 <옵 면 동위원회에 "투표관리관에게》	구·시·군위원회 읍 면 동위원회		23154(0)
	투표평지와 투표함 송부<읍 면 동위원회에> 투표용지, 투표함, 선거인명부 인계<투표관리관에제>	구·시·군위원회 & 만·동위원회		변화51(3) 전화6의2(3)
	투표소의 설비	읍-면-동위원회 투표관리관	The state of the s	변화47(1) 급67의2
6, 12(화)까지	투표첨관인 선정 (투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4명 미달 시)	용·면·동위원회	선거일 전일까지	12(\$1610)
	개표소의 설비	구·시·군위원회		智約73(3) 〒895(0
	개표참관인 선정·신교 <구·시·군위원회에>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18125
	개표장관인 선정(개표창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한 정당 또는 한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 밖에 없을 때)	구 시 군위원회		唱#813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투표점관인 교채신고 <읍 면 동위원회에, 선거일 투표소에서>	청당 후보자 선거시무장. 선거연락소창	NO. OF THE PARTY O	법(613)
	개표점관인 교체신고 <구·시·군위원회에, 개표일 개표소에서>	청당·후브자 선거시무장, 선거연락소장	신교 후 언제든지	번(1812)
	정당추천위원의 투표용지 수량-보관-관리 시 입회	청당추천위원	루프용지수형·보관·및 관리 시	H2151(3)
	보조위원 위촉 (2개 이상 개표소 설치 시)	구.시 군위원회	선거일 전일까지	선위규(5의2)
6, 13(수)	투표 (투표진행, 투표록작성 등)	草田砂리社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법제10장
	거소투표및시전투표접수	구 시 군위원회	오후 6시까지	E1815535
	무면투표함 및 사전투표함 개표소 이승	구 시 군위원회	오후 6시후에	智和63
	투표함 등 송부 <개표소에>	투표관리관	투표가 끝난 후	발(170) 규(94
	개표 (개표진행, 개표결과공표, 마감상황 보고, 개표목작성 등)	구 시 군위원회	學표함의 개표소 도착 후	법제비정
	개표록 송부 <선거구위원회에>	구 시 군위원회	개표록 작성 후	발185(1) 규1106
	후보자별 득표수 계산 공표 및 선거록 작성: 당선인 결정상황 보고 <상급위원회에>	선거구위원회	개표록을 숨부 받은 때 지쳐없이	번(1852)
	당선민 결정 공고 통지 당선중 교부	선거구위원회	지제없이	법1190. 1190의2. 1191 귀1108
6. 13(수)까지	선거시무장등이 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중전의 최 목식금지	선거사무 관계자등	선거일까지	발5602)
6, 23(토)까지	당선인 결정의 하오시청 및 공고·통지 <해당 당선인 소속정당에>	선거구위원회	선거일 후 10일 이내	범위3③ 구위11
6, 25(월)까지	선거비용 보전정구 <선거구위원회에>	정당, 후보자	선거일 후 10일까지 (기간의 말일이 루요핑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4) 규(5위(3(3) 만법(161 법(219(1)
6, 27(수)까지	선거효력에 관한 소청 <시·도위원회, 중앙위원회에> [지방선거]	선가인, 정당, 후보자	선거일부터 14일이내	
	당선효력에 관한 소청 <시·도위원회, 중앙위원회에> [지방선거]	정당, 후보자	당선인 결정일부터 14일 이내	법(219-2)
	선거의 효력 및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청 결정 공고 및 결정서 송달 <스팅인, 피소항인 참가인에게> [지방선거]	중앙위원회 시·도위원회	소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閏1220(1)(3)
	선거소송, 당선소송 제기 <고등법원, 대법원에> [지방선거]	소청인, 당선만, 피소청인	소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소청결정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이내(소청결정기간내에 결정하지 아니하 때	범8222(호) 5223·호

시맹밀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개법조
	기탁금 부족액 남부고지 <한당 기탁자에게>	선거구위원회	선거일 후 15일까지	₩125③
	기탁금 부족액의 납부 <선거구위원회에>	해당기탁자	납부고자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법457(2)
6, 28(목)까지	기탁금 부족액을 납부하지 아니만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정수 요구	선거구위원회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图557(3)
	당선인의 재산신고서 서본 중부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선거구위원회	당선인 결정 후 15일 이내 (요청이 있는 경우)	E549(8)
7. 3(화)까지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마감	회계택임자	선거일 후 20일까지	정금법540(1)
7, 13(금)까지	선거소용 제기<대법원에>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선거인 정당, 후보자		型5222③
	기탁급 반환 및 공제맹세서 송루 <기탁자에게>	선거구위원회	선거일 후 30월 이내	법557(1) 규125(1)
	귀속기닥큼의 청산내역 통지<기탁자에게>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수관에게 납입	선거구위원회		70252
	정치자금 회계보고 <해담 위원회에>	회계책임자	선거일 후 30일 이내	정금법\$40() 정금규\$40()
	선거비용 추가보전 청구 <선거구위원회에>	정당-후보자	정치자급회계보고서를 제출하는 때	74519B(f)
	당선소송 제기 <대법원에>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정당-후보자	당선인 결정 후 30일 미내	图5223①
	당선인의 병역사항 통보 <병무청장(원본), 소속기관의 장(사본)에게>	선거구위원회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공병법59④ 공병령516
7, 14(토)부터 7, 20(금)까지	정치자금회제보고서등 사본의 열람기간 장소 및 사본교부에 필요한 비용 공고	관합위원회	화계보고 마감일부터 7일 이내	청급법\$42(1) 정급규\$41(1)
	선거비용의 수입과 자출에 관한 조사, 보고, 자료제출요구 등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 회계책임자 또는 기타 관계안에게>	각급위원회 (읍 면·동위원회 제외) 위원·직원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청금법143() 청금규143()
	정치자공회제보고서등의 열람 및 인터넷(선거비용에 한함) 공개 <누구에게나>	관할위원회	선거비용회계보고 및 열람, 사본교부 기간 등 공고일부터 3월간	정급법1422
	정치자급회계보고서등의 사본 교부산정 및 교부에 필요한 경비납부 <해당 위원회에>	사본교부산정인	언제든지 (선거비용은 열람기간중) » 사본교육선정사 수업인지 함부	청금법542(3) 청금규541(3)
	정치자금회계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이의산청 <관합위원회에>	이익인는 자	열람기간 중	정금법\$42년 정금규\$42①
	정치자금회계보고서 내용의 이의사실에 대한 수명자료자출 통지 <회계책임자 관계인에게>	관할위원회	이의신청을 받은 때	정금법942원 정금규942대
	정치자금회계보고서 내용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 <해당 위원회에>	회계적임자, 관계인	통자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금법\$42년 정금규\$42년
	정치자금회계보고서의 이의신청 내용과 소맹내용등 공고·통자 <이의신청인에게>	관합위원회	소명자료를 저출받은 때와 소명자료의 제출이 없는 때 지제 없이	청금법542원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사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8, 12(일)이내	선거비용 보전 <해당 정당(후보자)에게>	선거구위원회	선거일 후 60일 이내	법화229(2① 구화51의3구)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한 사실통지 및 보전비용 반환 명령 <해당 정당 후보자에게>	선거구위원회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 보건하지 아니함 사유가 발견된 때	법#135의2/3 귀#59의2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한 보전비용 반환<산거구위원회대>	정당 후보자	그 반환명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법#135의2(5)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 지방자자단체의 장에게 정수 위탁	선거구위원회	반환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란 때	법(135일(2%)
	보전유예비용의 납입 <해당 지반자지단체의 수입점수권에게>	선거구위원회	유최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가 있는 때부터 20일 이내	법\$135의(2년) 귀459의(2년)
	보전을 유예한 선거비용의 지급 <해당 정당 후보자에게>	선거구위원회	무죄판결 또는 결정의 봉지가 있는 때부터 20일 이내	규559의23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자(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향이 확정된 비당선인 포함)의 기닥급 및 보전비용 반환고지 +해당 정당 후보자에게>	선거구위원회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 지체 없이	740.000.000.00
	선거범죄로 당선무호된 재(당선무효에 제당하는 형이 확정된 비당선인 포함)의 기약급 및 보전비용 납부 <관합선거구위원회에>	정당 후보자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법4265의212
	선개범죄로 당선무효된 자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비당선인 포함[의 기타급 브전비용 정수위탁 <해당 정당·후보자의 주소지 관함 #무서장에게>	선거구위원회	남부기한까지 남부하지 아니한 때	WN26591213
12. 13(목)까지	선거사무장등이 된 각급선관취 위원. 역비군 중대장급이상 간부, 통-리·반의 장의 중전의 최 복취급지	선거시루 관계자동	선거일 후 6월 이내	발5602)





http://www.nec.go.kr

*중앙전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선거정보' 법을 통해 각종 선거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emo)			
	-			
	,=			
	-			_
	5			
	-			
	-			
	-			
	5			_
	-			
	-			
-1				

	Memo)			
	-			
	,=			
	-			_
	5			
	-			
	-			
	-			
	5			_
	-			
	-			
-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공직선거 업무편람

발행일 2018년 3월 인쇄일 2018년 3월

발 행 처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전화: 02)2100-3856 팩스: 02)2100-4298

홈페이지 www.mois.go.kr

교육내용 관련 질문사항 연락처

- ♦ 법정선거사무 처리: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02-2100-3856, 3855
- ▶ 결격사유조회시스템 운용: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과 02-736-6131
- ♦ 선거인명부작성 프로그램 운용: 행정안전부 주민과 02-2076-3501, 3502
- ▶ 사건·사고 사례 및 예방,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관할 시·도 선거관리위원회